

예술인 종사실태를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인 종사실태를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8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 인 철

●● 연구진

- 연구책임 | 서 우 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공동연구 | 김 옥 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해 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최 영 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보조 | 김 나 리 (서울시립대학교 문화예술관광학과 석사과정)
이 경 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1
1. 연구 배경	41
2. 연구 목적	4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5
1. 연구 범위	45
2. 연구 방법	46

제2장 예술인 고용보험의 정책적 논의 전개과정

제1절 국외 예술인 복지사례	53
1. 국외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 현황	53
2.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체계 잉테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	54
3.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	58
4. 오스트리아의 예술가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	62
제2절 국내 예술인 복지와 고용보험	64
1.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정책 논의 전개과정	64
2. 국내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 현황	65
3. 예술인 고용실태를 파악한 주요 연구 결과	67
4. 시사점 및 고용보험 적용방안	70

제3장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1절 자료	77
1. 조사 방법	77
2. 표본의 특성	77
제2절 예술인 고용계약의 현황	79
제3절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94
제4절 소결	104

제4장 예술인 직군별 조사 결과

제1절 공연예술분야 조사 결과	109
1.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예비조사	109
2. 공연예술분야 실태조사 결과	123
3. 공연예술분야 심층면담 결과	149
4. 소결	155
제2절 방송산업분야 조사 결과	158
1. 방송산업분야 종사자 예비조사	158
2. 비드라마 부문 구성작가 실태조사 결과	173
3. 비드라마 부문 구성작가 심층면담 결과	202
4. 성우 실태조사 결과	205
5. 성우 심층면담 결과	230
6. 소결	233
제3절 웹툰분야 조사 결과	238
1. 웹툰분야 종사자 예비조사	238
2. 웹툰작가 실태조사	240
3. 웹툰작가 심층면담 결과	240
4. 소결	243

제5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규모추정

제1절 개념적 정의	249
1. 문화예술의 범위 및 예술인 정의	249
2. 문화예술분야 직업군 분류	251
제2절 규모 추정	254
1. 예술인 규모 추정	254
2.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규모 추정	258

제6장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제1절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기존연구	263
1.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재정추계	263
2. 고용보험 재정추계 수정안 검토	271
3.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방법론	273
제2절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277
1. 실업급여 추계: 동일가입비율모형	277
2. 실업급여 추계: 동일소득등급비율모형	288
3. 재정추계 소결	29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299
제2절 정책제언	307

참고문헌

참고문헌	310
------	-----

부 록

1.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315
2. 직군별 설문지(1):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설문지	319
2. 직군별 설문지(2): 방송작가 설문지	324
2. 직군별 설문지(3): 성우 설문지	329

요약

<요 약>

제1장 서론

■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법제화 진행

- 2002년부터 예술인 복지조합, 예술인공제회 등의 정책 공약 제시되고, 2009년 예술인 복지법 의원 발의 시작
-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사망과 예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배경으로 2011년 10월 예술인복지법 국회 통과

■ 예술인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예술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 제공

- 2012년 11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보장 지원 등의 사업 수행

■ 예술인 산재보험을 2012년부터 도입

-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예술활동 중 부상 및 예술활동에 기인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생계유지비를 지원

■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창작안전망 구축’ 제시

- 고용노동부와 문체부 협업 과제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진행

■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가 국내외 축적되어 왔음.

- 국제적으로 예술가의 노동시장, 고용실태, 소득, 직업훈련 등에 대한 연구 진행
- 국내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는 최근 예술인복지법 제정 논의를 계기로 활성화되었으

며, 정책부처의 위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 방안 연구 성과 축적

■ 효과적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특수한 근로 상황과 다양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예술 장르에 따른 차이 뿐만 아니라 동일 예술분야 내에서도 직종 간 차이가 크고, 동일 직종 내에서도 직업경력에 위계간 차이가 커서 상당한 내적 분화가 존재

■ 따라서 국외 사례 분석과 예술계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도입방안 검토 및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 혼합연구방법론을 사용함.

○ 기존에 수행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와 쟁점을 분석

○ 정성조사와 정량조사의 혼합연구방법론을 사용

○ 정성조사로는 집단 유형별로 심층면접 및 FGI를 수행

○ 정량조사로는 2015년에 실시한 예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 반영하여 예술인 실태 조사와 직군별 예술인 실태조사를 수행

제2장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적 논의 전개과정

제1절 국외 예술인 복지사례

■ 국외 예술인 복지사례로 프랑스, 독일의 예술인 지원체계를 분석함.

■ 프랑스의 앙떼르미땅은 공연예술분야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에게 실업보험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공연예술가 및 기술지원 인력으로 구분하여 비정규 근로자

들을 지원하고 있음.

- 엔테르미땅 제도는 일반 실업보험과 다른 체계로 운영되는 특수한 실업보험 체계로 공연예술분야의 예술가 및 기술지원 인력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예술인들이 엔테르미땅 실업보험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음 9개의 영역에의 활동을 증명하여야 함.

- 해당영역은 시청각 제작, 영화 제작, 음향편집, 창작 및 행사서비스 기술지원, 라디오 방송, 민간 및 지원된 공연, TV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 등

■ 엔테르미땅 실업보험 급여액은 해당자가 받은 임금, 일한 시간, 정해진 계수 등 3가지를 종합하여 결정하며, 실업보상금 수급기간은 243일, 즉 8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은 노동시간과 급여의 비율에 따라 결정됨.

■ 엔테르미땅 보험체계는 일반 실업보험에 비해 높은 손실 가능성으로 실업보험 전체 재정에 부담을 주어 논란이 심화되었음.

- 2013년 기준 10억 유로의 손실 발생

■ 독일에서는 1981년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을 공포하고 1983년부터 발효

- 자영예술가와 언론출판인들에게 의료, 연금, 요양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가 사회보장기금(Künstlersozialkasse)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예술가사회보험의 적용 방식은 의무 가입이며, 예술가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자로서 음악, 공연예술, 조형예술을 창조, 영위 혹은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그밖에 저술가는 작가, 저널리스트 또는 출판 활동을 행하는 자로 규정함.

- 언어, 조형예술, 음악, 공연예술의 4가지 범주 안에서 예술인 직업분류 명시

■ 보험료는 예술가 본인 50%, 국가 20%, 예술작품 사용자 30%으로 각각 부담하여 예

술인에게 수혜 제공

- 2014년 7월 ‘예술가사회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법(Gesetzes zur Stabilisierung des Künstlersozialabgabegesetzes)’ 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의 비율을 2015년과 2016년 5.2%로 유지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 증가 및 논란 완화 시도
 - 추가적으로 보험료 정기 납세에 대한 연금보험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예술인 사회보장기금(KSK) 자체 평가기준을 도입하였음.
 - 소액경계선 도입으로 1년에 450유로 이하 보수 받는 예술가의 고용주에게는 감면 혜택을 제공

제2절 국내 예술인 복지와 고용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이 시행된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중 안주엽·황준욱(2014)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자성이 강한 공연·영상 분야 종사하는 예술인으로 한정하여 고용보험을 제안
- 예술인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안주엽·황준욱(2014)의 예술인 고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4년 8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년 6월)’ 의 자료를 분석함.
- 국내외 예술인 복지와 관련한 제도, 연구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함.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예술인 중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공연·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 한정하고, 고용보험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적용방식과 유사하게 설계
 - 적용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예술인복지

법 상 예술인으로서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분야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공연·영상 분야 예술인 약 95,099명 중 57.6%인 5만7천 명 정도로 추정
-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특례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의 재정수지를 고려할 때, 예술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 시사
- 예술인의 지위와 실태는 매우 복잡 다양하지만 상당수의 비율이 프리랜서로 종사하고 있으며, 그간 예술인의 노동과 생계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다른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와 유사한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음.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으로는 적용대상 및 가입방식, 실업의 인정, 수급요건의 충족문제,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 피보험자격 이증취득의 문제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예술인을 간주하여 당연가입 형태의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예술인 직종에서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설정함.

제3장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절 자료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장르별 비율을 고려하여 예술인 표본틀을 구축했으며,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수행
-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 62.6%, 여성 37.4%, 연령별로는 20대가 11.4%, 30대가 22.9%, 40대가 22%, 50대 이상이 43.5%임.
- 예술활동 분야는 시각예술이 24.3%, 공연예술이 21.4%, 종합예술이 54.3%. 예술인의 일자리 형태는 ‘독자 활동’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 임금 근로제공’이 17.8%, ‘지정 일감 보수’가 17.1%,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이 3.5%임.
- 전업 예술인의 경우 58.4%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41.6%
- 예술가 활동 경력은 ‘10년 이하’가 35.6%, ‘11-20년 이하’가 28%, ‘21년 이상’이 36.3%로 나타남.

제2절 예술인 고용계약 현황

■ 예술인의 고용계약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예술인의 일한기간, 예술인의 수입, 일자리의 종사적 특성,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의 종도 해지 경험에 관하여 조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난 2년 동안 예술 직종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가 51.9%로 나타나고, 예술활동 수입이 월 100만원 이하가 73.5%로 나타남.
- 종사형태는 별도로 정해진 계약이 없다(51.4%)가 가장 많고, 계약기간 결정 방식은 작품/프로젝트 단위(21.1%)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12.4%)가 비교적 많았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의 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16.9%)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14.7%)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겸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42.1%)와 금지규정 없이 재량껏 다른 일을 하는 경우(30.3%)가 가장 많았음.
- 향후 예술활동 종사가 예측 가능하고 응답한 경우가 58.0%였으며, 1년 이상 종사를 예측한 경우가 54.4%였음.

제3절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인지여부, 예술인 고용보험의 동의 여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반대와 찬성의 이유, 선호하는 고용보험 도입 방식, 고용보험료 부담의사를 조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는 이름만 들어봤다(38.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2.0%였으며,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수급 조건 충족의 어려움(50.4%)가 가장 많았고, 선호하는 도입방식은 임의 가입(71.4%)이 많았고, 고용료 부담 의사는 월 2-3만원(22.7%)과 월 1-2만원(21.3%)이 가장 많았음.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 인구학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예술활동 분야에 따라서는 시각예술의 찬성 비율(67.1%)이 공연예술(70.0%)과 종합예술(75.0%)에 비해서 낮았으며, 정규직 형태 종사자의 찬성 비율이 83.1%로 높았음.
 - 고용보험제도 도입 반대 이유가 수급조건 충족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남자보다는 여자, 젊은 층일수록, 정규직 형태와 지정 일감 보수형태에서, 전업예술인이 아니고, 예술인 경력 20년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임의가입 방식에 대한 선호는 젊을수록, 특정 기업 대상의 노무제공이나 독자 활동을 하는 예술에서 높았으며, 경력 20년 미만의 경우에서 높았음.
 - 고용보험료 부담의사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고, 20대에서 부담의사 액수가 낮았음.

제4장 예술인 직군별 조사 결과

제1절 공연예술분야 조사결과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직군은 크게 공연기획 및 제작, 창작, 실연, 기술, 행정운영, 교육 및 비평 등으로 구분 되어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행정 및 교육 인력을 제외한, 실연 및 기술 분야 종사자들을 고용보험 가입가능 집단으로 간주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 공연예술계는 뮤지컬 및 콘서트 시장 성장으로 최근 산업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며, 2014년 기준 공연시설 수는 총 1,034개, 종사자 수는 12,669명, 매출액 규모는 3,689억 원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실연을 하는 공연단체¹⁾의 수는 총 2,284개, 종사자 수는 55,858명, 매출액은 3,904억 원의 규모로 파악되었음.

○ 공연예술 실연자는 연극 및 뮤지컬 분야에서 활동하는 배우, 국악가 및 성악가 등의 가수, 연주자, 무용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달 5천 명 정도가 공연 예술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

■ 예비조사는 창작/실연자 분야의 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수와 제작스태프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일반적 사항, 업무종사실태, 계약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함.

■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공연예술분야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웹서베이와 심층면담, FGI를 병행함.

○ 실태조사에 참여한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중 남성은 54.8%, 여성은 45.2%임. 연령은 30대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8.2%, 50대 이상이 15.9%, 20대가 13.7% 순으로 나타남.

○ 실연자의 직종은 연극배우가 64.4%, 뮤지컬배우 12.1%, 연극배우와 뮤지컬 배우를 겸하는 응답자가 23.5%였음. 예술 경력은 10년 이하가 14.2%, 11-20년이 33.5%, 22년 이상이 32.1%였음.

○ 심층면담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세부직군들 중 연극 실연자 및 스태프들의 현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고용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도입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1) 공연단체 조사모집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단체(2010~2014년)와 한국뮤지컬협회 소속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등을 수렴하고자 진행

- 공연예술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공연예술분야 종사자와 2)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함.

■ 공연예술분야의 고용 계약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공연예술의 한 기간과 수입, 계약 형태, 보수지급주기, 계약기간, 해고 경험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지난 24개월 중 공연예술 분야에서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1년 미만이 20.2%, 1년-1년 반 미만이 17.7%, 1년 반-2년 이하가 29.6%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공연예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56.1%로 가장 높았음. 101-200만원이 18.5%, 201-300만원이 7.4%, 301만원 이상이 18%로 나타남.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현재(혹은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의 형태는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면계약이 40.1%로 나타남.
- 보수지급 주기는 ‘공연 종료 후’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지급, 월급 순으로 보수를 지급 받았음. 또한 ‘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8.4% 었음.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가 ‘한 공연작품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연 작품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26.8%,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가 73.2%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계약기간 내의 해고 또는 계약 해지의 경험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남. 73.9%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해고 또는 계약 해지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1%였음.

■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가 대체로 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고용보험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더 많았으며 임의가입을 선호했음.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은 ‘이름을 들어 봤을 뿐 구체적

인 내용은 모른다'가 47.3%였으며,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30.4%로 나타남.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83.7%, 반대가 16.3%
- 고용보험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69.1%가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을 선호했으며, 29.6%는 '공연예술에 실연자·스태프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을 선호함.
- 심층 면담에 참여한 연극분야 종사자들은 경력이 높은 중견배우 이상으로 구성되어 지난 1년간 공연일수를 계산하였을 때, 신진배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예상하지만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극 동의하였음.

제2절 방송산업분야 조사결과

- 방송산업 종사자는 방송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현재 한류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으로서 국가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짐. 2014기준 방송산업 전체 사업자 수는 414개이며, 방송영상시장 종사자는 34,615명으로 조사됨.
- 방송영상시장 종사자는 크게 직종별로 관리직(임원, 경영직, 기자, PD), 제작 관련직(카메라, 음향, 조명, 미술, 편집), 기술직(건축, 전기, 설비통신), 기타(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로 분류 가능
- 방송 분야는 제작사, 기획사, 전문회사, 프리랜서 등 여러 주체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방송국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고용보험 도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 수행 예상
- 본 연구에서는 방송분야의 방송작가, 성우, 무술연기자, 방송영상 제작스태프 직군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송작가란 드라마, 영화, 연극, 코미디, 라디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 시나리오, 대본 등을 작성하는 사람을 말함²⁾. 특히 출·퇴근의무가

없고 재택근무로 업무수행이 자유로운 드라마 작가와 달리, 구성작가는 방송PD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출·퇴근의무등 사용자 종속성이 상당히 존재함.

- 성우는 대부분 방송국 공채를 통해서 채용되며, 1~2년의 공채 전속기간 끝난 후에는 주로 성우협회로 귀속되어 프리랜서로 활동함. 공채 출신 현직 종사 성우는 2015년 12월 기준 총 809명이지만, 실제 활발히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성우는 250명 수준임.
- 무술연기자들의 유니온 개념의 노조가 존재하며 약 300명 정도의 규모이며, 현재 활동하는 연기자들의 구체적 종사 분야는 영화와 방송 비율이 50대 50임.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팀은 10개 정도이며, 나이에 민감한 직군이니 만큼 채용업 문제가 매우 심각함.
-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구성은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능프로그램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비율이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임. 드라마의 경우는 외주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핵심 인력인 연출, 촬영 등은 방송사의 정규직이 담당, 시사프로그램은 자체 제작이 많고 외주 스태프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있음.

■ 이러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비드라마부분 구성작가, 성우에 대한 웹서베이와 심층면담, FGI를 수행함.

- 실태조사에 참여한 비드라마부분 구성작가의 특성은 응답자의 94.1%가 여성이었으며, 20대가 70.3%로 가장 많았음.
- 참여하고 있는 방송장르의 경우에는 ‘시사교양’이 78.5%, ‘예능기타’가 21.5%였으며, 일하는 방송하는 지상파가 73.5%, ‘케이블중편기타’가 26.5%였으며, 방송작가의 역할별로는 메인작가가 17.5%, 꼭지작가가 42.1%, 취재작가가 40.3%였음.
- 방송작가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주요 방송사 구성작가협회 소속 작가들과 2)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기호 28111 ‘방송작가’에 대한 정의

- 성우의 경우 실태조사 참여한 남성은 50%, 여성 50%이었으며, 연령은 20대 4.7%, 30대 43.8%, 40대 48.4%, 50대 이상이 3.1%였음. 방송사는 지상파 TV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가 17.2%, 지상파 라디오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 10.9%, 케이블 중편 TV 54.7%, 기타가 17.2%임.
- 성우 경력은 5년 이하가 17.2%, 6-10년이 32.8%, 11-20년이 37.5%, 21년 이상이 12.5%
- 성우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성우협회 및 노조 관계자와 2)성우협회 소속 중견급 이상 성우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 방송작가와 성우의 고용 계약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공연예술의 한 기간과 수입, 계약형태, 보수지급주기, 계약기간, 해고 경험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송작가의 지난 2년 동안의 방송작가로 일한 기간은 '1년 반-2년 이하'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1년 반 미만'이 16.1%, '6개월-1년 미만'이 11.2%, '6개월 미만'이 6.8%였음.
- 방송작가의 참여 프로그램의 평균 작업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미만', '1년-1년 반 미만', '1년 반-2년 이하' 순이었음.
- 방송작가의 수입은 '101-200만원'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1만원 이상'이 18.3%, '100만원 이하'가 12.4%, '201-300만원'이 11.8%였음. 또한, 방송작가의 저작권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83.3%, '301만원 이상'이 11.1%, '201-300만원' 5.6%임.
- 현재 체결한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구두계약'이 27.7%, '서면계약'은 12.1%에 불과함. 계약의 형태로는 '프로그램당 계약'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계약'이 38.7%, '전속계약' 5.2%, '주/월당 계약'이 4%

- 방송작가의 보수지급 주기는 월급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이 35.5%, ‘주급/격주급’이 17.9%
- 성우는 방송프로그램에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30.2%, ‘6개월-1년 미만’ 6.3%, ‘1년-1년 반 미만’이 11.1%, ‘1년 반-2년 이하’가 52.4%, 방송 외 나레이션 활동(영화, 광고, 게임 등)에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17.2%, ‘6개월-1년 미만’이 13.8%, ‘1년-1년 반 미만’이 12.1%, ‘1년 반-2년 이하’가 56.9%임.
- 성우의 방송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만원’이 25.5%, ‘201-300만원’이 3.9%, ‘301만원 이상’이 33.3%였으며, 저작권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82.6%로 가장 많았으며, ‘201-300만원’이 4.3%, ‘301만원 이상’이 13%
- 성우의 보수지급 주기는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이 74.6%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기적’ 8.5%, ‘월급’과 ‘녹음 3개월 이내’가 5.1%, ‘잘 모르겠다’가 1.7%
- 방송작가의 경우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대체로 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더 많았으며,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의 선호비율은 비슷했음.
- 방송작가의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 인식은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28.1%,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라는 응답이 14.6%임.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92.7, 반대가 7.3%으로 찬성의 의견이 많았음.
- 고용보험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임의가입과 당연가입의 선호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당연가입 40.5%에 비해 임의가입이 59.5%로 높았음.
- 집단 인터뷰에 참가한 작가들은 모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 하였으며, 동료 작가들이 대부분 가입의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구직 중에 있는 작가들의 존재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작가집단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과 공식적으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제시되었음.

- 이를 위해서는 관용적으로 행해지던 구두계약이나 근무조건 등으로는 실제 근무기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의 개선이 우선적이라고 지적
 - 하지만 방송작가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상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음.
- 경력이 오래된 작가일수록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는 것이 집단 인터뷰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나,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의무가입 방식의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음.

■ 성우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 대체로 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더 많았으나 반대의 비율도 큰 편이었고, 임의가입을 더 선호함.

- 성우의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 인식은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라고 응답했으며, 28.6%는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음.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는 14.3%,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10.2%,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2%로 나타남.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1.2%, 반대가 38.8%로 나타남.
- 고용보험 선호 방식은 ‘임의가입’이 76.7%, 당연가입이 23.3%
- 성우의 심층면담 결과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며 집단 인터뷰 참가자 뿐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

제3절 웹툰분야 조사결과

■ 웹툰은 국내 만화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2005년 이후 국내 만화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 웹툰산업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고료를 지급받는 연재작품이 총 4,661작품으로 조사 되었으나, 웹툰 작가 인터뷰 결과 실제 활동하는 작가 수는 2천~3천명으로 추정된다고 함.
-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급성장 하고 있는 국내 웹툰이 성장한 배경에는 웹툰 플랫폼이 있는데, 웹툰 플랫폼은 전 세계 유례없는 한국 고유의 생태계 모델로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
- 웹툰 작가 직군의 실태조사는 주요 포털 및 웹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나, 대부분의 작가들이 매주 마감 시간을 지켜야 만 하는 이유로 서버이에 응답할 여유가 없어 참여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웹툰 산업 실태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웹툰 작가 FGI 및 분야 전문가들의 면담으로 웹툰 분야 조사를 대체하였음.
- 웹툰 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중견급 이상의 웹툰 작가집단과 2)애니메이션 관련학과 교수진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음.
- 심층면담은 포털이나 플랫폼과 전속계약의 형태로 근무하는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도입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 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 측정을 위한 분야 활동 종사자 수 파악, 사업주 특정을 위한 계약 관련 실태 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반적으로 웹툰 작가들은 데뷔보다 활동의 유지가 더욱 힘들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에 관한 문제보다 부업의 활동에 관심이 높거나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높으며, 포털의 경우 3개월 마다 작품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가들은 자신들이 3개월 계약의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 최근 웹툰 작가의 보수는 네이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2차 저작물에 관한 수익을 위하여 포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기도 함.

- 계약 시 전속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작업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경력 작가들의 경우 먼저 전속계약을 요청하기도 함.
- 웹툰 작가로만 구성된 에이전시는 업무를 공유하기 위하여 경력이 오래된 작가들이 만든 경우이거나, 만화, 영화, 예능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된 에이전시도 등장
- 웹툰 산업에서 그림 작가와 마찬가지로 스토리 작가의 비중은 높으며 스토리 작가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작가보다 겸업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무의 규제나 관리의 강도는 신생 플랫폼일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과 같은 경우 오히려 작가들의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됨.
- 자율적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근무시간을 정해주지 않지만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쉬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셈.
- 웹툰 작가 평균연령은 20대 후반으로 타 직군에 비해 낮은 편인데, 따라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관한 문제에 의식이 부족함.
 - 따라서 웹툰 분야 종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후 점차적인 도입이 필수적으로 여겨짐.
- 예술인에 대한 고용에 관한 문제는 작가 개인마다 의견이 매우 상이한데, 면담에 참가한 작가와 같은 경우는 예술도 중요하지만 생계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가도 노동자이며 고용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
- 고용보험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은 무엇보다 프리랜서 작가들의 특성 상 구직 활동을 하며 구직 급여를 받을 시간에 어떻게든 작업을 이어나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인식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지 않다면 의무가입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 하지만 웹툰 분야에 계속 종사하다가 다른 분야로의 이직 과정에 있어서 구직 급여의 수급은 매우 큰 혜택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제5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규모 추정

제1절 예술인 규모 추정

- 문화예술분야 및 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예술인 직군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본 연구에서는 이승렬(2012)의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제시된 직군을 우선적으로 규모를 추정하였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제외된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예술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³⁾>의 통계를 이용하였는데, 조사 결과는 소분류까지만 공개되기 때문에 2015년 기준 취업자 수는 세분류 직종의 개수로 나누어 규모를 추정하였음.
- 그 결과 2015년 기준 300,660명으로 추정
 - 지역별고용조사시기(4월 22일-5월 11일)에 다양한 사유로 경력단절이 있는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함.
 - 문화예술분야의 관리 및 기획자는 총 17,800명으로 추정되며 작가 및 출판물 전문가는 55,200명,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조원은 13,500명으로 추정.
 - 시각예술인과 공연예술인은 62,000명, 영화 및 영상관련 전문가는 66,500명으로 추정
 - 분장사는 52,160명, 공예가는 30,000명, 기타 예술인은 3,500으로 추정되어 총 예술인은 300,660명으로 추정

3) 지역별 고용조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해당하는 전국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임

- 김효정(2011)의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에서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있던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와 김효정(2011)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과 황준욱(2014) <공연예술 직업분류체계연구>에 포함되어있던 제품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는 본 연구의 예술인 추정에서 제외
- 제외된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의 수는 35,007명, 디자이너는 219,000명 임.

제2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규모 추정

■ <2016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의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군 추정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수행함.

- <2016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700명의 표본을 수집하여 계약 실태 및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조사 수행
- $p(a_i) = a_i(s_i, \bar{q}_i, at_i, p_i^*)$
 - $p(a_i)$ 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성을 의미함.
- s_i 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 상황임.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 $\bar{q}_i = q(f^*, p^*)$
 - \bar{q}_i 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갖출 것에 대한 기대임. 이는 미래 예술활동의 기간에 대한 예측인 f 와 과거 예술활동 경험인 p 를 고용보험의 요건과 비교한 f^* 와 p^* 의 함수임. 표준계약의 보급으로 노동으로서 예술활동이 가졌던 불확실성, 불명료성이 개선 중이나 여전히 상당함을 고려할 때 미래 예술활동에 대한 예측이나 과거 예술활동에 대한 경험만을 가지고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따라서 고용보험 수급

자격 확보에 대한 기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과거의 경험이 모두 작용할 것으로 전제함.

○ a_i 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임. 새로운 제도로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구분되는 태도임.

○ $p_i^* = 1 \Leftrightarrow p_i \geq r$
 $p_i^* = 0 \Leftrightarrow p_i < r$

- p_i^* 는 고용보험 지불의사인 p_i 가 고용보험료인 r 보다 큰지를 비교한 값임.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변수를 y_i 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

○ $y_i = 1 \Leftrightarrow p(a_i^*) > 0$
 $y_i = 0 \Leftrightarrow p(a_i^*) \leq 0$

■ 이상의 모형에 <2016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적용한 결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300,660명 중 임의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군은 17,739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의 경우 27,961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대한 기대 요건을 미래 예측과 과거 경험 모두 충족하는 것에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자군의 증가가 추정됨.

<표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군 추정 (단위: 명)

	월 보험료 3만원	월 보험료 2만원
모델1 : 과거와 미래 기준 모두 충족	17,739	27,961
모델2 : 미래 기준 충족	30,367	52,916
모델3 : 과거 혹은 미래 기준 충족	36,981	65,845

■ 예술인의 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은 현실에서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예술인 고용보험의 존재와 적용 방식에 대한 홍보의 효과성에 따라 가입율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실제 예술인이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본인과 유사한 동료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수급 경험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제6장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제1절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기존연구

- 고용보험 재정추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는 예술인을 몇 개의 주요 소그룹으로 나누고 소그룹별 재정추계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됨
-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수 상황에 대한 논의 및 주요 쟁점 도출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재정추계를 수행함
 - 대상
 - 보험요율
 - 보험사업의 범위
 - 피보험단위기간
 - 실업급여 인정기준
 - 실업인정 상태
 - 구직급여 수급요건
-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소그룹별로 수입과 지출을 추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소그룹별 계정의 보험료 수입

- 보험료 수입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일인당 평균 고용보험 납부액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임금근로자 수 × 고용보험가입률
- 일인당 평균 고용보험 납부액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고용보험요율

■ 소그룹별 계정의 실업급여 지출

- 실업급여지출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일인당 평균 수급액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대상 실업자 수 × 소그룹별 신청비율
- 일인당 평균 수급액 = 평균 수급일수 × 일인당 평균 일 수급액

■ 예술인 고용보험은 도입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 재정추계에 대한 주요 변수에 대한 예술계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고용보험요율 중 문체부나 예술인복지재단의 부담비율에 대한 의견
- 고용보험요율 중 개인부담비율에 따른 고용보험가입율에 대한 의견
- 평균수급액에 대한 의견
- 실업인정에 대한 의견

■ 예술인실태조사의 경우 각 소그룹별 주요 사안을 설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대상
- 보험요율
- 보험사업의 범위
- 피보험단위기간

- 실업급여 인정기준
 - 실업인정 상태
 - 구직급여 지급요건
- 예술인실태조사의 소그룹별 주요 평균치 데이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혜 횟수 및 금액
 - 수입: 가구총수입, 예술활동수입, 비예술활동수입
 - 예술활동기간

제2절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등급별 가입자수와 전체 가입율이 파악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을 추계할 수 있음.
- 파악된 정보를 이용하여 추계할 때, 소득분포가 균등분포라고 가정하는 경우와 가입율이 균등분포하고 가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음.
- 동일가입비율모형은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는데, 고용형태와 소득구분법에 따른 가입 자료를 활용하여 가입비율이 소득등급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분석함.
 - 동일소득등급비율모형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설문조사를 이용하는데, 소득등급별 가입자비율을 이용하여 소득등급별 모집단 추정인원을 시산하여 분석함.
- 동일가입비율모형과 동일소득등급비율모형 각각에 대한 고용보험 수입, 지출, 수지 추계치를 시산한 후, 고용보험 재정추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동일가입비율모형에서 피보험자 수는 (종사자 수 × 가입률)이며 종사자 수는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에서 파악한 14개 분야 131,332명으로 추정하고, 가입률은 임의 적

용 시 가입률로 상정할 수 있는 25.1%를 베이스라인으로 하며 향후 그밖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변화를 살펴봄.

- 동일가입비율모형으로 시나리오별(보험료율, 지출추계방식, 최소 근속기간 기준) 수입 및 지출 추계를 요약

〈표 2〉 보험료율 2%, 자영자 연령별 평균 수급일수 기준 추계

(단위: 백만원)

	수입(2%)	실업급여	수지차	연말적립금	적립배율
2016	5,847	1,780	4,067	4,067	-
2017	6,022	3,928	2,094	6,161	1.04
2018	6,203	4,209	1,994	8,155	1.46
2019	6,389	4,335	2,054	10,209	1.88
2020	6,581	4,465	2,116	12,325	2.29
2021	6,778	5,348	1,430	13,755	2.30
2022	6,982	5,508	1,474	15,229	2.50
2023	7,191	5,673	1,518	16,747	2.68
2024	7,407	5,844	1,563	18,310	2.87
2025	7,629	6,019	1,610	19,920	3.04

- 동일소득등급비율모형에서 피보험자 수는 (종사자 수 × 가입률)이며 종사자 수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파악한 27,961명으로 추정하고, 가입률은 임의적용시 가입률로 상정할 수 있는 산재보험가입비율에 근거하여 베이스라인으로 하며 향후 그 밖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변화를 살펴봄.

- 동일소득등급비율모형으로 시나리오별(보험료율, 지출추계방식, 최소 근속기간 기준) 수입 및 지출 추계를 요약

〈표 3〉 보험료율 2%, 자영자 연령별 평균 수급일수 기준 추계

(단위: 백만원)

	수입(2%)	실업급여	수지차	연말적립금	적립배율
--	--------	------	-----	-------	------

2016	8,173	0	8,173	8,173	-
2017	16,346	8,173	8,173	16,346	1.00
2018	16,346	10,216	6,130	22,476	1.60
2019	16,346	10,216	6,130	28,606	2.20
2020	24,519	15,324	9,195	37,801	1.87
2021	24,519	15,324	9,195	46,996	2.42
2022	24,519	15,324	9,195	56,191	3.07
2023	32,692	20,432	12,260	68,451	2.75
2024	32,692	20,432	12,260	80,711	3.35
2025	32,692	20,432	12,260	92,971	3.95

- 이상의 두 가지 추정방식에 따라 기본시나리오, 즉 보험료율이 2%인 경우 계산한 예술인고용보험 수지추이를 보면 적립배율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안정적인 적립배율의 존재로 인해 고용보험의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에서 가정한 파라미터들이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모형 자체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나리오별 재정추계 추이를 고찰하여야 할 것임.
- 실질적으로 예술인고용보험이 도입되면 도입 초기의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적절성에 위반되는 사항이 나오면 고용보험제도를 신속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음.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고용보험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감대 존재

○ 대부분 높은 비율로 동의하였으나 일부 예외 존재(공연예술 83.7%, 방송작가 92.7%, 성우 61.2%)하며, 반대 사유는 “고용보험 수급조건 충족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나(공

연예술 54.8%, 성우 57.9%), 방송작가는 “보험료 부담”이 53.8%로 가장 많았음.

■ 고용보험이 예술인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 “예술인이 노동자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예술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지위에 있거나 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과 재원 투입에 따라 기존의 예술정책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짐.

■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한 선호도 비교

- 임의가입 선호도가 당연가입에 비해서 매우 높음(공연예술 83.7%, 방송작가 59.5%, 성우 76.7%).
- 임의가입을 선호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1) 예술인 고용보험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 부족, 2) 예술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해석이 가능함.

■ 공연예술계의 당연가입 방식 적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회의적임.

- 공연예술계 종사자의 현재 종사 현황을 볼 때 다수가 수급조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년 중 1년 미만 일한 기간의 비율이 52.8%), 당연가입 적용시 고용보험료 부담하지만 수혜를 받기 힘든 집단이 매우 큰 비율로 존재함.
- 공연예술계의 경제적 취약성이 고용보험 도입에 큰 난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소수의 상업 연극을 제외하면 지원금에 의존하여 공연을 지속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뮤지컬의 경우에도 시장 기반에 비해 외형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수입 구조의 안정성이 취약하여 유망한 기획자가 자살 등의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들이 최근에 나타났음. 또한 영세한 극단이나 제작사의 경우 고용보험의 도입 시 행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와 같은 공연예술계의 상황에서 극단이나 제작사에게 당연가입의 적용을 강제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며 예술 활동의 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위험이 존재함.

■ 방송작가의 당연가입 방식 적용을 위해서는 방송작가 내부의 이질성에 대한 고려와 방송국과의 협력적 관계 전제되어야 함.

- 방송작가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활동하였으나(1년 미만은 18.0%), 미래 예측 비율은 23.2%로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며 고용의 불안전성에 대한 체감 정도가 매우 높음.
- 방송작가의 경우 경력과 업계 내 위상에 따라 내부 분화 정도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방송작가의 사용자 종속성이나 전속성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어려움.

■ 성우의 현재 종사 현황을 볼 때 당연가입 방식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동시에 여러 방송국 일하는 경우가 61.7%이며, 이중 81.1%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방송국에서 일하는 경우여서 전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성우 일자리의 다변화에 따라서 방송 외 수입의 비중이 방송 수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정도여서 방송국을 사업자로 하는 당연가입의 적용이 곤란함.

■ 웹툰 작가의 당연가입 방식 적용을 위해서는 에이전시 확대나 다양한 저작권 수입의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사용자 종속성에 대해서는 공간적 종속성이 없고, 시간은 마감시간의 종속성 만이 있음. 대체로 포털에 약간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 특히 작은 규모의 포털 일수록 간섭의 강도가 강함. 하지만 포털로부터의 직접적인 구속 보다는 독자로부터의 구속을 훨씬 더 심하게 체감
-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불확실함.
- 최근 5년 확산 추세에 있는 에이전시(누룩미디어, YB LAB, 재담미디어, 드림커머스, 투유 등)의 다양한 성격 변화에 따라 전속성 판단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가입 방식만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임의가입 방식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당연가입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업계 내부

의 장애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면서 당연가입 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정책제언

■ 임의가입을 기본으로 당연가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회정책적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가입이 바람직함. 하지만 당연가입의 장애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당연가입의 상황에서 수혜를 받기 어려운 집단들이 많음.
- 당연가입의 적용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당연가입 적용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당연가입과 임의가입 중 당연가입만을 위주로 하여 임의가입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따라서 임의가입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임.

■ 임의가입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협력적 노력 필요

- 예술인 협회, 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임의가입자 확대 방안의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다양한 예술직종의 협회,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협회 단체들에게 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임의가입이 기본적으로는 개인 단위로 가입하지만 예술인들이 동료 예술인들과 분업적 협력적 관계에서 예술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의 사업 설계 필요

■ 예술인복지재단의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예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법」에 근거 운영 중인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가 가장 적합한 장치이나, 예술인들의 단속적 활동 경향을 고려할 때 최근 활동 경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활동증명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표준계약제를 전제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활용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술인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적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

- 예술인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적용은 해당 직종 내 거대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 역량을 갖춘 경우일수록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당연가입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직종의 경우 이들 사업자와의 전향적인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 설계와 현황 자료 확보를 수행해야 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예술인 복지 정책의 전개

■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법제화 진행

- 2002년부터 예술인 복지조합, 예술인공제회 등의 정책 공약 제시되고, 2009년부터 예술인복지법 의원 발의 시작
-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사망으로 예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배경으로 2011년 10월 예술인복지법 국회 통과 및 2012년 11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2013년 12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 예술인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예술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 제공

- 예술인복지재단은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보장 지원 등의 사업 수행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예술활동 증명 제도 도입

■ 예술인 산재보험을 2012년부터 도입하여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예술활동 중 부상 및 예술활동에 기인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생계유지비를 지원

- 2013년부터 산재보험료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5년부터 보험료의 50%를 지원

■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창작안전망 구축’ 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와 문체부 협업 과제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진행

나.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

■ 최근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외 차원으로 축적되어 왔는데, 국제적으로는 예술인의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가 많으며, 국내적으로는 예술인 복지정책 도입을 계기로 학술 연구와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음.

- 국제적으로 수행된 연구의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예술가의 노동시장, 고용실태, 소득, 직업훈련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 국내에서 수행된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는 특히 예술인복지법 제정 논의를 계기로 최근 활성화되었으며, 정책 부처의 위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 방안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음.

■ 그럼에도 예술인들의 특수한 근로 상황과 다양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임.

- 다양한 예술 장르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예술분야 내에서도 직종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동일 직종 내에서도 직업경력에 따라 위계 간 차이가 커서 상당한 내적 분화가 존재

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관련 연구의 필요성

■ 효과적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예술인 수혜 범위를 확대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예술인들 다수가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식 계약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노동 관행으로 인해 고용보험 도입 시 수혜 인원 확보에 대한 우려 존재
-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예술인들을 인정한 형태의 고용보험을 도입할 경우, 수혜 대상

확보에는 효과적이거나 예술인과 예술계 현황이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예술인들의 특수한 근로 상황과 다양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예술 장르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예술분야 내에서도 직종 간 차이가 크고, 동일 직종 간 내에서도 직업경력의 위계 간 차이가 커서 상당한 내적 분화가 존재
- 최근 예술계의 성장, 세대간 가치관 차이, 문화산업정책의 영향, 산업화 등으로 인해 빠른 변화가 진행 중

■ 국외 사례의 심층 분석과 예술계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예술인 고용보험을 앞서 도입한 선진국도 재정 안전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 모델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

2. 연구 목적

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 예술인의 고용계약 및 종사 현황 파악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예술인의 태도 파악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예술인 협회·단체 관계자 의견 수집

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 검토 및 현실적 방안 제시

- 다양한 분야의 예술 생산의 특성에 맞춘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술 분야 내

부의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

- 단속적 실업에 노출된 예술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통해 업계 종사 및 경력 개발 가능성 제고함으로써 문화융성에 기여

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제고

- 예술계 생태 파악을 통해서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된 정책 생산자 및 예술계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보도자료로 활용
- 예술생산의 현황에 관한 기초 정보 및 자료 생산으로 법학, 경제학, 사회학, 미학 등 예술인 복지 관련 학술연구 활성화 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가. 예술인의 현황 및 고용형태 등 실태에 관한 분석

- 예술인의 노동시장에서 노무제공형태, 계약형태, 종사형태 파악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의 2차 자료 분석 수행
- 예술인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조사 수행
- 개별 심층면접 및 집단초점면담(FGI) 등의 방법을 활용한 심층면담 수행

나. 선진 외국의 고용보험 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외국의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사회금고 등 사회보험의 적용방식과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 분석으로 시사점 도출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에 활용
- 프랑스의 엔테르미팅이 고용보험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축소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의 적용 방식을 이해하고 장기적 지속성 확보를 위한 변화 노력 파악

다. 예술인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방안 제시

- 실태분석 및 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 적용대상, 적용방식 및 적용사업, 보험료, 구직급여 등 적용방안 도출

■ 재정안전성과 수혜 예술인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예술인 조사 필요

- 적용방식: 임의가입 / 의무가입의 구분
- 종사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특고 고용방식의 적용 가능성 분석
- 적정 보험요율과 가입규모 추정: 자영업 고용보험의 요율을 적용할 경우 2.0% 적용으로 일반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부담 0.65%에 비해 높은 편으로 가입 저조 가능성 존재
- 재정추계 제시: 실업인정 사유, 채용 및 보험료 등에 따른 영향 파악
- 별도의 채용 확보 가능성 탐색: 프랑스의 <전문화및연대기금>의 사례 참조

2. 연구방법

1) 문헌고찰

■ 기존에 수행된 예술인실태 조사 자료와 쟁점 분석

2) 혼합연구방법론

■ 정성조사와 정량조사의 혼합연구방법론(Mixed-Method Research) 사용하여 자료 수집

가) 정성조사

■ 집단 유형별로 심층면접 및 FGI 수행

-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 분석 수행으로 예술가 집단 유형화
-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가활동 증명 DB를 이용한 자료분석의 유용성과 한계 파악, 서울문화재단의 패널이나 기타 협회 및 업체 조사의 필요성 검토

나) 정량조사

-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참고 및 활용
- 2015년 문체부가 실시한 「예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
 - 그동안 예술인 현황 파악이 예술단체 회원 명부와 예술가 등록에 의존 한계 가졌음.
 -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은 예술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과소 등록 추정
 - 예술인실태조사는 조직화된 예술인 중심의 편향 가졌음.
 - 2015년 실시된 예술인실태조사의 경우 여전히 단체 중심의 한계를 가지나 조사 대상 단체수 확대로 한계 보완
 - 2015년 변경 된 내용의 예술인실태조사의 명칭, 모집단, 표본수 및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1-1〉 2015년 실시 된 예술인 실태조사 변경사항

구분	2012년	2015년	변경 내용
명칭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예술인실태조사	예술인복지법에 근거 광의의 문화예술인 개념에서 법적 개념으로 조정 및 명확화 변경
모집단	예술분야 협회 및 단체 회원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예술인, 예술분야 협회 및 단체 회원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품질진단 문제제기에 따라 조사모집단 확충

표본수	2,000명	5,008명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품질진단 문제제기에 따라 표본수 확충
조사 항목	10개 분야 35문항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4개 분야 44문항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예술인 복지법의 분야를 고려하여 세분화(변경 12개, 삭제 17개, 추가 32개)

- 특히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에 관한 설문 항목에서는 단순히 소속단체를 묻는 기존의 질문에서 전업 종사여부 및 고용형태,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의 업무 내용,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형태 등을 심층적으로 묻는 조사항목이 9개로 추가
- 또한 기존에 없던 ‘생활 및 복지’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실업급여 수혜 경험·횟수 및 금액, 업무상 상해 경험 및 보상, 경력 단절 경험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의 추가 및 삭제/보완 된 조사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2〉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추가 및 삭제 현황

	2012	2015	추 가 항 목	삭 제 항 목	보 완 사 항
계	35	44	32문항	17문항 (분야별 항목 3문항, 통합 항목 14문항)	12문항
예술활동 분야 (12년: 10개 분야별)	7	11	현재의 직업 및 주 활동 직업, 저작권 보유 여부, 외국 예술활동 경험, 문화예술교육 활동 여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유 여부 등	데뷔이후 활동부문 작품 발표 여부·횟수, (1년간) 다른 예술 부문 작품 발표 여부, 다른 예술 부문 발표 작품 수 등 ※2012년에는 문학/미술/사진/건축/국악/음악/연극/무용/영화/대중예술 10개분야 별도 설문안	활동 예술 분야, 주 활동 분야, 주 활동 분야 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 입문 연도, 입문 경로 ※2012년:문학/미술/사진/건축/국악/음악/연극/무용/영화/대중 예술 10개분야 별도 설문안

예술활동 내용 (12년: 단체활동 및 예술창작 활동)	4	7	개인 창작공간 보유 현황, 수입 및 지출 현황,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 문화향수 실태 등	예술인 단체 가입 여부,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의향,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등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경험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12년: 단체활동 및 예술창작 활동)	1	12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및 고용형태,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의 업무 내용, 예술활동 외 다른 직업 종사 이유, 예술활동 관련 계약 및 체결 형태, 부적절·부당 계약 내용, 체결 계약의 이행 성실성 등	-	주 평균 투입 시간
생활 및 복지	-	9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실업급여 수혜 경험·횟수 및 금액, 업무상 상해 경험 및 보상, 경력 단절 경험 등	-	-
예술정책 및 만족도 (12년: 창작여건 과 만족도, 창작지원금 수혜, 문화예술 정책)	15	5	-	문화예술 분야의 성공 조건 문화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 상충, 문화예술 발전 위한 문화예술인의 과제	창작활동 관련 지원수혜 여부, 예술활동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 예술정책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이 본 연구에 직중분석 되어야 할 내용임

- 기존의 예술인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상세문항이 포함된 예술인실태조사를 설계하여 수행



제2장

예술인 고용보험의 정책적 논의 전개 과정

제1절 국외 예술인 복지사례

제2절 국내 예술인 복지와 고용보험

제1절 국외 예술인 복지사례

1. 국외 예술인 복지 관련연구 현황

- 국제적으로 예술가의 노동시장, 고용실태, 소득, 직업훈련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Filer(1986)는 미국의 1980년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여 예술가에 대한 통념과 달리 예술가들이 직업훈련 및 개인특성이 유사한 준거집단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지 않음을 실증함.
 - Menger(1999, 2006)는 예술가 노동시장과 예술가 경력의 이해 관련 사회과학적 쟁점들을 소개하고 예술가의 과잉공급 등의 이슈를 논의함.
 - Alper와 Wassall(2006)는 미국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1940년부터 2000년까지 예술가 집단의 동태와 소득 추이 등을 분석하였음.
- 미국 국립예술기금 NEA는 2010년에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고용 및 임금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뉴질랜드도 문화분야 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고용시장에서 타 분야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예술가가 시간제, 계약직, 프리랜서 형태로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용형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예술가의 고용실태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가 수행 중
 -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를 중심으로 2009년 UNESCO의 문화통계분류(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를 바탕으로 시작, 2013년 5월 '유네스코 항저우 선언'으로 구체화, 2013년 예비조사 후, 2015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문화 분야 고용에 관한 조사(the new global cultural employment survey)를 수행 중

- 2013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이제까지의 개발과 발전 계획에서 문화가 그 중요성만큼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Post-2015>의 개발계획에 문화가 주요 의제로 포함될 것이 요구됨.

2.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체계 앵페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

1) 공연예술분야 실업보험 앵페르미땅의 개요

■ 안주엽·황준욱(2014)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에서 프랑스의 공연예술분야 실업보험 제도인 앵페르미땅을 집중 분석하였는데, 이 제도는 공연예술분야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에게 실업보험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1)공연예술가와 2)기술지원 인력으로 구분하여 비정규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프랑스 실업보험조약 부칙 8장과 10장에 공연예술분야에 해당하는 앵페르미땅 체계를 규정하고 기간을 정한 계약(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시킨 것

○ 앵페르미땅 제도는 일반 실업보험과 다른 체계로 운영되는 특수한 실업보험 체계로 공연예술분야의 예술가 및 기술지원 인력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공연예술 및 영상분야의 작업은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작품의 질적인 저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프랑스의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관련 실업보험 체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노동을 하는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고용체계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연 및 시청각 분야 종사자들 중 제작자 등 고용주와 작가 등 모든 종사자들은 임금

근로자로 간주

○ 프리랜서 방식으로 활동하는 독립 노동자(travailleur indépendant)는 제외함.

■ 본래 엔떼르미땅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공연예술 분야의 단기 계약직(Intermittent du spectacle)을 칭하는 것으로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맺는 인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① 영화제작, 방송 또는 공연 관련 직업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종사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활동이 실업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노동법전 L.5425-3)

②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 혹은 일자리의 일시적인 특성상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정규직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제작, 방송, 그리고 공연 활동 영역에 속한 근로자(노동법전 L.6331-55)

■ 공연예술분야 실업보험인 엔떼르미땅 체계의 기원은 일반 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 법령이 만들어지고 난 후인 1930년대이며, 일반 근로자 보험 체계에 포함 된 것은 1965년임.

2) 가입대상 및 적용방식

■ 예술인들이 엔떼르미땅 실업보험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음 9개의 영역에의 활동을 증명하여야 함.

○ 해당영역은 시청각 제작, 영화 제작, 음향편집, 창작 및 행사서비스 기술지원, 라디오 방송, 민간 및 지원된 공연, TV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 등

■ 실업보험조약 부칙 8장과 10장에 규정된 엔떼르미땅 실업보험 체계를 통해 기간을 정한 계약(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으로 근무하는 공연예술분야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부칙 8장은 프랑스 직종 분류체계 중 일반 노동자와 기술직을 대상으로 함.

- 비정규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원칙은 실업보험조약의 부칙(annexes) 8과 10에 정의되어 있는데, 부칙 8은 녹음, 영화 및 시청각물의 창작, 라디오, 방송, 공연 분야의 노동자와 기술자, 부칙 10은 공연예술인에 관한 내용
 - 창작자로 구분되는 예술가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소득의 원천으로 하며, 엔떼르미땅과 같이 실업수당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사회보장을 받음.
- 고용주는 증명서를 통해 엔떼르미땅의 근로 기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영상 및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주는 월간 증명서, 그 외의 분야는 간단확인서 등을 통해 증명
 - 이 과정은 실업급여 담당 기관인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전달되며 근로자가 센터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3) 제도 운영 현황

- 엔떼르미땅 실업보험 급여액은 해당자가 받은 임금, 일한 시간, 정해진 계수 등 3가지를 종합하여 결정
 - 엔떼르미땅 실업급여 지급은 신청 후 일정기간 심사대기(7일) 및 임금 수준에 따른 지급지연 기간을 거쳐 지급
- 수급 조건을 채우기 위한 근로시간은 2014년 기준 10.5개월(공연예술가), 10개월(기술지원인력) 동안 507시간이며, 2003년 법률 개정 이전에는 12개월 동안 507시간이었음.
 - 위에서 살펴 본 가입 기간(507시간 등) 판단 기준은 크게 근로 인정노동기간(périodes assimilées)으로 구분
- 실업보상금 수급기간은 243일, 즉 8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은 노동시간과 급여의 비율에 따라 결정됨.
- 엔떼르미땅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계약을 통한 임금 노동 혹은 비임금 노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유예기간(jours de décalage)이라고 불리며 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

■ 또한 공연예술분야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하여 전문화연대기금(Le Fonds de Professionnalisation et de Solidarité)을 두어 추가적 지원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실업보험 수급이 종료된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로 지원 자격 조건은 앙페르미땅 실업보험 급여를 받았던 대상자가 노동 기간이 부족하여 급여를 위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그밖에 프랑스에서는 공연예술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분야 직업훈련휴가, 직업훈련 기금 등 직업훈련관련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활동보험및훈련기구(Assurance Formation des Activités du Spectacle, AFDAS)에서 직업훈련을 위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4) 최신 이슈⁴⁾

■ 앙페르미땅 보험체계는 일반 실업보험에 비해 손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 2013년 기준 10억 유로의 손실 발생하여 실업보험 전체 재정에 부담을 주어 논란이 심화되었음.

■ 2014년 앙페르미땅 제도 개혁 이후에 갈등이 계속 심화되었고, 2016년 5월, 앙페르미땅 관련 노사측의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피보험 기준시간이 현재 10.5개월(예술가), 10개월(기술자)에 507시간에서 2003년 개혁 이전의 기준인 12개월에 507시간으로 복귀

- 단, 2003년 제도로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예술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한조건이 붙음.
(실업급여 수급 개시일 확정)

○ 실업보험에 대한 고용주 부담비율 8%를 9%로 인상 되었으며, 그 외에도 병가에 대한 내용, 임신부에 대한 내용 등도 예술가 입장에서 개선된 방향으로 협상됨.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뉴스 참조 후 재정리(<http://news.kawf.kr/>)

- 협상 이후 정부에서 9천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3.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의 개요

■ 독일에서는 1981년⁵⁾ '예술가사회보험법'(Kue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을 도입하였고, 1983년부터 자영예술가와 언론출판인들에게 의료, 연금, 요양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가 사회보장기금(Kuenstlersozialkasse⁶⁾)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김수갑(2013)⁷⁾에 따르면 예술가사회보험법 제정의 동기는 1972년의 독일에서 실시된 '예술가 경제 상황조사'와 1975년의 '예술가의 직업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가 계기가 된 것

○ 이 보고는 1971년 '교육·학술 위원회' 보고에 기초하여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에게 예술가의 실태조사의 실시를 요청한 결과인데, 이 조사를 통해 독립 예술가가 일반적인 고용 노동자에 비하여 열악한 생활상황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음.

- 조사 내용은 예술가의 범위, 예술가에 관한 평가, 교육과 활동영역, 직업, 예술가의 노동시장, 위탁시장, 경제적·사회적 상황, 타국과의 비교 등

2) 가입대상 및 적용방식

■ 예술가사회보험의 적용 방식은 의무 가입으로 자영 예술인 및 출판인 모두에게 적용

5) 실제로 '예술가사회보험법'은 1981년 1월 27일에 인정되어 1981년 8월 1일에 공포된 후 1983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음

6) 예술가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의 집행 기금

7) 김수갑(2013),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Vol.14), 2013, 99-122

○ 자영 예술인 및 출판인은 예술 및 출판 업무를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수입이 없어도 보험이 유지됨.

○ 예외적으로 자율적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① 일시적인 미미한 수입만이 있는 자, ② 소득이 연간 3,900유로 이하인 자, ③ 보험 가입 후 6년 내 소득이 2회 이하인 자로 규정함.

■ 예술가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자이며 이 법률에 있어 예술가는 음악, 공연예술, 조형예술을 창조, 영위 혹은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그밖에 저술가는 작가, 저널리스트 또는 출판 활동을 행하는 자로 규정함.

○ 예술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언어, 조형예술, 음악, 공연예술의 4가지 범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술인 직업분류를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보험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며 연금보험, 질병보험, 재해보험 및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술가가 이러한 보험제도에서 얼마만큼 보호되는가는 예술가가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는가에 의거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예술가의 법적 지위의 범주를 ① 노동자로 위치 지워지는 예술가, ② 노동자 유사근로자⁸⁾(Arbnehmerähnliche Personen), ③ 독립적 예술가⁹⁾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보험료는 예술가 본인 50%, 국가 20%, 예술작품 사용자 30%으로 각각 부담하여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는 형식

○ 예술가의 작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 및 단체는 매월 일정 비율의 예술가 사회보험료¹⁰⁾(Künstlersozialabgabe)를 지불해야 함(2015년 기준 사용자가 창작자에게 지불

8) 사용자 종속성이 있는 근로 형태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수입을 얻는 형태 중간

9)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업무를 행하고 스스로 노동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적 종속성이 없고 더욱이 경제적 종속성도 결하고 있는 것이 조건으로 1976년 이후 연금보험과 질병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10) 기금에 가입한 예술가들에게 지급된 전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년 독일의 노동사회부와 경제부가 실사용자 부담률을 결정함. 이는 기금에 적립되어 사용자 부담금(30%)으로 지불됨

한 총 금액의 5.2%)

- 실사용자가 지불한 사회보험료(KSA)는 사회보험기금(KSK)에 적립되어 운용됨.
- 예술 작품 실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표 2-1〉 사용자(창작물 실 사용자)의 구분

분류	세분류
작품 실사용자 (Verwer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사, 언론사 ▪ 극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및 이와 유사한 회사(공연 및 전시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닌 경우) ▪ 극단, 콘서트, 객연 등의 감독 및 이와 유사한 회사(공연 및 전시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닌 경우) ▪ 라디오/TV 방송사 ▪ 영상/음악 제작자 ▪ 박물관, 갤러리 및 미술품 거래회사 ▪ 광고 및 홍보 대행사 ▪ 버라이어티 쇼 및 서커스 회사 ▪ 예술 및 출판 활동에 관련된 교육기관 등

* 자료원: 독일예술가사회보험 홈페이지 참고 및 재정리(<http://www.kuenstlersozialkasse.de/>)

3) 제도 운영 현황

■ 예술가사회보험기금 운용의 핵심은 작품 실사용자가 지불하는 예술가 사회 보험료 (Kuenstlersozialabgabe)이며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음.

- 1999년 이전: 예술 및 출판 분야의 4영역(언어, 조형예술, 음악, 공연예술)의 사회보험료 비율이 각각 다름.
- 2000년 이후: 4영역의 보험료 비율이 일치되었으나, 기금의 전년도 운용실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2015년 이후: 예술인을 고용에 대한 기업 및 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 고갈의 안정화를 위하여 보험료 비율을 동결시킴. 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보험료 때문에 기금

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 및 단체의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기도 함.

〈표 2-2〉 2016년 기준 예술가사회보험료 부담률

구분	총액	피고용인 부담률 (Arbeitnehmer- anteil)	고용인 부담률(Arbeitgeberanteil)	
			국가(Bund) 부담률	실사용자(Verwerter) 부담률
비율	100%	50%	30%	20%
2016년 보험료	연금	18.7%	9.35%	9.35%
	건강	14.6%	7.3%	7.3%
	요양	2.35%	1.175%	1.175%

* 자료원: 독일예술가사회보험 홈페이지 참고 및 재정리(<http://www.kuenstlersozialkasse.de/>)

4) 최신 이슈¹¹⁾

■ 2014년 7월 ‘예술가사회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법(Gesetzes zur Stabilisierung des Kuenstlersozialabgabegesetzes)’ 이 제정

○ 법 제정의 이유는 그간 작품의 실사용자(Verwerter)들이 부담하는 예술가사회보험료(Kuenstlersozialabgabe)에 대한 요율이 2012년 3.9%, 2013년 4.1%, 2014년 5.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논란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

〈표 2-3〉 실사용자(Verwerter) 사용부담률 증가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사용자(Verwerter) 부담률	3.9%	3.9%	3.9%	4.1%	5.2%	5.2%	5.2%

■ 세금 안정화 입법 후 사회보험료의 비율이 2015년과 2016년 5.2%로 유지되어 왔음

11) 독일 연방정부 웹사이트 참조(<https://www.bundesregierung.de/>)

며(시행일: 2015년 1월 1일) 이를 통해 사용자의 부담과 논란을 완화 시키고자 함.

- 추가적으로 보험료 정기 납세에 대한 연금보험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예술인 사회보장기금(KSK) 자체 평가기준을 도입하였음.
- 또한 소액경계선 도입으로 1년에 450유로 이하 보수 받는 예술가의 고용주에게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

4. 오스트리아의 예술가사회보험(Künstlersozialversicherung)¹²⁾

- 오스트리아의 예술인 관련법이나 사회보장제도는 근본적으로 독일 체계와 매우 유사한데, 독일 내 의무가입 영역 중 요양보험을 제외한 의료, 연금,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실업보험은 해당되지 않음.
- 2000년도까지 음악 및 시각예술분야의 일부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일반 노동자 보험의 범주에 포함 되었으나, 2001년부터 예술분야 영역을 확대하여 연간 일정소득(6,453유로) 있는 자영 예술인은 모두 의무 가입을 하도록 함.
- 2014년 11월에는 예술가 사회보장기금법 개정으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생태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음.
- 독일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서도 그간 사회보장기금법이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가장 최신으로 개정된 내용은 2014년 11월 ‘자영 예술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 로 중개 및 교육 등의 간접적 예술 활동을 하는 자들을 예술인 범주에 포함시킨 것과 위급한 상황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기금(Hilfsfonds)’ 을 신설한 것임.

12) 오스트리아 예술가사회보험 웹사이트 참조(<http://www.ksvf.at/>)

13) 저작권 사용자는 자영예술가들 및 언론출판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자로써, 프리랜서 작가를 고용하는 출판사부터 화가를 고용한 갤러리, 박물관 등 포함

〈표 2-4〉 유럽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사례

구분	내용
프랑스의 엔테르미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엔테르미탕은 공연 및 기타 예술 분야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업보험의 혜택 제공 ▪ 엔테르미탕 보험체계가 일반 실업보험에 비해 손실 가능성이 더 큼: 2013년 기준 10억 유로의 손실 발생하여 실업보험 전체 재정 부담 ▪ 〈전문화및연대기금〉 설치 운영하여 공연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수행 ▪ 프랑스 엔테르미탕에서는 예술인의 실업보험료율(12.8%)이 일반 근로자 실업보험료율(6.4%)의 2배 수준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1983년부터 예술가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와 언론출판인들에게 의료, 연금, 요양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가 사회보장기금(KSK)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 사용자,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예술가에게 연금, 사회보험혜택 제공 (예술가는 50% 부담, 국가가 20%, 고용주 및 저작권 사용자³⁾는 30% 부담) ▪ 고용보험은 없으며, 예술가를 자영업자와 같은 성격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 2014년 7월 ‘예술가사회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법(Gesetzes zur Stabilisierung des Künstlersozialabgabegesetzes)’ 이 제정 ▪ 고용주 및 저작권사용자 부담의 예술가 사회보험료(Künstlersozialabgabe)가 2012년 3.9%, 2013년 4.1%, 2014년 5.2%로 지속적 상승 ▪ 더 많은 예술가 고용위한 세금 안정화 입법 후 사회보험료의 비율이 2015년과 2016년 5.2% 유지 (시행일: 2015년 1월 1일) ▪ 또한 보험료 정기 납세에 대한 연금보험의 평가기준을 강화, 예술인 사회보장기금(KSK) 자체 평가기준 추가 ▪ 소액경계선 도입으로 1년에 450유로 이하 보수 받는 예술가의 고용주에게는 감면 혜택 제공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근본적으로 독일 체계와 유사함 ▪ 2000년도까지는 음악 및 시각예술분야의 자영 예술가만 의무가입에 해당, 2001년부터 예술분야 영역을 확대하여 연간 일정소득(6,453유로) 있는 자영 예술인은 모두 의무 가입 ▪ 2014년 11월 예술가 사회보장기금법 개정으로 예술가 환경 개선 추진 ▪ 사회보장기금법은 수차례 개정, 2014년 11월 개정은 ‘자영 예술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 로 중개 및 교육 등의 간접적 예술 활동을 예술인 범주에 포함, 위급상황의 예술가 대상 ‘긴급구호기금(Hilfsfonds)’ 신설

제2절 국내 예술인 복지와 고용보험

1.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정책 논의 전개과정

- 2013년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창작안전망 구축’ 이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산재보험이 도입된 후,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침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추진 계획을 수립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¹⁴⁾
 - 수혜 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이 승인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 이는 예술가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술 직업군의 복지를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으로 표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동 사업을 통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 수혜 건수는 2015년 약 69건, 2016년에는 약 672건으로 추산됨.¹⁵⁾
- 예술인의 지위와 실태는 매우 복잡 다양하지만 상당수의 비율이 프리랜서로 종사하고 있으며, 그간 예술인의 노동과 생계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다른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와 유사한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음.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 예술인복지사업 상세안내」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 제공

- 프리랜서 중에서도 기존 산재보험법상 전통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까운 경우 즉, 하나의 사업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예술인이 있는 반면, 기존 산재보험법상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예술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

■ 예술인 산재보험이 실행된 이후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국내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 현황

■ 국내 예술인 복지 관련 연구는 최근 예술인복지법 제정 논의를 계기로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정책부처의 위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 방안 연구가 다각적으로 수행되며 성과가 축적되었음.

- 김태완 외(2009)는 한국예술위원회의 위탁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예술인 복지모델로서 예술인 공제사업을 제시하고 가입 대상 범위, 가입 기준 및 절차, 가입자 추정을 제시하였으며, 유니버설 보험으로서 공제상품 설계 방안을 제시함.
- 최정민 외(2013)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바탕으로 「예술인복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여 다른 사례들과 달리 공식적 참여자나 정책선도가 보다 네티즌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제시함.
- 문화체육관광부(2012)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인복지정책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예술인의 범위와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을 제시함.
- Peschner(2009)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개최한 <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에서 독일의 예술가사회금고에 대해 한국 연구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독일의 예술인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을 제시함.

- 이영리(2012)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의 기본 철학으로서 연대의식이 가지는 의의를 제시하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및 창작지원제도를 소개함.
- 장홍근(2012)는 경력관리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예술인들에 대한 노동시장적 접근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단속적 예술활동 경력 활동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공연·무대 예술인 경력 및 관리실태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취업 현황, 공연활동경력, 공연활동경력 증빙 실태 및 관리 정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경력증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김종국(2012)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자협회, CJ E&M, CJ CGV 간의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체결(2012) 등 영화계에서 진행되어 온 고용복지안을 소개하고 영화인 입장에서 예술인복지법의 의의를 분석함.
- 김종국(2014)는 영상제작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예술인복지법」의 인지도 여부, 당사자와의 관계, 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분석하고 예술기금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함.
- 이승렬 외(2012)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에서 연극분야와 방송제작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근로자성, 계약실태, 근로시간 및 소득, 재해실태와 건강실태, 복지 및 교육훈련 현황 등을 파악하여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 낮은 순수예술의 경우 보험료 경감의 필요성을 제시함.
- 이철수 외(2013)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에서 보론으로 문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함.
 - 현행법상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예술 각 분야의 실태조사를 수행했으며 각 분야 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용대상 및 가입 방식, 실업의 인정, 수급 요건의 충족 문제,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 피보험자의 이중취득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국악, 대중예술 분야의 실태조사를 수행함. 문화예술 각 분야 실태조사에서는 계약 관계, 제작 과정, 제작사 현황, 종사실태 등을 파악함.

- 안주엽·황준욱(2014)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자성이 강한 공연·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 한정하고, 고용보험 적용방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적용방식으로 설계하며,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설계 제안.
 - 위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공연 및 영상 관련 9개 분야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엥페르미땅’을 소개하고 이의 구조와 재정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로부터 국내 현황에 맞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예술인 실업급여계정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 1.3%(구직급여 평균 임금 50%, 구직급여 수급기간 3개월) 적용시 연평균 283억 원 적자 추정. 수지균형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은 4.0%이고,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

3. 예술인 고용실태를 파악한 주요 연구 결과

1)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실태조사 및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 이철수 외(2013)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실태조사 및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예술 각 분야의 실태조사와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심층조사를 수행
 - 문화예술분야별 실태조사는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국악, 대중예술 등 6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이를 바탕으로 적용대상 및 가입 방식, 실업의 인정, 수급 요건의 충족 문제,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 피보험자의 이중취득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별 업무 실태조사와 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인식 실태조사가 수행되었음.

- 분야별 업무 실태조사 분석은 2011-2012년까지 실시된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자료의 요약 정리로 이루어졌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인식 실태조사는 관련 분야 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심층면담으로 이루어 짐.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식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인에 대한 범주를 세분화하고 이를 유형화, 구체화하여 접근하는 방향 모색 필요
- 또한 각 분야,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직군에서 나타나는 계약형태의 다양성을 파악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문화예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인 복지제도/문화예술인 실업부조제도로 논의할 필요성도 있음.
-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인에게 “고용”(즉, 고용을 매개로 한)보험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을 넘어 예술인 복지체계 전반에서의 검토 필요

■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내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보았음

- 가능한 대안은 자영업자에 준하여 예술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으로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적용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하였음

■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거나 고용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하여 예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를 전제로 한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 안주엽·황준욱(2014)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에서 예술인 고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4년 8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년 6월)’ 의 자료를 분석하였음.
- 2014년 예술인 수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예술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의 주요 요약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계약 없이 일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으나 서면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48% 정도로 여전히 구두계약의 비중이 44%로 적지는 않은 편
 -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중은 21% 정도에 불과한데, 11%는 용역계약을, 10%는 위탁 또는 위촉계약을, 4%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42%가 계약의 유형을 잘 모르겠다고 나타나 구두계약의 상당 부분에서 계약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지난 1년 간(2013년) 예술활동을 한 기간은 평균 6.5개월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 12개월 예술활동을 한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하고 전혀 하지 않은 예술가도 3% 정도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연간 총소득은 1천만 원을 다소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며, 이 중 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은 52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업으로부터의 소득이 458만 원 정도
 - 예술활동 기간이 6.5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예술활동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은 8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실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
 - 문화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이 없는 비중은 13%에 이르고 있으며, 2천 만 원 이상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
 - 특히 문화예술인력 4명 중 1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자 중 실업급여를 수

급한 비중은 37%이고, 문화예술인력의 81%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는 ‘보험료 부담’ 과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가 각각 38%와 31%로 나타나 ‘강제가입’ 이 아닌 듯한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 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가 26%를 차지하여 현재의 미가입 사유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공연 및 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으로 한정하고, 기타 예술인에 대해서는 실업부조 방식의 예술인 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고용보험 적용방식과 유사하게 설계하도록 제안 하였으며,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방안
- 적용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으로 한정하며,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분야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
- 적용제외 대상으로는 일반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과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자

4. 시사점 및 고용보험 적용방안

1) 프랑스 엔테르미탕 제도 시사점

가.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의 활동 유형에 따른 적절한 실업지원 체계 구축

- 용역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활동에 대해서는 실업 보험을 지원
 - 용역계약의 경우는 프리랜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업보험 체계를 적용하지 않음.
 - 무한기간 계약으로 근무를 하는 인력(관리직, 비관리직, 기술직 포함)은 일반 근로자의 실업보험 체계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음.
- 기간 계약에 대해서는 실업보험관련 노사협정에 부칙을 두어 관례적 유한기간 계약직을 의미하는 엔테르미탕이라는 체계를 두어 운영
 - 엔테르미탕은 부칙 8장의 기술직과 일반 노동자, 부칙 10장의 예술가를 포함하며, 예술가가 이에 해당하는 근거는 예술활동의 노동 추정 원칙

나. 노사 협상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며 국가는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

- 보험료, 가입 조건 등 모든 사항은 노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운영에 따른 재정적 손익도 노사가 부담
- 민간 주도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는 최종 승인 단계에서 추인(agreement)하는 역할 수행
- 또한 재정적 손실에 빠진 실업보험 기금에 용자를 하거나 국가가 전문화연대 기금을 운영하여 보조적 역할을 수행

다. 실업보험 이외의 다양한 지원 혜택 추가 제공

- 한 회차의 실업보험 급여가 종료되면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수급요건이 부족하면 전문화연대 급여 가능성을 검토함.
- 이외에 교육훈련, 유급휴가, 취업지원, 재해보장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 지원이

존재

라. 프랑스 사회가 예술분야에서 꾸준히 논의한 역사적 결과물

- 실업 문제를 노사협상을 통한 민간 주도로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였으며, 갈등이 발생하면 관련 주체 간 협상을 통해 제도를 변화시키며 조정
- 공연 및 영상 분야 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협정문에 부칙을 달아 운영하며 이의 포함범위와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재정적 문제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개정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 고려사항

가. 적용대상 및 가입 방식

- 우선 예술인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 개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나. 실업의 인정

- 예술인복지재단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를 대행하면서 근로복지공단과 공조하여 가능한 다양한 예술인의 실태에 부합되도록 예술인의 취업 및 실업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을 확립

다. 수급 요건의 충족 문제

- 기존 고용보험법상의 실업의 인정, 급여 수급요건 등이 예술인의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존 고용보험법상의 실업의 요건과 급여 수급요건의 수정 내지 완화가 불가피

라.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

-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험료지원 필요성이 제기

마.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문제

- 예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여러 분야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부분실업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검토 필요

제3장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 제1절 자료
- 제2절 예술인 고용계약의 현황
- 제3절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 제4절 소결

제1절 자료

1. 조사 방법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장르별 비율을 고려하여 예술인 표본틀 구축
- 전화조사를 통해 700명의 표본 수집

2. 표본의 특성

- 성별로 남성이 62.6%, 여성이 37.4%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1.4%, 30대가 22.9%, 40대가 22%, 50대 이상이 43.5%로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음.
- 예술활동 분야는 시각예술이 24.3%, 공연예술이 21.4%, 종합예술이 54.3%로 종합예술분야의 예술인이 절반을 넘었음.
- 예술인의 일자리 형태는 ‘독자 활동’ 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 임금 근로 제공’ 이 17.8%, ‘지정 일감 보수’ 가 17.1%,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이 3.5% 임.
- 전업 예술인의 경우 58.4%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41.6%
- 예술가 활동 경력은 ‘10년 이하’ 가 35.6%, ‘11-20년 이하’ 가 28%, ‘21년 이상’ 이 36.3%로 나타남.

〈표 3-1〉 표본의 특성

		빈도	퍼센트	사례수
성별	남자	438	62.6	700
	여자	262	37.4	
연령	20대	80	11.4	699
	30대	160	22.9	
	40대	154	22	
	50대 이상	305	43.6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24.3	700
	공연예술	150	21.4	
	종합예술	380	54.3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17.8	695
	지정 일감 보수	119	17.1	
	독자 활동	428	61.6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3.5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58.4	700
	아니오	291	41.6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35.7	700
	11-20년 이하	196	28	
	21년 이상	254	36.3	

제2절 예술인 고용 계약의 현황

- 예술인의 지난 2년간 유급으로 기간은 '2년' 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이 37.9%, '1년 이상-2년 미만'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년간 예술직종에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 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 43.3%로 비슷했음. 반면 '1년 이상-2년 미만' 은 8.6이었음.
- 지난 2년간 예술직종에서 평균적으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 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 31.3%, '1년 이상-2년 미만' 이 9.0%임.

〈표 3-2〉 예술인의 일한 기간

지난 2년 동안 일한 기간		빈도	퍼센트	사례수
유급 일한 기간	1년 미만	265	37.9	700
	1년 이상 - 2년 미만	68	9.7	
	2년	367	52.4	
예술 직종 일한 기간	1년 미만	337	48.1	70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8.6	
	2년	303	43.3	
예술 직종별 평균 일한 기간	1년 미만	418	59.7	700
	1년 이상 - 2년 미만	63	9.0	
	2년	219	31.3	

- 예술인의 유급으로 일한 기간은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 없음을 보이지 않았음. 연령별로는 20대가 유급으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 28.7%, '2년'이 52.5%인 반면, 50대 이상의 유급으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이 52.8%, 2년이 '42.0%로 차이를 보임. 특히 유급으로 일한 기간은 30대와 40대가 2년이 각각 61.3%, 64.3%로 높게 나타남.

- 예술활동 분야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임. 시각예술분야는 ‘1년 미만’이 49.4%, 공연예 분야는 24.7%, 종합예술은 37.9%로 시각예술분야가 유급으로 일한 기간이 가장 짧았 음. 예술활동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도 독자활동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일한 기간 중 ‘1년 미만’이 48.8%로 다른 일자리 형태보다 높게 나타남.
- 전업예술인인과 비전업예술인에 따라서, 예술가 활동경력에 따라서도 유급으로 일한 기간의 차이가 나타남.

〈표 3-3〉 예술인 특성별 유급 일한 기간

		사례수	유급 일한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성별	남자	438	37.2%	9.1%	53.7%
	여자	262	38.9%	10.7%	50.4%
연령	20대	80	28.7%	18.8%	52.5%
	30대	160	26.3%	12.5%	61.3%
	40대	154	24.7%	11.0%	64.3%
	50대 이상	305	52.8%	5.2%	42.0%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49.4%	7.6%	42.9%
	공연예술	150	24.7%	9.3%	66.0%
	종합예술	380	37.9%	10.8%	51.3%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12.9%	8.9%	78.2%
	지정 일감 보수	119	27.7%	14.3%	58.0%
	독자 활동	428	48.8%	8.2%	43.0%
전업예술인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12.5%	16.7%	70.8%
	예	409	45.0%	10.0%	45.0%
종사 여부	아니오	291	27.8%	9.3%	62.9%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29.6%	14.0%	56.4%
	11-20년 이하	196	37.2%	10.2%	52.6%
	21년 이상	254	46.5%	5.1%	48.4%

- 예술직종의 일한 기간은 20대, 30대, 40대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50대

이상은 '1년 미만'이 63.0%, '2년'이 33.0%로 일한 기간이 짧았음.

- 예술활동분야별로는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의 예술직종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이 63.5%, 공연예술분야는 36.7%, 종합예술분야는 45.8%로 시각예술분야가 다른 두 분야에 비해 예술직종 일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의 일자리형태별로도 정기 임금 근로 제공, 지정일감보수, 특정 기업대상 노무 제공에 비해서 독자 활동을 하는 형태의 예술인의 예술직종의 일한 기간이 짧은 편임.

〈표 3-4〉 예술인 특성별 예술직종 일한 기간

		사례수	예술 직종 일한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성별	남자	438	47.7%	7.5%	44.7%
	여자	262	48.9%	10.3%	40.8%
연령	20대	80	35.0%	16.3%	48.8%
	30대	160	36.3%	11.3%	52.5%
	40대	154	37.7%	11.7%	50.6%
	50대 이상	305	63.0%	3.6%	33.4%
예술 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63.5%	4.1%	32.4%
	공연예술	150	36.7%	10.0%	53.3%
	종합예술	380	45.8%	10.0%	44.2%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20.2%	10.5%	69.4%
	지정 일감 보수	119	33.6%	12.6%	53.8%
	독자 활동	428	61.2%	6.1%	32.7%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25.0%	20.8%	54.2%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51.3%	9.0%	39.6%
	아니오	291	43.6%	7.9%	48.5%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42.0%	12.4%	45.6%
	11-20년 이하	196	46.9%	10.2%	42.9%
	21년 이상	254	55.1%	3.5%	41.3%

- 예술직종의 평균 일한 기간은 20대, 30대, 40대에 비해서 50대 이상이 짧은 기간 일

한 것으로 나타남(50세 이상의 예술직종 평균 일한 기간 중 1년 미만이 71.8%).

- 예술활동분야에 따라서는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직종 평균 일한 기간의 '1년 미만'이 73.5%로, 공연예술과 종합예술 분야보다 다소 짧은 편이었음(공연예술분야의 예술직종 평균 일한 기간 중 1년 미만은 50.7%, 종합예술분야는 57.1%).
- 예술 일자리 형태별로는 독자활동과 특정 기업 대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예술가가 정기 임금 근로제공자, 지정 일감 보수 형태 예술가보다 예술직종의 평균 일한 기간이 짧았음.

〈표 3-5〉 예술인 특성별 예술직종의 평균 일한 기간

		사례수	예술 직종 평균 일한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성별	남자	438	59.6%	8.0%	32.4%
	여자	262	59.9%	10.7%	29.4%
연령	20대	80	53.8%	13.8%	32.5%
	30대	160	45.6%	15.0%	39.4%
	40대	154	53.2%	11.0%	35.7%
	50대 이상	305	71.8%	3.6%	24.6%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73.5%	4.7%	21.8%
	공연예술	150	50.7%	9.3%	40.0%
	종합예술	380	57.1%	10.8%	32.1%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29.8%	16.1%	54.0%
	지정 일감 보수	119	47.1%	15.1%	37.8%
	독자 활동	428	71.5%	5.1%	23.4%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58.3%	12.5%	29.2%
	예	409	62.1%	9.8%	28.1%
	아니오	291	56.4%	7.9%	35.7%
예술가 경력	활동	250	56.4%	11.2%	32.4%
	10년 이하	250	56.4%	11.2%	32.4%
	11-20년 이하	196	55.1%	10.7%	34.2%
	21년 이상	254	66.5%	5.5%	28.0%

■ 예술인의 수입은 예술활동 수입과 비예술활동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예술활동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73.5%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만원’이 11.4%, ‘201-300만원’은 8.7%, ‘301만원 이상’은 6.3%로 매우 적었음.
- 예술인의 비예술활동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70.9%, ‘101-200만원’이 13.1%, ‘201-300만원’은 8.2%, ‘301만원 이상’은 7.8%로 나타남.

〈표 3-6〉 예술인의 수입

		빈도	퍼센트	사례수
예술활동 수입	100만원 이하	464	73.5	631
	101-200만원	72	11.4	
	201-300만원	55	8.7	
	301만원 이상	40	6.3	
비예술활동 수입	100만원 이하	443	70.9	625
	101-200만원	82	13.1	
	201-300만원	51	8.2	
	301만원 이상	49	7.8	

- 연령별로 예술활동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20대는 65.7%, 30대가 68.1%, 40대가 67.4%, 50대 이상이 81.3%로 50대 이상이 예술활동 수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는 독자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100만원 이하’의 수입 비율이 76.6%로 가장 높았으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73.9%로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가진 예술인보다 수입이 낮은 편임.
- 또한 전업 예술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60.3%, ‘301만원 이상’이 10.7%이었지만,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경우의 예술활동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91.4%, ‘301만원 이상’이 0.4%로 비전업 예술인 보다 전업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았음.

〈표 3-7〉 예술인 특성별 예술활동 수입

		사례수	예술활동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406	71.4%	12.3%	10.1%	6.2%
	여자	225	77.3%	9.8%	6.2%	6.7%
연령	20대	67	65.7%	19.4%	7.5%	7.5%
	30대	141	68.1%	10.6%	11.3%	9.9%
	40대	144	67.4%	13.2%	13.2%	6.3%
	50대 이상	278	81.3%	9.0%	5.4%	4.3%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60	83.1%	6.3%	7.5%	3.1%
	공연예술	136	68.4%	19.1%	6.6%	5.9%
	종합예술	335	71.0%	10.7%	10.1%	8.1%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10	66.4%	10.0%	9.1%	14.5%
	지정 일감 보수	108	70.4%	13.0%	11.1%	5.6%
	독자 활동	385	76.6%	11.4%	7.8%	4.2%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3	73.9%	13.0%	8.7%	4.3%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363	60.3%	16.5%	12.4%	10.7%
	아니오	268	91.4%	4.5%	3.7%	0.4%
예술가 경력	10년 이하	217	77.0%	12.0%	7.4%	3.7%
	11-20년 이하	183	71.0%	12.0%	10.4%	6.6%
	21년 이상	231	72.3%	10.4%	8.7%	8.7%

- 비예술활동의 수입은 남성의 경우 '100만원 이하'가 63.9%, '301만원 이상'이 10.9% 였으나, 여성의 경우 '100만원 이하'가 83.7%, '301만원 이상'이 2.3%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예술활동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연령별로도 비예술활동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0대가 84.8%, 30대가 74.8%, 40대가 70.2%, 50대 이상이 65.8%였으며, '301만원 이상' 20대가 3.0%, 30대가 4.3%, 40대가 7.8%, 50대 이상이 10.8%로 젊은 연령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비예술활동수입이 더 많았음.
- 전업예술인과 비 전업예술인의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비예술활동 수입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전업예술인이 비전업예술인에 비해 비예술활동 수입이 적은 편이었음.

〈표 3-8〉 예술인 특성별 비예술활동 수입

		사례수	비예술활동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404	63.9%	15.3%	9.9%	10.9%
	여자	221	83.7%	9.0%	5.0%	2.3%
연령	20대	66	84.8%	12.1%	0.0%	3.0%
	30대	139	74.8%	14.4%	6.5%	4.3%
	40대	141	70.2%	14.9%	7.1%	7.8%
	50대 이상	278	65.8%	11.9%	11.5%	10.8%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59	67.3%	13.2%	8.8%	10.7%
	공연예술	133	70.7%	19.5%	6.0%	3.8%
	종합예술	333	72.7%	10.5%	8.7%	8.1%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09	66.1%	13.8%	6.4%	13.8%
	지정 일감 보수	104	76.0%	16.3%	5.8%	1.9%
	독자 활동	385	70.6%	12.5%	8.8%	8.1%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2	68.2%	9.1%	18.2%	4.5%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362	90.9%	4.4%	3.3%	1.4%
	아니오	263	43.3%	25.1%	14.8%	16.7%
예술가 경력	10년 이하	214	75.7%	13.1%	6.5%	4.7%
	11-20년 이하	181	72.9%	11.0%	9.4%	6.6%
	21년 이상	230	64.8%	14.8%	8.7%	11.7%

- 예술인의 예술직종의 계약형태는 ‘별도로 정해진 계약이 없음’ 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계약 형태’ 가 38.9%, ‘구두계약 형태’ 가 9.6%
- 예술직종의 일자리 계약 기간 결정 방식으로는 ‘대표/개인 활동가’ 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기간을 연,개월 단위로 정한다’ 가 22%, ‘작품/프로젝트 단위로 정한다’ 다 21.1%였으며,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가 12.4%
- 계약기간이 종료 된 후의 계약 관계는 ‘대표/개인활동가’ 가 30.7% 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한다’ 가 16.9%, ‘보통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가 14.7%

〈표 3-9〉 예술인의 일자리 종사의 특성

		빈도	퍼센트	사례수
예술 직종 일자리 종사형태	서면계약 형태	272	38.9	700
	구두계약 형태	67	9.6	
	별도로 정해진 계약이 없음	360	51.4	
	모름/ 무응답	1	0.1	
예술 직종 일자리 계약기간 결정 방식	계약 기간을 연,개월 단위로 정한다	154	22	700
	작품/ 프로젝트 단위로 정한다	148	21.1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는다	51	7.3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87	12.4	
	계약 기간에 대해 아는바 없다	36	5.1	
	대표/ 개인 활동가	212	30.3	
	기타/ 모름/ 무응답	12	1.7	
계약기간 종료 후의 계약관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계약을 체결한다	118	16.9	700
	보통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103	14.7	
	재계약 또는 계약 해지가 일정하지 않다	203	29	
	대표/ 개인 활동가	215	30.7	
	기타/ 모름/ 무응답	61	8.7	
예술 직종 일자리 겸업 가능성	계약상 금지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59	8.4	700
	계약상 금지되어 있지만, 종종 하기도 한다	16	2.3	
	금지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102	14.6	
	금지 규정이 없고, 재량껏 다른일을 한다	212	30.3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295	42.1	
모름/ 무응답	16	2.3		

■ 예술인 직종의 겸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금지 규정이 없고, 재량껏 다른 일을 한다’가 30.3%, ‘금지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가 14.6%

○ 예술직종의 일자리 계약형태는 20대, 40대의 ‘서면계약’이 약 48%, 30대가 52.2%였지만, 50대 이상은 24.6%로 적었으며, ‘별도로 정해진 계약이 없음’이 70.8%로 비교적 높았음.

- 일자리의 형태에 따라서는 정기 임금 근로제공자와 지정 일감보수 형태의 예술인의 경우 가장 많은 계약의 형태는 ‘서면계약’으로 각각 81.5%, 52.9%인데 반해, 독자활동과 특정 기업 대상의 노무 제공을 하는 예술인은 ‘별도로 정해진 계약이 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약각 67.3%, 50.0%임.

〈표 3-10〉 예술인 특성별 예술 직종 일자리의 계약 형태

		사례수	예술 직종 일자리의 종사형태			
			서면계약 형태	구두계약 형태	별도로 정해진 계약이 없음	모름/ 무응답
성별	남자	438	36.5%	10.0%	53.2%	0.2%
	여자	262	42.7%	8.8%	48.5%	0.0%
연령	20대	80	48.8%	15.0%	36.3%	0.0%
	30대	160	52.5%	17.5%	30.0%	0.0%
	40대	154	48.1%	8.4%	42.9%	0.6%
	50대 이상	305	24.6%	4.6%	70.8%	0.0%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31.2%	4.1%	64.7%	0.0%
	공연예술	150	42.0%	8.7%	48.7%	0.7%
	종합예술	380	41.1%	12.4%	46.6%	0.0%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81.5%	7.3%	11.3%	0.0%
	지정 일감 보수	119	52.9%	10.9%	36.1%	0.0%
	독자 활동	428	23.1%	9.6%	67.3%	0.0%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33.3%	16.7%	50.0%	0.0%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37.7%	10.3%	51.8%	0.2%
	아니오	291	40.5%	8.6%	50.9%	0.0%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44.0%	13.2%	42.8%	0.0%
	11-20년 이하	196	40.8%	10.2%	49.0%	0.0%
	21년 이상	254	32.3%	5.5%	61.8%	0.4%

- 일자리 계약기간의 결정 방식은 20대와 30대는 ‘작품/프로젝트 단위’로 정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은 ‘계약기간을 연, 개월 단위’가 가장 많았음.
- 정기 임금 근로 제공을 하는 예술인의 예술직종 일자리 계약결정 방식은 ‘계약기간을

연, 개월 단위'로 정하는 비율이 58.9%

〈표 3-11〉 예술인 특성별 예술 직종 일자리의 계약기간 결정방식

		사례 수	예술 직종 일자리의 계약기간 결정 방식						
			계약 기간을 연/개월 단위로 정한다	작품/프로젝트 단위로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에 대해 아는바 없다	대표/개인 활동가	기타/모름/무응답
성별	남자	438	18.9%	20.1%	8.9%	13.0%	4.8%	32.2%	2.1%
	여자	262	27.1%	22.9%	4.6%	11.5%	5.7%	27.1%	1.1%
연령	20대	80	25.0%	31.3%	15.0%	15.0%	2.5%	11.3%	0.0%
	30대	160	30.6%	31.9%	11.9%	6.9%	1.3%	16.9%	0.6%
	40대	154	26.6%	26.0%	5.8%	8.4%	4.5%	26.0%	2.6%
	50대 이상	305	14.4%	10.5%	3.6%	16.4%	8.2%	44.6%	2.3%
예술 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18.8%	14.1%	3.5%	13.5%	8.2%	39.4%	2.4%
	공연예술	150	28.7%	18.0%	10.7%	11.3%	3.3%	27.3%	0.7%
	종합예술	380	20.8%	25.5%	7.6%	12.4%	4.5%	27.4%	1.8%
예술 일자리 형태	장기 임금 근로 제공	124	58.9%	8.1%	16.1%	9.7%	2.4%	4.8%	0.0%
	지정 일감 보수	119	29.4%	35.3%	5.0%	10.9%	3.4%	13.4%	2.5%
	독자 활동	428	9.1%	21.3%	4.9%	13.3%	6.5%	43.2%	1.6%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25.0%	12.5%	16.7%	20.8%	4.2%	16.7%	4.2%
전업 예술인 증사 여부	예	409	17.4%	22.5%	8.1%	12.2%	6.6%	31.1%	2.2%
	아니오	291	28.5%	19.2%	6.2%	12.7%	3.1%	29.2%	1.0%
예술가 경력	10년 이하	250	24.4%	27.6%	8.8%	11.2%	3.2%	24.0%	0.8%
	11-20년 이하	196	21.9%	21.4%	8.7%	11.2%	6.1%	29.1%	1.5%
	21년 이상	254	19.7%	14.6%	4.7%	14.6%	6.3%	37.4%	2.8%

- 계약 종료 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정기 임금 근로 제공형태의 예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한다'가 46.8%였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는 보통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표 3-12〉 예술인 특성별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관계

		사례수	계약기간 종료 후의 계약관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보통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재계약 또는 계약 해자가 일정하지 않다	대표/ 개인 활동가	기타/ 모름/ 무응답
성별	남자	438	16.0%	13.0%	28.8%	32.4%	9.8%
	여자	262	18.3%	17.6%	29.4%	27.9%	6.9%
연령	20대	80	26.3%	20.0%	35.0%	12.5%	6.3%
	30대	160	18.8%	25.6%	36.3%	16.9%	2.5%
	40대	154	18.2%	19.5%	29.9%	26.6%	5.8%
	50대 이상	305	12.8%	5.2%	23.3%	44.9%	13.8%
예술 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8.8%	8.8%	30.6%	40.0%	11.8%
	공연예술	150	19.3%	15.3%	31.3%	27.3%	6.7%
	종합예술	380	19.5%	17.1%	27.4%	27.9%	8.2%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46.8%	12.1%	31.5%	4.8%	4.8%
	지정 일감 보수	119	16.8%	22.7%	39.5%	13.4%	7.6%
	독자 활동	428	7.0%	14.0%	25.5%	43.9%	9.6%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33.3%	4.2%	29.2%	16.7%	16.7%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14.7%	17.6%	26.4%	31.1%	10.3%
	아니오	291	19.9%	10.7%	32.6%	30.2%	6.5%
예술가 활 동 경력	10년 이하	250	17.2%	20.4%	33.6%	24.8%	4.0%
	11-20년 이 하	196	16.3%	17.3%	28.6%	29.1%	8.7%
	21년 이상	254	16.9%	7.1%	24.8%	37.8%	13.4%

- 일자리의 겸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응답한 예술인이 많았음.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분야별로는 시각예술이 54.7%로 가장 많았음.
- 예술 일자리 형태로는 정기임금 근로 제공 형태의 예술인의 경우에는 ‘금지 규정이 없

고 재량껏 다른일을 한다'라고 39.5%가 응답해 가장 높았으며, '계약상 금지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4%. 반면 독자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많았음.

〈표 3-13〉 예술인 특성별 예술직종 일자리의 취업 가능성

		예술 직종 일자리의 취업 가능성						
		사례수	계약상 금지되어 있고 현실적 으로도 어렵다	계약상 금지되어 있지만 중중 하기도 한다	금지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 으로 어렵다	금지 규정이 없고, 재량껏 다른일을 한다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모름/ 무응답
성별	남자	438	8.4%	2.3%	14.4%	28.5%	44.3%	2.1%
	여자	262	8.4%	2.3%	14.9%	33.2%	38.5%	2.7%
연령	20대	80	13.8%	1.3%	13.8%	40.0%	31.3%	0.0%
	30대	160	9.4%	2.5%	19.4%	41.3%	21.3%	6.3%
	40대	154	7.1%	4.5%	19.5%	37.0%	31.2%	0.6%
	50대 이상	305	7.2%	1.3%	9.8%	18.7%	61.3%	1.6%
예술 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7.1%	2.9%	11.8%	22.9%	54.7%	0.6%
	공연예술	150	6.7%	4.0%	12.7%	38.7%	34.7%	3.3%
	종합예술	380	9.7%	1.3%	16.6%	30.3%	39.5%	2.6%
예술 일자리 형태	장기 임금 근로 제공	124	23.4%	4.0%	18.5%	39.5%	8.1%	6.5%
	지정 일감 보수	119	11.8%	4.2%	13.4%	42.9%	26.9%	0.8%
	독자 활동	428	3.7%	1.2%	13.1%	23.8%	57.0%	1.2%
	특정 기업 대 상 노무 제공	24	0.0%	4.2%	20.8%	37.5%	33.3%	4.2%
전업 예술인 중사 여부	예	409	8.1%	1.7%	14.2%	26.2%	46.5%	3.4%
	아니오	291	8.9%	3.1%	15.1%	36.1%	36.1%	0.7%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7.6%	2.4%	13.2%	38.8%	34.8%	3.2%
	11-20년 이하	196	8.7%	3.1%	19.4%	30.1%	37.8%	1.0%
	21년 이상	254	9.1%	1.6%	12.2%	22.0%	52.8%	2.4%

■ 예술인이 계약기간 내 해고, 중도 해지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1%로 적었으며, 없는 경우가 87.8% 였음.

- 계약기간 내 해고,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로는 ‘회사의 일방적 해지’가 56.5%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업무여건 불만족으로 본인이 해지’가 36.5%였음.

〈표 3-14〉 예술인의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중도해지 경험과 사유

		빈도	퍼센트	사례수
계약기간 내 해고, 중도해지 경험	있다	85	12.1	700
	없다	615	87.9	
계약기간 내 해고, 중도해지 사유	회사의 일방적 해지	48	56.5	615
	보수/ 업무여건 불만족 으로 본인이 해지	31	36.5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해지	2	2.4	
	모름/ 무응답	4	4.7	

○ 계약기간 내에 해고 경험은 특성별로 큰 차이 없이 대부분 ‘없다’라고 응답했음.

〈표 3-15〉 예술인 특성별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해지 경험

		사례수	계약기간 내 해고, 중도해지 경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438	10.7%	89.3%
	여자	262	14.5%	85.5%
연령	20대	80	18.8%	81.3%
	30대	160	20.6%	79.4%
	40대	154	14.3%	85.7%
	50대 이상	305	4.6%	95.4%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7.1%	92.9%
	공연예술	150	16.7%	83.3%
	종합예술	380	12.6%	87.4%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12.1%	87.9%
	지정 일감 보수	119	15.1%	84.9%
	독자 활동	428	10.7%	89.3%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20.8%	79.2%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12.5%	87.5%
	아니오	291	11.7%	88.3%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14.0%	86.0%
	11-20년 이하	196	14.8%	85.2%
	21년 이상	254	8.3%	91.7%

- 예술인의 해고 및 계약해지의 사유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회사의 일방적 해지’가 가장 높았으며, ‘보수/업무여건 불만족으로 본인이 해지’가 두 번째로 높았음.
- 대부분의 특성별로 큰 차이 없이 ‘회사의 일방적 해지’가 대체로 50%이상으로 가장 많은 사유였으며, ‘보수/업무여건 불만족으로 본인이 해지’가 약 30%로 두 번째로 많은 이유였음. 그러나, 독자활동의 형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형태보다는 ‘보수/업무여건 불만족으로 본인이 해지’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임.

〈표 3-16〉 예술인 특성별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해지 사유

		계약기간 내 해고, 중도해지 사유				
		사례수	회사의 일방적 해지	보수/ 업무여건 불만족 으로 본인이 해지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해지	모름/ 무응답
성별	남자					
	여자	38	50.0%	39.5%	5.3%	5.3%
연령	20대	15	53.3%	33.3%	0.0%	13.3%
	30대	33	57.6%	36.4%	0.0%	6.1%
	40대	22	59.1%	36.4%	4.5%	0.0%
	50대 이상	14	57.1%	35.7%	7.1%	0.0%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2	58.3%	33.3%	8.3%	0.0%
	공연예술	25	68.0%	32.0%	0.0%	0.0%
	종합예술	48	50.0%	39.6%	2.1%	8.3%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5	60.0%	33.3%	0.0%	6.7%
	지정 일감 보수	18	72.2%	27.8%	0.0%	0.0%
	독자 활동	46	47.8%	45.7%	2.2%	4.3%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5	60.0%	0.0%	20.0%	20.0%

전업 예술인	예	51	51.0%	39.2%	3.9%	5.9%
종사 여부	아니오	34	64.7%	32.4%	0.0%	2.9%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35	65.7%	25.7%	0.0%	8.6%
	11-20년 이하	29	41.4%	51.7%	6.9%	0.0%
	21년 이상	21	61.9%	33.3%	0.0%	4.8%

제3절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은 ‘이름만 들어봤고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처음 들어본다’가 18.9%로 대다수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실업 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경우는 12.4%, 고용 보험료를 내고 실업 시 수당을 준다고 알고 있음은 18%로 알고 있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예술인은 드물었음.
-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을 찬성하는 예술인은 72%, 반대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28%였음.
- 예술인 고용보험의 반대 이유로는 50.4%가 ‘예술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였으며, ‘보험료 부담 때문에’의 응답도 26.3%로 나타남.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을 찬성하는 예술인이 71.4%, ‘당연가입’을 찬성하는 예술인이 24.3%로 임의가입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았음.
- 고용보험료 부담의사는 월 3만원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월 1만원 미만’은 18.4%, ‘월1-2만원 미만’이 21.3%, ‘월2-3만원 미만’이 22.7%였음.

〈표 3-17〉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

		빈도	퍼센트	사례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인지 여부	처음 들어봄	132	18.9	700
	이름만 들어봤고 구체적 내용은 모름	272	38.9	
	실업 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있음	87	12.4	
	고용 보험료를 내고 실업시 수당을 준다고 알고있음	126	18	
	보험료 납부액 및 실업수당 수급 조건을 알고있음	81	11.6	
	모름/ 무응답	2	0.3	

예술인 고용보험도입 동의 여부	반대 혹은 모름	196	28	700
	찬성한다	504	72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반대 이유	보험료 부담 때문에	35	26.3	133
	예술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 려울것 같아서	67	50.4	
	산재보험, 건강 보험등 다른 사회 보험이 먼저 해결 되어야 해서	6	4.5	
	가입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번거로 워서	1	0.8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13	9.8	
	고용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2	1.5	
	기타	7	5.3	
	모름/ 무응답	2	1.5	
선호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식	임의가입	500	71.4	700
	당연가입	170	24.3	
	모름/ 무응답	30	4.3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	월1만원 미만	129	18.4	700
	월1-2 만원미만	149	21.3	
	월2-3 만원미만	159	22.7	
	월3-4 만원미만	31	4.4	
	월4-5 만원미만	75	10.7	
	월5만원 이상	77	11	
	모름/ 무응답	80	11.4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20대, 50대 이상에 비해서 30대, 40대의 비율이 처음 들어보는 비율이 많았으나, 대체적으로 ‘이름만 들어봤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름’이라고 응답함.
- 시각예술분야의 예술인이가 공연예술, 종합예술분야의 예술인보다는 고용보험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처음 들어봤거나, 실업급여 수급, 수급조건 등을 아는 비율이 높았으나, 대체적으로 예술활동분야의 특성과 관계없이 이름만 들어봤고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3-18〉 예술인 특성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인지 여부

		시례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인지 여부					
			처음 들어봄	이름만 들어봤고 구체적 내용은 모름	실업 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있음	고용 보험료를 내고 실업시 수당을 준다고 알고있음	보험료 납부액및 실업수당 수급 조건을 알고있음	모름/ 무응답
성별	남자	438	19.2%	37.9%	12.8%	16.9%	13.2%	0.0%
	여자	262	18.3%	40.5%	11.8%	19.8%	8.8%	0.8%
연령	20대	80	17.5%	36.3%	18.8%	17.5%	10.0%	0.0%
	30대	160	13.1%	42.5%	10.6%	21.3%	12.5%	0.0%
	40대	154	10.4%	35.7%	16.2%	20.8%	16.9%	0.0%
	50대 이상	305	26.6%	39.0%	9.8%	15.1%	8.9%	0.7%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26.5%	34.1%	13.5%	16.5%	8.2%	1.2%
	공연예술	150	17.3%	39.3%	10.0%	18.0%	15.3%	0.0%
	종합예술	380	16.1%	40.8%	12.9%	18.7%	11.6%	0.0%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8.1%	36.3%	13.7%	22.6%	19.4%	0.0%
	지정 일감 보수	119	18.5%	37.0%	11.8%	22.7%	10.1%	0.0%
	독자 활동	428	21.7%	40.4%	12.4%	15.0%	10.0%	0.5%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25.0%	29.2%	8.3%	29.2%	8.3%	0.0%
전업 예술인 증사 여부	예	409	19.6%	40.6%	12.5%	16.9%	10.0%	0.5%
	아니오	291	17.9%	36.4%	12.4%	19.6%	13.7%	0.0%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16.8%	38.4%	12.8%	17.6%	14.4%	0.0%
	11-20년 이하	196	13.8%	41.8%	12.8%	21.9%	8.7%	1.0%
	21년 이상	254	24.8%	37.0%	11.8%	15.4%	11.0%	0.0%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찬성비율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예술활동 분야에 따라서는 시각예술의 찬성 비율이 67.1%, 공연예술 분야는 70.0%, 종합예술 분야는 75.0%임.

- 예술인 일자리 형태에서는 지정 일감보수, 독자 활동,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형태의 예술인 보다는 정기 임금 근로 제공 형태의 예술인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이 83.1%로 높았음.

〈표 3-19〉 예술인 특성별 고용보험 도입 동의 여부

		사례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동의 여부	
			반대 혹은 모름	찬성한다
성별	남자	438	26.7%	73.3%
	여자	262	30.2%	69.8%
연령	20대	80	25.0%	75.0%
	30대	160	31.9%	68.1%
	40대	154	28.6%	71.4%
	50대 이상	305	26.6%	73.4%
예술활동 분야	시간예술	170	32.9%	67.1%
	공연예술	150	30.0%	70.0%
	종합예술	380	25.0%	75.0%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16.9%	83.1%
	지정 일감 보수	119	30.3%	69.7%
	독자 활동	428	30.6%	69.4%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33.3%	66.7%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29.3%	70.7%
	아니오	291	26.1%	73.9%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31.2%	68.8%
	11-20년 이하	196	29.1%	70.9%
	21년 이상	254	24.0%	76.0%

- 고용보험제도 도입 반대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예술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은 이유였으며, ‘보험료 부담 때문에’가 두 번째로 많은 이유였음.
- 성별로는 20대가 ‘예술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의 비율이 68.8%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이상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예술활동 특

성상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14.9%로 다른 연령대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표 3-20〉 예술인 특성별 고용보험 반대 이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반대 이유								
		사례 수	보험료 부담 때문에	예술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신재보험 건강보험등 다른 사회보장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가입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번거로워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용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모름/무응답
성별	남자	79	26.6%	43.0%	5.1%	1.3%	10.1%	2.5%	8.9%	2.5%
	여자	54	25.9%	61.1%	3.7%	0.0%	9.3%	0.0%	0.0%	0.0%
연령	20대	16	18.8%	68.8%	0.0%	0.0%	6.3%	6.3%	0.0%	0.0%
	30대	38	21.1%	57.9%	7.9%	0.0%	5.3%	2.6%	5.3%	0.0%
	40대	32	21.9%	50.0%	6.3%	3.1%	9.4%	0.0%	9.4%	0.0%
	50대 이상	47	36.2%	38.3%	2.1%	0.0%	14.9%	0.0%	4.3%	4.3%
예술 활동 분야	시각예술	33	27.3%	48.5%	3.0%	0.0%	12.1%	0.0%	6.1%	3.0%
	공연예술	30	30.0%	53.3%	3.3%	0.0%	6.7%	3.3%	3.3%	0.0%
	종합예술	70	24.3%	50.0%	5.7%	1.4%	10.0%	1.4%	5.7%	1.4%
예술 일자리 형태	장기임금 근로 제공	13	15.4%	61.5%	15.4%	0.0%	0.0%	0.0%	7.7%	0.0%
	지정 일감 보수	27	11.1%	66.7%	3.7%	0.0%	11.1%	0.0%	7.4%	0.0%
	독자 활동	88	34.1%	44.3%	2.3%	1.1%	10.2%	1.1%	4.5%	2.3%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5	0.0%	40.0%	20.0%	0.0%	20.0%	20.0%	0.0%	0.0%
전 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80	26.3%	48.8%	5.0%	0.0%	12.5%	1.3%	5.0%	1.3%
	아니오	53	26.4%	52.8%	3.8%	1.9%	5.7%	1.9%	5.7%	1.9%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57	28.1%	54.4%	3.5%	0.0%	5.3%	1.8%	5.3%	1.8%
	11-20년 이하	40	25.0%	57.5%	10.0%	0.0%	5.0%	2.5%	0.0%	0.0%
	21년 이상	36	25.0%	36.1%	0.0%	2.8%	22.2%	0.0%	11.1%	2.8%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젊을수록 ‘임의가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음.
- 예술 일자리 형태의 특성별로는 특정 기업 대상의 노무제공을 하는 예술인의 ‘임의가입’ 선호 비율이 높았으며, 독자활동, 정기 임금 근로제공, 지정 일감 보수의 예술인 순으로 ‘임의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 경력과 관계없이 ‘임의가입’의 비율이 높았으나 경력이 많을수록 ‘당연가입’ 선호 비율은 높았음.

〈표 3-21〉 예술인 특성별 선호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방식

		사례수	선호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식		
			임의가입	당연가입	모름/ 무응답
성별	남자	438	71.0%	24.4%	4.6%
	여자	262	72.1%	24.0%	3.8%
연령	20대	80	76.3%	23.8%	0.0%
	30대	160	76.9%	19.4%	3.8%
	40대	154	72.1%	22.7%	5.2%
	50대 이상	305	66.9%	27.9%	5.2%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72.4%	21.2%	6.5%
	공연예술	150	73.3%	23.3%	3.3%
	종합예술	380	70.3%	26.1%	3.7%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68.5%	27.4%	4.0%
	지정 일감 보수	119	65.5%	31.1%	3.4%
	독자 활동	428	73.4%	22.0%	4.7%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79.2%	16.7%	4.2%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72.9%	22.7%	4.4%
	아니오	291	69.4%	26.5%	4.1%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74.4%	22.8%	2.8%
	11-20년 이하	196	74.5%	21.4%	4.1%
	21년 이상	254	66.1%	28.0%	5.9%

- 고용보험료 부담의사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월 1만원 미만’, ‘월 1-2만원 미만’의 비율의 젊을수록 높았음.

〈표 3-22〉 예술인 특성별 고용보험료 부담의사

		사례수	고용보험료 부담의사						
			월1만원 미만	월1-2만원미만	월2-3만원미만	월3-4만원미만	월4-5만원미만	월5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성별	남자	438	17.1%	20.1%	20.3%	3.9%	12.3%	13.7%	12.6%
	여자	262	20.6%	23.3%	26.7%	5.3%	8.0%	6.5%	9.5%
연령	20대	80	26.3%	25.0%	23.8%	3.8%	6.3%	13.8%	1.3%
	30대	160	16.9%	24.4%	25.0%	4.4%	9.4%	8.8%	11.3%
	40대	154	22.1%	18.8%	19.5%	3.2%	14.9%	11.0%	10.4%
	50대 이상	305	15.4%	19.7%	23.0%	5.2%	10.5%	11.5%	14.8%
예술 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16.5%	18.8%	21.8%	2.9%	12.4%	12.9%	14.7%
	공연예술	150	21.3%	22.0%	23.3%	5.3%	8.7%	9.3%	10.0%
	종합예술	380	18.2%	22.1%	22.9%	4.7%	10.8%	10.8%	10.5%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13.7%	19.4%	29.8%	8.1%	6.5%	12.9%	9.7%
	자정 일감 보수	119	20.2%	25.2%	26.9%	3.4%	13.4%	5.9%	5.0%
	독자 활동	428	19.4%	20.3%	19.6%	3.5%	11.2%	11.9%	14.0%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16.7%	33.3%	16.7%	8.3%	8.3%	8.3%	8.3%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17.4%	20.0%	24.4%	5.6%	10.0%	10.3%	12.2%
	아니오	291	19.9%	23.0%	20.3%	2.7%	11.7%	12.0%	10.3%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21.6%	25.6%	22.8%	3.6%	9.2%	11.2%	6.0%
	11-20년 이하	196	18.9%	19.4%	22.4%	4.1%	12.2%	10.7%	12.2%
	21년 이상	254	15.0%	18.5%	22.8%	5.5%	11.0%	11.0%	16.1%

- 예술인은 향후 2년간 일자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 예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나타남.
- 향후 2년간의 일자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예술인이 예술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54.4%, ‘아니다’가 45.6%로 나타남.

〈표 3-23〉 예술인 향후 2년간 일자리 예측

		빈도	퍼센트	사례수
향후 2년간 예술직종 종사 예측 가능	예측 어려움	294	42	700
	예측 가능	406	58	
향후 2년간 예술직종 1년 이상 종사 예측	아니다	319	45.6	700
	그렇다	381	54.4	

- 향후 2년간 예술직종에 종사할 지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50%이상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음.
- 성별로는 20대, 30대, 40대는 ‘예측이 어려운 편이다’와 ‘예측이 가능한 편이다’ 비율이 비슷했으나, 50대 이상은 ‘예측이 가능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7.2%로 높았음.

〈표 3-24〉 예술인 특성별 향후 2년간 예술직종 종사 예측 가능성

		사례수	향후 2년간 예술직종 종사 예측 가능	
			예측 어려움	예측 가능
성별	남자	438	39.3%	60.7%
	여자	262	46.6%	53.4%
연령	20대	80	51.2%	48.8%
	30대	160	45.6%	54.4%
	40대	154	51.9%	48.1%
	50대 이상	305	32.8%	67.2%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41.2%	58.8%
	공연예술	150	38.0%	62.0%
	종합예술	380	43.9%	56.1%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32.3%	67.7%
	지정 일감 보수	119	42.9%	57.1%
	독자 활동	428	43.5%	56.5%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54.2%	45.8%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40.8%	59.2%
	아니오	291	43.6%	56.4%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47.2%	52.8%
	11~20년 이하	196	40.3%	59.7%
	21년 이상	254	38.2%	61.8%

- 예술 일자리 형태별로는 정기 임금 근로 제공 형태의 예술인이 다른 일자리 형태의 예술인에 비해서 향후 2년간의 예술직종 종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편이라고 응답함.
- 향후 2년 간 예측이 가능한 응답자 중 1년 이상 예술직종에 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형태의 예술인이 지정일감 보수, 독자 활동,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형태의 예술인 보다 1년 이상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3-25〉 예술인 특성별 향후 2년간 예술직종 기간 예상

		사례수	향후 2년간 예술직종 1년 이상 종사 예측	
			아니다	그렇다
성별	남자	438	43.4%	56.6%
	여자	262	49.2%	50.8%
연령	20대	80	53.8%	46.3%
	30대	160	50.0%	50.0%
	40대	154	54.5%	45.5%
	50대 이상	305	36.4%	63.6%

예술활동 분야	시각예술	170	44.7%	55.3%
	공연예술	150	42.7%	57.3%
	종합예술	380	47.1%	52.9%
예술 일자리 형태	정기 임금 근로 제공	124	37.1%	62.9%
	지정 일감 보수	119	45.4%	54.6%
	독자 활동	428	47.2%	52.8%
	특정 기업 대상 노무 제공	24	54.2%	45.8%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예	409	44.3%	55.7%
	아니오	291	47.4%	52.6%
예술가 활동 경력	10년 이하	250	52.0%	48.0%
	11-20년 이하	196	42.3%	57.7%
	21년 이상	254	41.7%	58.3%

제4절 소결

- 예술인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들을 구축함. 특히 인구학적 특성과 장르별 비율을 고려하여 예술인 표본들 구축했으며,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700명의 표본을 수집함.
- 표본의 특성은 성별로 남성 62.6%, 여성 37.4% 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1.4%, 30대가 22.9%, 40대가 22%, 50대 이상이 43.5%였음. 예술활동 분야별로는 시각예술이 24.3%, 공연예술이 21.4%, 종합예술이 54.3% 였으며, 전업예술인의 경우 58.4%, 비전업예술인은 41.6%임.
- 예술인의 고용계약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예술인의 일한기간, 수입, 일자리의 종사적 특성, 일자리의 계약형태,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중도해지 경험에 관한 조사를 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예술인의 고용계약의 현황은 유급으로 일한 기간은 2년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직종에서 일한기간은 1년 미만이 48.1%로 가장 많았음.
 - 예술활동 수입은 월 100만원 이하가 73.5%로 나타남.
 - 종사형태는 별도로 정해진 계약이 없다(51.4%)가 가장 많고, 계약기간 결정 방식은 작품/프로젝트 단위(21.1%)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12.4%)가 비교적 많았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의 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16.9%)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14.7%)가 비슷한 수준이었음.
 - 겸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42.1%)와 금지규정 없이 재량껏 다른 일을 하는 경우(30.3%)가 가장 많았음.
 - 향후 2년간 예술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에 대하여 예측 가능하고 응답한 경우가 58.0% 였으며, 1년 이상 종사를 예측한 경우가 54.4%였음.

■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인지여부, 예술인 고용보험의 동의 여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반대와 찬성의 이유, 선호하는 고용보험 도입 방식, 고용보험료 부담의사를 조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는 이름만 들어봤다(38.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2.0%였음.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 예술활동 분야에 따라서는 시각예술의 찬성 비율(67.1%)이 공연예술(70.0%)과 종합예술(75.0%)에 비해서 낮았으며, 정규직 형태 종사자의 찬성 비율이 83.1%로 높았음.

- 도입을 반대하는 예술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수급 조건 충족의 어려움(50.4%)이었음.

- 고용보험제도 도입 반대 이유가 수급조건 충족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은 남자보다는 여자, 젊은 층일수록, 정규직 형태와 지정 일감 보수형태에서, 전업예술인이 아니고, 예술인 경력 20년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선호하는 방식은 임의가입(71.4%)이 많았고, 고용료 부담의사는 월 2-3만원(22.7%)과 월 1-2만원(21.3%)이 가장 많았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임의가입 방식에 대한 선호는 젊을수록, 특정 기업 대상의 노무제공이나 독자 활동을 하는 예술에서 높았으며, 경력 20년 미만의 경우에서 높았음

- 고용보험료 부담의사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고, 20대에서 부담의사 액수가 낮았음.



제4장

예술인 직군별 조사결과

제1절 공연예술분야 조사 결과

제2절 방송산업분야 조사 결과

제3절 웹툰분야 조사 결과

제1절 공연예술분야 조사 결과

1.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예비조사

(1) 개요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직군은 크게 공연기획 및 제작, 창작, 실연¹⁶⁾, 기술, 행정운영, 교육 및 비평 등으로 구분 되어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행정 및 교육 인력을 제외한, 실연 및 기술 분야 종사자들을 고용보험 가입가능 집단으로 간주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 공연예술은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예술 활동을 제공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종합예술
- 공연예술계는 뮤지컬 및 콘서트 시장 성장으로 최근 산업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며, 2014년 기준 공연시설 수는 총 1,034개, 종사자 수는 12,669명, 매출액 규모는 3,689억 원으로 파악되었음.¹⁷⁾
 - 공연시설은 공공이 46.6%, 민간이 53.4%로 민간이 공공보다 다소 높았음.
- 또한 실연을 하는 공연단체¹⁸⁾의 수는 총 2,284개, 종사자 수는 55,858명, 매출액은 3,904억 원의 규모로 파악되었음.

〈표 4-1〉 2014년 기준 주요 공연단체 특성별 현황(총 2,284단체)

구분		단체 수(개)	비율(%)
설립주체	공공	311	13.6
	민간	1,973	86.4

16) 「저작권법」(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창작과 실연 인력 두 그룹이 모두 실연 예술가로 분류 될 수 있음

17)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18) 공연단체 조사모집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단체(2010~2014년)와 한국뮤지컬협회 소속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단체특성	국립	14	0.6
	공립(광역)	67	2.9
	공립(기초)	230	10.1
	민간공연단체	1,813	79.4
	민간기획사	160	7.0
주요활동장르	연극	610	26.7
	무용	353	15.5
	양악	735	32.2
	국악	438	19.2
	복합	148	6.5

* 자료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실태조사(2015) 재구성

- 공연 프로그램은 공연장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외주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외주의 경우 사용자 특성의 문제가 발생
 -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산 전액을 기관으로부터 받아 제작하므로, 최종사용자는 기관이라 볼 수 있음.
- 2014년 주요활동장르별 공연단체의 공연 실적을 살펴보면, 국악 단체는 연간 21,272회, 양악 단체는 19,065회, 연극 단체는 연간 61,064회 공연하였음.

〈표 4-2〉 2014년 기준 전국 공연단체 특성별 공연 실적

구분	단체 수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2,284	45,308	19.8	96,403	42.2	119,968	52.5	
단체특성	국립	14	625	44.6	1,498	106.4	1,627	116.2
	공립(광역)	67	1,944	29.0	2,223	33.2	2,393	35.7
	공립(기초)	230	4,201	18.3	4,514	19.6	4,596	20.0
	민간공연단체	1,813	33,277	18.4	71,967	39.7	89,468	49.3
	민간기획사	160	5,262	32.9	16,210	101.3	21,884	136.8
주요활동장르	연극	610	8,416	13.8	49,662	81.4	61,064	100.1
	무용	353	4,718	13.4	7,098	20.1	8,522	24.1
	양악	735	15,645	21.3	16,737	22.8	19,065	25.9
	국악	438	13,521	30.9	17,866	40.8	21,272	48.6
	복합	148	3,008	20.3	5,040	34.1	10,046	67.9

* 자료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실태조사(2015) 재구성

- 공연예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 국공립 공연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확대 가능성 큰 분야임.
- 공연예술 실연자는 연극 및 뮤지컬 분야에서 활동하는 배우, 국악가 및 성악가 등의 가수, 연주자, 무용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달 5천 명 정도가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
 - 서울 소재 대극장에서 매월 평균 10개의 뮤지컬 등 대형 작품이 공연되며 공연당 평균 100명 수준이 고용되어 총 1,000명 정도 고용
 - 대학로 150개 극장에서 평균 20~30명이 고용되어 총 2,000~3,000명 정로 예상되며, 서울의 시장 규모는 전국의 70~80% 수준으로 추정
- 민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가가 상당 수 존재하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직접 공연 뿐 아니라 반주와 행사 지원의 수요가 상당히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에 등록 된 사단법인 137개 중 절반 이상이 공연활동 수행
- 실연자가 속해있는 전국 공연예술단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장르별 공연단체 데이터베이스 목록 중, 본 연구 포함 가능성 높은 장르를 선별한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4-3〉 예술경영지원센터 등록 장르별 공연단체 현황

구분	무용	양악					국악	연극	
		오케스트라	합창단	뮤지컬	교향악단	앙상블			
전체	628	285	317	46	63	235	706	934	
시설 특성	중앙정부	4	0	1	0	0	6	5	
	광역자치단체	19	4	17	3	9	24	18	
	기초자치단체	8	6	81	0	22	20	15	
	민간단체	330	142	59	22	12	107	372	609
	해당사항없음	267	133	159	21	20	127	284	287

* 자료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DB 재구성

- 전국의 984개 공연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자 수는 총 11,738명, 평균 11.9명으

로 조사되었음.¹⁹⁾

- 고용형태는 정규직 73.9%, 비정규직 26.1%인데, 이들 중 제작관련 스태프는 공연장 운영 및 진행 1,476명(12.6%), 무대기술 2,487명(21.2%)이었음.
- 이들 공연시설의 4대 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9개 중앙정부 시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기타(공공) 시설과 문예회관의 가입률은 각각 91.8%, 88.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립/운영주체별로 비교해 보아도 공공시설의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민간시설은 약 70% 수준이었음.

<표 4-4> 2013년 기준 전국 공연시설 4대보험 가입현황

구분	시설 수 (개)	4대보험 가입시설(개)				미가입 시설(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체	984	749	760	741	737	212	
시설 특성	중앙정부	9	9	9	9	9	0
	문예회관	207	182	174	178	174	25
	기타(공공)	239	219	211	219	213	20
	대학로	139	74	75	72	72	65
	민간 (대학로 외)	390	287	280	282	273	103

* 자료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실태조사(2015) 재구성

- 계약 관계는 과거 동인제 극단의 관행과 달리 성문화된 계약이 빠르게 확산되어 뮤지컬 분야의 경우 종사자 전원 문서계약을 체결하지만, 회차 당 계약이나 납품 기준의 계약이어서 활동 기간 산정의 어려움 존재
- 뮤지컬의 경우 준비기간이 통상 6주~8주 존재하며, 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 방법으로 보완 가능
- 공연예술계는 예술기관, 예술단체, 제작사, 기획사, 프리랜서 등 여러 주체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기관의 역할이 핵심

1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

- 동종 분야 다수의 협회 존재로 협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 어려울 가능성

(2) 기본특성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는 음악(20.6%), 대중음악(17.3%), 국악(19.8%), 무용(16.0%), 연극(26.4%)으로 구성
- 공연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한 주 수입원은 출연료가 49.7%로 가장 많았고, 없음이 24.7%였으며, 다음으로 급여 13.1%, 기타 4.1%, 저작권 수입이 3.2%였음.
 - 대중음악은 출연료(52.8%) 외 저작권 수입(12.7%), 작품판매료(10.2%)도 주 수입원이었음.
- 공연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은 연 평균 1,153만원이고 부업을 통한 수입은 연 평균 1,352만원으로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을 상회
- 공연예술인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7.6%로 가장 높았고, 기간제/계약직(9.6%)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이외 정규직(4.4%)과 고용주(3.7%)로 나타남.
- 공연예술인의 계약형태는 계약없음이 59.3%로 가장 높았고, 서면계약은 32.8%였으며, 구두계약은 7.9%로 나타남.
- 공연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24.2%였으며, 연극(28.5%)과 음악(27.7%), 국악(25.0%)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무용(18.9%)과 대중음악(17.7%)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음.

(3) 예비조사 결과

1) 창작/실연자

가. 배우

■ 일반사항

- 연극배우와 뮤지컬배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극영화학과 및 관련학과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무관한 전공 출신자들도 많음
- 일반적으로 극단에 소속되어 배우로서의 경험을 쌓으며, 배우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후에는 교육분야에 종사할 기회도 있음.
- 뮤지컬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용전공자, 성악 및 실용음악 전공자가 유리하지만, 역할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기능력이 가장 중요함.
- 에이전시 소속의 실연자가 일부 존재하며, 계약을 위해 에이전시가 역할을 할 경우 수익 배분은 합의에 따라 결정

■ 업무종사실태

- 배우들의 직무의 내용이나 기간은 장르, 규모,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연극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연개시 이전에 2-3개월의 연습 기간을 가짐.
 - 소규모 극단들은 보통 다양한 창작지원금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기획을 이어나가며, 평균 3개월의 연습기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공연은 1일에서 3일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기간산정의 어려움이 매우 큼.
- 뮤지컬의 경우에는 라이선스의 경우 연습 기간이 짧고, 창작 뮤지컬의 경우 준비기간이 긴 편, 대형 뮤지컬의 경우 5-6개월 전에 오디션이 진행되긴 하지만, 연습기간은 연극배우와 비슷한 수준
- 남자배우의 경우 조명이나 무대 설치, 철거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경험 축적 이후에는 그 분야로 직무를 전환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
 - 여자 배우들의 경우 의상이나 분장 분야로의 직무 전환 가능

■ 계약실태

- 소규모 극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극단 전속으로 활동하며, 작품별로 계약하는 배우는 거의 없으나, 연극 이외의 장르에서 배우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작품별 계약하는 경우

도 존재

- 극단주 입장에서는 공연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극단이 쉬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으로 간주할 수 없음.
- 따라서 극단에게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를 둔다면 대부분의 극단주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서 및 계약기간 조작 등의 남용사례도 예상
- 또한 작품별 계약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산정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배우가 극단 소속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극단위주로 운영되는 연극계의 실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 주연급 배우의 경우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가 많으며, 출연 결정이나 공연 진행 스케줄 등을 기획사가 관리하므로 기획사는 공연 과정에의 간접적인 참여자로 볼 수 있음.
- 소극장의 경우 연출가의 인택에 의해 배역이 결정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며, 배역 설정 과정에서 뮤지컬 배우는 능력 고려 정도, 연극의 경우 경력 대비 출연료가 영향을 미침.
- 황준욱(2014)의 <공연분야 예술직업군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 출연료는 2000년대 초반 보수 수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많았음.
- 예술기관 및 단체들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하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조항들은 변경하여 사용 함.
- 실연자가 문화예술기관 또는 단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할 시 스타급 실연자는 별도의 계약으로 고액의 출연료를 받기도 하고, 이외 실연자는 합의 사항에 따라 출연료를 받으며 그 기준은 없음.

나. 성악가

■ 일반사항

- 합창단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많은 편으로, 활발한 민간 합창단일 경우 오페라, 행사 등의 일거리가 빈번하게 존재함.
- 오페라에서는 주로 합창단에 요청하여 성악가를 모집하는 형태로 합창단이 기획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오페라와 합창단 사이의 사용자 특정화 문제가 있음.

- 관련 직능단체로는 성악가협회가 있으나 교수성악가 위주로 구성된 조직임.

■ 업무중사실태

-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은 세금을 원청 징수하여 오페라 제작사가 합창단에게 지급하고 이를 합창단에서 단원에게 지급하는 방식
 - 활동이 활발한 합창단의 경우 기본급과 함께 활동수당이 있음.

■ 계약실태

-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며, 리허설, 공연의 횟수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움.
- 합창단원들은 한 단체에만 소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젝트에 따라서 여러 단체에 속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영세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강의와 같은 부업이 존재할 가능성도 높음.
- 성악가들 중 일부는 소속사가 있으며 뮤지컬의 영향으로 전속금을 받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소속사와 소속 성악가는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는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다. 연주자

■ 일반사항

- 2000년대 이후 클래식 연주 지망생은 감소 추세이며 대중음악 연주 지망생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실용음악과가 급증하였음.
 - 장르에 따라 발전 경로는 매우 상이한데, 클래식 연주자의 경우 대학 졸업, 유학 등을 통해 장기간의 연주활동을 보유하고 있음.

- 국공립 오케스트라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면서, 클래식 연주자의 경우 국공립 소속²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 반면 민간오케스트라는 처우가 미흡하여 연주자들은 보통 객원연주자 대우를 받으며, 처우와 조건에 따라 연습의 횟수와 강도는 상이함.
 - 상설 단원이 없기 때문에, 보통 연주회가 기획되면 음악 감독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주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오디션이 진행
- 연주의 기회는 오페라, 무용극의 반주나 기업 초청 공연이 대부분인데, 기업 초청의 경우 프로모션이나 자체 직원을 위한 행사가 많음.
- 연주자 개인은 솔로 혹은 오케스트라 소속 연주자로 활동하며,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경제상의 이유로 레슨을 하는 경우도 많음.
- 오케스트라 단체 간의 네트워크는 매우 취약하며, 약 3만명 규모의 한국음악협회가 양악 및 국악 장르의 모든 연주자들을 협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음.

■ 업무종사실태

- 활발한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 연주자의 경우는 1주일에 3-4회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단독공연이 아니라 수입을 목적으로 한 앙상블, 오케스트라, 객원 연주 활동이 주를 이룸
 - 따라서 단원 개개인이 여러 연주회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음.

■ 계약실태

- 민간오케스트라의 경우 여전히 관행적으로 구두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석 연주자와 일반 연주자를 구분하여 연주비를 지급함.
- 연주비는 연습과 공연의 횟수를 합산하여 동시에 지급하며, 원천징수 처리하여 개별 지급
 - 하지만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원천징수를 제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20) 공무원 별정직 신분으로 매일 출퇴근하여 연습함

도입에 대해서는 반발이 예상된다.

- 또한 연습과 공연 일수를 합산하더라도 근무일수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라는 종사자들의 보고가 있음.

라. 무용수

■ 일반사항

- 공연예술 장르에 따라 무용수는 크게 발레, 뮤지컬, 대중음악 무용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뮤지컬 댄서의 경우 보통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재즈 등 네 장르 전공자들이 주를 이루며, 발레의 경우 전공자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중음악 무용수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 내 실용무용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되었고, 민간학원 또한 급증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무용수들에게 은퇴 이후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을 의미
- 안무가나 무용수²¹⁾의 경우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무용수의 경우 보수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므로 개인레슨이나 학원 등 다양한 부업을 병행하면서 활동하기도 함.
 - 전문무용수의 소속단체로는 국공립무용단체, 공연장상주단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이 있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독립무용수의 비율은 20.6%로 조사됨.²²⁾
 - 전문무용수의 연령구조는 34세 이하가 80.2%로 5명중 4명이 30대 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대중음악 안무가 중심의 협회가 존재하며, 안무저작권협회를 구성하여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시작
- 일반적으로 공연장 대관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관료 지원 사업이 따로 존재하며, 민간 무용단

21) 황준욱(2014)은 <공연예술 직업분류체계 연구>에서 무용수를 크게 무용감독(안무가)와 댄서(무용수)로 구분하였음

22)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의 경우 지원금 없이 공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함.

■ 업무종사실태

- 공연 규모에 따라 연습일이 매우 상이하여 연습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적으로 연극에 비해 연습기간 및 공연기간이 모두 짧은데 그 이유는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장르이기 때문
- 안무가 이외에는 근무조건이 열악하며, 특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무용수의 경우 전공자가 진입 가능한 일자리의 수가 적어 인접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
 - 안무가의 경우 방송이나 축제, 이벤트 등 기타 영역 활동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이며, 방송보다는 뮤직비디오 제작, 콘서트, 안무 창작, 트레이닝 등으로 인한 수입의 기회가 많은 편
- 대중음악 분야는 보통 팀단위로 움직이며 팀장이나 단장이 주로 안무를 담당, 단장의 경우 계약과 창작을 모두 담당하며, 구성원의 수는 보통 10명 이내이고 최대 40명으로 구성된 팀도 존재
- 방송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가수에게 지급된 보수에서 무용수들의 보수가 지급되므로, 직업종사 증빙이 어려움.
- 무용수들의 월 평균 소득 비율을 보면 무용수 활동을 통한 수입 평균은 51.0%, 무용관련 교육활동을 통한 수입은 30.1%, 기타 예술 활동은 7.0%, 예술과 관련 없는 부가적 수입은 11.3%였음.²³⁾

■ 계약실태

- 무용수가 한 작품과 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용단과 동시에 작품을 같이하고 연극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고용자와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주로 일용직 개념으로 개별계약을 하며 계약서에는 횟수에 따른 보수가 공연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표기
 - 일반적으로 공연은 1일 2회, 2일 4회 정도 상연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보수

23)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는 100만원을 넘기기 어려움.

-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연습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득은 3.3% 원천징수 한 후 지급
- 실태조사에 따른 무용수들의 소속단체 고용형태를 보면, 기간제·계약직이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 24.4%였으며 정규직은 15.1%에 불과했음.²⁴⁾
 - 국공립단체는 표준계약서 작성율이 86.1%인 반면 이의 단체 및 개인은 25.4%로 나타났으며, 구두계약도 17.8%로 여전히 존재
 - 정규직이나 기간제·계약직은 표준계약서 작성율이 78.9%, 69.5%인 반면, 프리랜서는 11.9%에 불과함.
- 고용 계약방식은 월급제, 프로젝트 작품 당, 연봉제, 시간제, 일당제 순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정규직이나 기간제·계약직에 비해서 프리랜서의 소득이 낮았음.
 - 무용수들의 월 평균 소득은 국공립무용단체와 이의 단체 모두 100-200만원 미만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무용단체 소속 무용수의 경우 200-300만원을 받는 무용수도 40% 정도
- 전문무용수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무용 직장 통한 가입율이 45.6%,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한 가입율이 4.4%, 가입하지 않음이 41.3%으로 나타났음.²⁵⁾
- 고용보험 가입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4세의 미가입율이 69.9%, 25-29세의 미가입율이 47.9%로 나타남.
 - 산재보험 가입율은 무용 직장 통한 가입율이 46.4%, 무용 이외 본인 직장 통한 가입율이 7.3%, 가입하지 않음이 46.4%

2) 제작스태프

24)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25)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 일반사항

- 연극 및 뮤지컬, 무용 등의 공연에서 참여하는 기술파트²⁶⁾는 크게, 기술, 제작, 무대, 음향, 조명, 의상, 소품, 영상, 특수효과, 분장 등으로 구분 가능
- 이들 파트 중 기술, 제작, 무대, 음향, 조명 분야의 종사실태는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데, 주로 감독이 한 팀을 꾸려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독은 프리랜서가 대부분
 - 문화예술기관 이외에도 이벤트 업체, 음향 업체 등에 상당수의 무대 기술 인력이 존재함.
- 제작 감독은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프로듀서인 제작사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
- 기술 감독은 모든 시스템과 인력 및 예산을 총괄하는데 계약, 스태프 구성, 작품 컨셉 구체화 등의 작업을 주로 진행
 - 보통 기술 감독이 무대 감독 및 크루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공연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기술 감독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며 무대 감독은 현장직임.
- 무대 감독은 무대 설치 및 철거와 기술 파트의 등장과 퇴장 등 무대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현실에서는 기술 감독이나 제작 감독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무대감독협회에는 기술 감독도 소속되어 있음.
- 제작 감독은 무대 크루에서 무대 감독을 거치거나, 기획사에서 제작관리를 경험하면서 제작 감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연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스태프 및 배우, 제작사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
 - 제작사 소속이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역할과 권한, 책임 등이 매우 상이함.
- 음향과 조명의 경우에도 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기관 전속인 경우가 일반적

26) 황준욱(2014)은 <공연예술 직업분류체계 연구>에서 국내 주요 공연장 및 공연관련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파트를 위와 같이 10분야로 분류하였음

■ 업무중사실태

- 현재 공연장에 근무하고 있는 무대 기술 인력 가운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미취득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 공연예술실태조사 (2014년기준)에 따르면 공연시설 무대기술 인력 추정 수는 2,336명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무대기술 인력이 상당수임.
- 프리랜서 무대기술자라도 무대 관련 창작자(무대미술가, 무대 조명, 음향, 연출등)와 무대 감독 등과의 업무협조로 출·퇴근 의무등 사용자 종속성이 상당히 존재함.
- 근로시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초과근무가 발생할 시 수당 필요
- 개인의 이력을 증명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에 성명과 역할을 표시하는 것은 주로 공연예술기관과 예술 단체에서 명기해주고 있으며 무대 감독급 이상은 되어야 함.
- 무대기술팀으로 프로젝트를 할 시 요구하여 명기되기도 함 (대형 뮤지컬, 발레단 등)

■ 계약실태

- 대부분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공연 철수 작업이 끝날 때까지로 결정되며, 프리랜서 무대 스태프인 경우 계약서는 프로젝트별로 작성, 보수는 지급 기준 없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지급
 - 필요시 결과물 제출 조항을 추가하며, 계약 대상마다 저작권 조항 차이가 발생
- 현재까지는 감독을 중심으로 한 팀 단위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개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현재, 공공 공연장의 무대 진행 스태프의 경우, 일당으로 약 8만원-12만원선으로 지급되며 이는 당일 리허설과 본 공연에만 해당되는 보수임.
 - 개별적으로 상해보험 가입 조항이 추가될 수 있으며, 개인은 원천징수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나 면세하여 지급됨.
- 무대기술자가 문화예술기관(공연장) 또는 예술단체와 계약할 시 용역 계약을 하며 계약서에 명시한 해당 기간까지 역할 및 업무를 완수하여야 함.

- 공연이 6개월 이상 장기공연일 때 단체 계약이 아닌 개인이라면 분할 지급 또는 격주 지급하
기도 함.
- 보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과 보상 주체가 불명확
함.
- 계약서 상 제약이 없어 프리랜서가 여러 작품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
적으로는 제약이 많아 힘들거나 불가능 함.
- 프리랜서 기술자들은 팀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기도 하며, 팀이지만 프로젝트별 계약이 아닌 개
별 계약함.
- 업계의 특성상 도제식 교육을 위해 소개로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음.

2. 공연예술분야 실태조사 결과

1) 자료

가. 응답자의 특성

- 실태조사에 참여한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중 남성은 54.8%, 여성은 45.2%임. 연령은 30
대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8.2%, 50대 이상이 15.9%, 20대가 13.7% 순으로 나
타남.
- 공연예술의 직종은 실연자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실연자와 스태프를 겸하는 응답자가
19.5%, 스태프는 15.5%였음.
- 실연자의 직종은 연극배우가 64.4%, 뮤지컬배우 12.1%, 연극배우와 뮤지컬 배우를 겸하는
응답자가 23.5%였음.

■ 공연예술 경력은 10년 이하가 14.2%, 11-20년이 33.5%, 22년 이상이 32.1%였음.

〈표 4-5〉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응답자 특성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성별	남자	125	54.8	228
	여자	103	45.2	
연령	20대	31	13.7	227
	30대	96	42.3	
	40대	64	28.2	
	50대 이상	36	15.9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47	65	226
	스태프	35	15.5	
	실연자 겸 스태프	44	19.5	
실연자의 직종	연극배우	96	64.4	149
	뮤지컬배우	18	12.1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5	23.5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91	14.2	225
	11-20년	78	33.5	
	22년 이상	56	32.1	

2) 고용 계약의 현황

가. 공연예술의 일한 기간과 수입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지난 24개월 중 공연예술 분야에서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1년미만이 20.2%, 1년-1년 반 미만이 17.7%, 1년 반-2년 이하가 29.6%로 나타났음.
- 부업 기간역시 6개월 미만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1년 미만이 19.4%, 1년-1년 반 미만이 16.9%, 1년 반-2년 이하가 21.9%로 나타남.

〈표 4-6〉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공연예술 일한 기간과 부업 기간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공연예술 일한 기간	6개월 미만	66	32.5	203
	6개월 - 1년 미만	41	20.2	
	1년 - 1년 반 미만	36	17.7	
	1년 반 - 2년 이하	60	29.6	
부업 기간	6개월 미만	67	41.9	160
	6개월 - 1년 미만	31	19.4	
	1년 - 1년 반 미만	27	16.9	
	1년 반 - 2년 이하	35	21.9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의 일한 기간은 남성과 여성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남성과 여성 모두 6개월 미만으로 일한 응답자가 각각 29.1%, 36.7%로 높게 나타남.
- 연령은 30대를 제외한 20대, 40대, 50대 이상이 각각 46.4%, 28.6%, 48.4%로 6개월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연예술의 직종에 따라서는 실연자는 6개월 미만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스태프와 실연자겸 스태프는 ‘1년 반-2년 이하’가 각각 53.1%,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극배우와 뮤지컬 배우의 경우에는 공연예술의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42.0%, 58.8%로 가장 많았으며, 연극배우 겸 뮤지컬 배우는 ‘1년 반-2년 이하’가 45.5%임.

〈표 4-7〉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공연예술 일한 기간

		사례수	공연예술 일한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1년 반 미만	1년 반 - 2년 이하
성별	남자	113	29.2%	22.1%	21.2%	27.4%
	여자	90	36.7%	17.8%	13.3%	32.2%
연령	20대	28	46.4%	14.3%	3.6%	35.7%
	30대	88	25.0%	23.9%	14.8%	36.4%
	40대	56	28.6%	17.9%	26.8%	26.8%
	50대 이상	31	48.4%	19.4%	22.6%	9.7%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29	38.0%	21.7%	17.1%	23.3%
	스태프	32	15.6%	18.8%	12.5%	53.1%
	실연자 겸 스태프	42	28.6%	16.7%	23.8%	31.0%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81	42.0%	27.2%	17.3%	13.6%
	뮤지컬배우	17	58.8%	17.6%	0.0%	23.5%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3	18.2%	9.1%	27.3%	45.5%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81	34.6%	19.8%	7.4%	38.3%
	11-20년	69	29.0%	18.8%	23.2%	29.0%
	21년 이상	53	34.0%	22.6%	26.4%	17.0%

- 공연예술 경력이 10년 이하인 응답자의 경우 6개월 미만, 1년 반-2년 이하가 각각 34.6%, 38.3%로 나타났으며, 11-20년의 경력을 가진 경우 6개월 미만, 1년 반-2년 이하가 29%로 가장 높았음. 2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6개월 미만 일한 경우가 34%로 가장 높음.

〈표 4-8〉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부업 경험

		사례수	지난 1년간 부업 경험	
			있음	없음
성별	남자	114	74.6%	25.4%
	여자	87	71.3%	28.7%
연령	20대	26	65.4%	34.6%
	30대	85	77.6%	22.4%
	40대	58	74.1%	25.9%
	50대 이상	32	65.6%	34.4%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30	76.9%	23.1%
	스태프	30	66.7%	33.3%
	실연자 겸 스태프	41	65.9%	34.1%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85	74.1%	25.9%
	뮤지컬배우	15	66.7%	33.3%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2	90.6%	9.4%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76	72.4%
	11-20년	72	76.4%	23.6%
	21년 이상	53	69.8%	30.2%

-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의 부업경험은 남성과 여성, 연령, 공연예술 직종, 공연예술의 경력과 크게 관계없이 65% 이상으로 나타남. 특히, 실연자 직종 중 연극배우 겸 뮤지컬 배우의 경우 부업 경험이 90.6%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부업의 기간의 경우 성별, 연령, 공연예술 경력의 경우 큰 차이 없이 6개월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공연예술의 직종이 실연자인 경우 부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 48.7%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스태프의 경우에는 1년-1년 반 미만, 1년 반- 2년 이하가 각각 33.3%, 28.6%로 높게 나타남.

〈표 4-9〉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부업기간

		사례수	부업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1년 반 미만	1년 반 - 2년 이하
성별	남자	92	42.4%	21.7%	14.1%	21.7%
	여자	68	41.2%	16.2%	20.6%	22.1%
연령	20대	19	36.8%	15.8%	10.5%	36.8%
	30대	71	53.5%	11.3%	16.9%	18.3%
	40대	47	34.0%	25.5%	14.9%	25.5%
	50대 이상	23	26.1%	34.8%	26.1%	13.0%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13	48.7%	19.5%	14.2%	17.7%
	스태프	21	19.0%	19.0%	33.3%	28.6%
	실연자 겸 스태프	26	30.8%	19.2%	15.4%	34.6%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71	42.3%	28.2%	15.5%	14.1%
	뮤지컬배우	14	50.0%	7.1%	7.1%	35.7%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0	60.0%	6.7%	13.3%	20.0%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64	45.3%	14.1%	12.5%	28.1%
	11-20년	56	44.6%	14.3%	19.6%	21.4%
	21년 이상	40	32.5%	35.0%	20.0%	12.5%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공연예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56.1%로 가장 높았음. 101-200만원이 18.5%, 201-300만원이 7.4%, 301만원 이상이 18%로 나타남.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부업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101-200만원은 13.2%, 201-300만원이 7.4%, 301만원 이상이 18.4%였음.

〈표 4-10〉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공연예술 수입과 부업수입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공연예술 수입	100만원 이하	106	56.1	189
	101-200만원	35	18.5	
	201-300만원	14	7.4	
	301만원 이상	34	18	
부업 수입	100만원 이하	83	61	136
	101-200만원	18	13.2	
	201-300만원	10	7.4	
	301만원 이상	25	18.4	

- 공연예술의 수입은 남성과 여성 모두 100만원 이하가 56.6%,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도 크게 차이 없이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공연예술의 경력도 경력별로 크게 차이 없이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연예술의 직종의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연자 겸 스태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70%나 되었음. 반면, 스태프의 경우 101-200만원, 301만원 이상이 29.6%로 나타남.

〈표 4-11〉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공연예술 수입

	성별	사례수	공연예술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남자	106	56.6%	16.0%	9.4%	17.9%
	여자	83	55.4%	21.7%	4.8%	18.1%

연령	20대	23	52.2%	39.1%	4.3%	4.3%
	30대	83	61.4%	10.8%	7.2%	20.5%
	40대	55	56.4%	16.4%	9.1%	18.2%
	50대 이상	28	42.9%	28.6%	7.1%	21.4%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22	55.7%	18.9%	7.4%	18.0%
	스태프	27	37.0%	29.6%	3.7%	29.6%
	실연자 겸 스태프	40	70.0%	10.0%	10.0%	10.0%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80	56.3%	17.5%	10.0%	16.3%
	뮤지컬배우	14	50.0%	14.3%	7.1%	28.6%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0	60.0%	23.3%	0.0%	16.7%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72	52.8%	22.2%	6.9%	18.1%
	11-20년	68	67.6%	7.4%	8.8%	16.2%
	21년 이상	49	44.9%	28.6%	6.1%	20.4%

- 부업 수입의 경우 성별의 차이 없이 100만원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50대 이상을 제외한 20대, 30대, 40대에서 100만원 이하가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공연예술의 직종, 실연자 직종, 공연예술의 경력별로도 큰 차이 없이 100만원 이하의 부업 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부업수입

		사례수	부업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74	59.5%	13.5%	9.5%	17.6%
	여자	62	62.9%	12.9%	4.8%	19.4%
연령	20대	17	64.7%	11.8%	0.0%	23.5%
	30대	55	67.3%	9.1%	9.1%	14.5%
	40대	42	64.3%	14.3%	4.8%	16.7%
	50대 이상	22	36.4%	22.7%	13.6%	27.3%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90	61.1%	12.2%	6.7%	20.0%
	스태프	16	62.5%	12.5%	6.3%	18.8%
	실연자 겸 스태프	30	60.0%	16.7%	10.0%	13.3%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60	61.7%	10.0%	8.3%	20.0%
	뮤지컬배우	9	55.6%	33.3%	0.0%	11.1%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23	65.2%	8.7%	4.3%	21.7%
	연극배우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51	68.6%	9.8%	3.9%	17.6%
	11-20년	49	65.3%	12.2%	10.2%	12.2%
	21년 이상	36	44.4%	19.4%	8.3%	27.8%

나. 체결한 계약 특성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현재(혹은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의 형태는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 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면계약이 40.1%로 나타남. 계약의 상대로는 제작사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극단 대표는 35.2%였음.
- 계약은 기간 계약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공연 횟수당 계약’ 37.2% 었음.

〈표 4-13〉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계약의 특성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현재 체결한 계약 형태	서면계약	83	40.1	207
	구두계약	34	16.4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	84	40.6	
	기타	6	2.9	
현재 계약의 상대	극단 대표	43	35.2	122
	제작사 대표	51	41.8	
	에이전시 대표	8	6.6	
	업체 대표	9	7.4	
	공연장 대표	1	0.8	
	재단	2	1.6	
	교육기관	2	1.6	
	기타	6	4.9	

계약의 형태	기간 계약	62	51.2	121
	공연 횡수당 계약	45	37.2	
	납품 계약	2	1.7	
	고정급	4	3.3	
	기타	8	6.6	

- 남성의 경우 서면계약이 42.7%로 가장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계약의 형태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40대, 50대 이상보다 서면계약이 조금 더 많았지만, 별도로 정해진 계약 형태가 없는 경우 역시 서면계약의 수준과 비슷했음.
- 공연예술의 직종별로는 실연자와 스태프는 서면계약이 가장 많은 반면, 실연자와 스태프를 겸하는 응답자의 계약은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이 가장 많았음. 또한 실연자의 경우 뮤지컬 배우와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의 경우 각각 66.7%, 55.9%로 서면계약의 형태가 가장 많았지만, 연극배우의 경우 서면계약은 33.7%였음.

〈표 4-14〉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현재 체결한 계약 형태

		사례수	현재 체결한 계약 형태			
			서면계약	구두계약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	기타
성별	남자	117	42.7%	14.5%	40.2%	2.6%
	여자	90	36.7%	18.9%	41.1%	3.3%
연령	20대	27	40.7%	11.1%	48.1%	0.0%
	30대	88	42.0%	14.8%	42.0%	1.1%
	40대	60	38.3%	23.3%	35.0%	3.3%
	50대 이상	32	37.5%	12.5%	40.6%	9.4%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33	42.9%	15.0%	38.3%	3.8%
	스태프	32	50.0%	18.8%	28.1%	3.1%
	실연자 겸 스태프	42	23.8%	19.0%	57.1%	0.0%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86	33.7%	18.6%	44.2%	3.5%
	뮤지컬배우	15	66.7%	0.0%	33.3%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4	55.9%	11.8%	26.5%	5.9%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80	41.3%	13.8%	43.8%	1.3%
	11-20년	74	39.2%	18.9%	40.5%	1.4%
	21년 이상	53	39.6%	17.0%	35.8%	7.5%

- 현재 계약의 상대는 성별에서는 큰 차이 없이 제작사 대표와 극단대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현재 계약의 상대는 ‘제작사 대표’가 64.3%, 51.0%로 가장 높은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57.9%가 ‘극단 대표’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남.
- 공연예술의 직종에 따라서는 실연자는 극단대표와 계약을 40.2%가 맺은 반면, 스태프는 ‘제작사 대표’와 54.5%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연자의 직종별로도 연극배우는 56.3%가 현재 계약의 상대가 극단대표였지만, 뮤지컬 배우는 극단대표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없었으며, 제작사 대표와의 계약이 90%였음.
- 공연예술의 경력별로는 10년 이하, 11-20년의 경력자들은 50%이상이 제작사 대표가 현재 계약의 상대인 반면, 21년 이상의 경력자들은 58.8%가 극단대표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응답함.

〈표 4-15〉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현재 계약의 상대

		사례수	현재 계약의 상대							
			극단 대표	제작사 대표	에이 전시 대표	업체 대표	공연장 대표	재단	교육 기관	기타
성별	남자	69	31.9%	42.0%	8.7%	7.2%	1.4%	0.0%	1.4%	7.2%
	여자	53	39.6%	41.5%	3.8%	7.5%	0.0%	3.8%	1.9%	1.9%
연령	20대	14	28.6%	64.3%	0.0%	7.1%	0.0%	0.0%	0.0%	0.0%
	30대	51	27.5%	51.0%	7.8%	3.9%	0.0%	2.0%	2.0%	5.9%
	40대	38	36.8%	34.2%	10.5%	10.5%	2.6%	0.0%	0.0%	5.3%
	50대 이상	19	57.9%	15.8%	0.0%	10.5%	0.0%	5.3%	5.3%	5.3%
공연 예술 직종	실연자	82	40.2%	39.0%	8.5%	3.7%	0.0%	2.4%	1.2%	4.9%
	스태프	22	13.6%	54.5%	0.0%	18.2%	0.0%	0.0%	4.5%	9.1%
	실연자 겸 스태프	18	38.9%	38.9%	5.6%	11.1%	5.6%	0.0%	0.0%	0.0%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48	56.3%	27.1%	2.1%	4.2%	0.0%	4.2%	2.1%	4.2%
	뮤지컬배우	10	0.0%	90.0%	10.0%	0.0%	0.0%	0.0%	0.0%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25	28.0%	40.0%	20.0%	4.0%	0.0%	0.0%	0.0%	8.0%
공연 예술 경력	10년 이하	45	31.1%	53.3%	6.7%	6.7%	0.0%	0.0%	0.0%	2.2%
	11-20년	43	20.9%	51.2%	9.3%	4.7%	0.0%	2.3%	2.3%	9.3%
	21년 이상	34	58.8%	14.7%	2.9%	11.8%	2.9%	2.9%	2.9%	2.9%

- 계약의 형태로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기간계약’이 가장 많은 계약의 형태였으며, ‘공연 횟수당 계약’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실연자 직종에 따라서는 뮤지컬 배우가 ‘공연 횟수당 계약’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극배우와 연극배우 겸 뮤지컬 배우는 기간계약이 가장 높았음.

〈표 4-16〉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계약의 형태

		사례수	계약의 형태				
			기간 계약	공연 횟수당 계약	납품 계약	고정급	기타
성별	남자	69	46.4%	42.0%	2.9%	2.9%	5.8%
	여자	52	57.7%	30.8%	0.0%	3.8%	7.7%
연령	20대	14	64.3%	28.6%	0.0%	0.0%	7.1%
	30대	50	52.0%	34.0%	2.0%	6.0%	6.0%
	40대	38	42.1%	47.4%	2.6%	2.6%	5.3%
	50대 이상	19	57.9%	31.6%	0.0%	0.0%	10.5%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82	50.0%	42.7%	1.2%	0.0%	6.1%
	스태프	22	59.1%	18.2%	4.5%	13.6%	4.5%
	실연자 겸 스태프	17	47.1%	35.3%	0.0%	5.9%	11.8%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48	52.1%	37.5%	0.0%	0.0%	10.4%
	뮤지컬배우	10	30.0%	70.0%	0.0%	0.0%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25	56.0%	40.0%	4.0%	0.0%	0.0%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44	45.5%	36.4%	2.3%	6.8%	9.1%
	11~20년	43	58.1%	32.6%	2.3%	2.3%	4.7%
	21년 이상	34	50.0%	44.1%	0.0%	0.0%	5.9%

다. 보수지급 주기와 여러 작품 동시 참여

- 보수지급 주기는 ‘공연 종료 후’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지급, 월급 순으로 보수를 지급 받았음. 또한 ‘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8.4% 였음.

〈표 4-17〉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보수지급 주기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보수지급 주기	월급	29	14.4	202
	주급 격주급	2	1	
	회당 지급	34	16.8	
	시간급 또는 일당	4	2	
	연봉계약제 매월 1/12을 지급 받음	2	1	
	공연 종료 후	107	53	
	잘 모르겠다	17	8.4	
	분할 지급	4	2	
	기타	3	1.5	

-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의 보수 지급주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공연 종료 후’가 각각 49.1%,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회당지급’, ‘잘 모르겠다’, 여성의 경우 ‘월급’, ‘회당지급’의 순
- 연령별로도 보수를 지급받는 주기는 ‘공연 종료 후’가 가장 많았으며, 20대, 30대의 경우 월급이 약 20%로 나타남. 또한 20대, 30대, 40대의 경우 회당 지급도 약 20%였음.
- 공연예술의 직종별로는 실연자와 실연자 겸 스태프는 ‘공연 종료 후’가 가장 많았지만, 스태프의 경우에는 월급이 가장 많았음. 특히 실연자의 경우 연극배우의 74.4%가 ‘공연 종료 후’ 보수를 지급 받는다고 응답함. 반면, 뮤지컬 배우는 ‘회당 지급’이 46.7%로 가장 많았음.

〈표 4-18〉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보수지급 주기

		보수지급 주기									
		사례수	월급	주급 격주급	회당 지급	시간급 또는 일당	연봉계약제 매월 1/12 지급 받음	공연 종료 후	잘 모르겠다	분할 지급	기타
성별	남자	114	8.8%	1.8%	21.1%	2.6%	1.8%	49.1%	9.6%	3.5%	1.8%
	여자	88	21.6%	0.0%	11.4%	1.1%	0.0%	58.0%	6.8%	0.0%	1.1%
연령	20대	26	23.1%	3.8%	19.2%	3.8%	0.0%	42.3%	7.7%	0.0%	0.0%
	30대	86	20.9%	1.2%	18.6%	2.3%	0.0%	40.7%	14.0%	2.3%	0.0%
	40대	58	6.9%	0.0%	20.7%	1.7%	3.4%	60.3%	0.0%	3.4%	3.4%
	50대이상	32	3.1%	0.0%	3.1%	0.0%	0.0%	81.3%	9.4%	0.0%	3.1%
공연 예술 직종	실연자	131	9.9%	1.5%	16.8%	3.1%	0.0%	57.3%	7.6%	2.3%	1.5%
	스태프	30	40.0%	0.0%	0.0%	0.0%	6.7%	33.3%	13.3%	3.3%	3.3%
	실연자 겸 스태프	41	9.8%	0.0%	29.3%	0.0%	0.0%	53.7%	7.3%	0.0%	0.0%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86	3.5%	1.2%	8.1%	3.5%	0.0%	74.4%	5.8%	1.2%	2.3%
	뮤지컬배우	15	20.0%	6.7%	46.7%	0.0%	0.0%	13.3%	0.0%	13.3%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2	21.9%	0.0%	25.0%	3.1%	0.0%	34.4%	15.6%	0.0%	0.0%
공연 예술 경력	10년이하	77	24.7%	2.6%	19.5%	2.6%	1.3%	36.4%	11.7%	1.3%	0.0%
	11-20년	72	11.1%	0.0%	18.1%	2.8%	1.4%	51.4%	8.3%	4.2%	2.8%
	21년이상	53	3.8%	0.0%	11.3%	0.0%	0.0%	79.2%	3.8%	0.0%	1.9%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가 ‘한 공연작품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연 작품에 참여’ 하는 응답자는 26.8%,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가 73.2%
- 여러 공연작품에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작품의 본 공연기간 동안 다른 작품의 준비작업을 한다’가 75.9%로 많았으며, ‘여러 작품의 본 공연에 동시에 출연한다’의 경우는 24.1%로 나타남.

〈표 4-19〉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공연작품 동시 참여 여부와 상황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한 공연작품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연 작품 일 참여 유무	예	55	26.8	205
	아니오	150	73.2	
여러 공연작품에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	한 작품의 본 공연기간 동안 다른 작품의 준비작업을 한다	41	75.9	54
	여러 작품의 본 공연에 동시에 출연한다	13	24.1	

- 한 공연 작품에 일하면서 다른 공연작품에 참여하는 것에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20대, 50대 이상에 비해서 30대, 40대가 동시에 공연작품에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남.
- 직종별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뮤지컬 배우가 동시에 작품을 참여하 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으로 나타남.

〈표 4-20〉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공연작품 동시 참여 여부

		사례수	한 공연작품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연 작품 일 참여 유무	
			예	아니오
성별	남자	116	25.0%	75.0%
	여자	89	29.2%	70.8%
연령	20대	27	14.8%	85.2%
	30대	87	35.6%	64.4%
	40대	59	27.1%	72.9%
	50대 이상	32	12.5%	87.5%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33	24.8%	75.2%
	스태프	31	29.0%	71.0%
	실연자 겸 스태프	41	31.7%	68.3%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86	22.1%	77.9%
	뮤지컬배우	15	13.3%	86.7%
	연극배우 겸 뮤지컬 배우	34	38.2%	61.8%
	배우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79	22.8%	77.2%
	11-20년	73	35.6%	64.4%
	21년 이상	53	20.8%	79.2%

- 동시에 여러 작품에 종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성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별로는 ‘한 작품의 본 공연기간 동안 다른 작품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100%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0대, 20대 순이었음. 특히 20대는 ‘여러작품의 본 공연에 동시에 출연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50%였음.
- 공연예술 직종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실연자, 스태프, 실연자 겸 스태프가 한 작품의 본 공연기간 동안 다른 작품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연자 직종 중 뮤지컬 배우는 여러 작품의 본 공연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가 없음.

〈표 4-21〉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여러 공연작품에 동시 종사 상황

		사례수	여러 공연작품에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	
			한 작품의 본 공연기간동안 다른 작품의 준비작업을 한다	여러 작품의 본 공연에 동시에 출연한다
성별	남자	28	75.0%	25.0%
	여자	26	76.9%	23.1%
연령	20대	4	50.0%	50.0%
	30대	31	74.2%	25.8%
	40대	15	80.0%	20.0%
	50대 이상	4	100.0%	0.0%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33	78.8%	21.2%
	스태프	8	75.0%	25.0%
	실연자 겸 스태프	13	69.2%	30.8%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19	89.5%	10.5%
	뮤지컬배우	2	100.0%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13	61.5%	38.5%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18	72.2%	27.8%
	11-20년	25	72.0%	28.0%
	21년 이상	11	90.9%	9.1%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계약기간 내의 해고 또는 계약 해지의 경험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남. 73.9%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해고 또는 계약 해지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1%였음.

라. 해고 또는 계약 해지 경험

-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는 ‘흥행부진, 성과미흡 등의 사유로 제작 관리자의 해고’ 인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작품 공연 완료’ 의 이유가 32.1%였음.

〈표 4-22〉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계약기간 내의 해고 경험과 해고·만료 사유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 된 경험	있음	53	26.1	203
	없음	150	73.9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	작품 공연 완료	17	32.1	53
	흥행부진, 성과미흡 등의 사유로 제작 관리자의 해고	30	56.6	
	보수·업무여건 불만족	5	9.4	
	질병·부상 등 건강상의 사유	1	1.9	

-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경험은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극 겸 뮤지컬 배우의 경우에 다른 실연자 직종보다 높은 39.4%가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4-23〉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계약기간 내의 해고 계약 해지 경험

		사례수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경험	
			있음	없음
성별	남자	115	28.7%	71.3%
	여자	88	22.7%	77.3%
연령	20대	26	15.4%	84.6%
	30대	87	23.0%	77.0%
	40대	58	37.9%	62.1%
	50대 이상	32	21.9%	78.1%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32	24,2%	75,8%
	스태프	30	20,0%	80,0%
	실연자 겸 스태프	41	36,6%	63,4%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86	19,8%	80,2%
	뮤지컬배우	15	13,3%	86,7%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3	39,4%	60,6%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78	21,8%	78,2%
	11-20년	72	29,2%	70,8%
	21년 이상	53	28,3%	71,7%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계약의 주된 만료 사유는 남성의 경우에는 ‘홍행부진, 성과미흡 등의 사유로 제작관리자의 해고’, ‘작품 공연완료’가 각각 48.5%, 42.4%로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홍행부진, 성과미흡 등의 사유로 제작관리자의 해고’가 70%였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작품 공연 완료’인 경우가 57.1%였으나, 40대와 30대는 31.8%, 20.0%로 나타났고 20대의 경우에는 0% 였음.
- 공연예술의 직종에 따른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는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실연자 직종의 경우 뮤지컬 배우의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는 ‘홍행부진, 성과 미흡 등의 사유로 제작 관리자의 해고’가 100% 였음.

〈표 4-24〉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				
		사례수	작품 공연 완료	홍행부진, 성과미흡 등의 사유로 제작 관리자의 해고	보수·업무여건 불만족	질병·부상 등 건강상의 사유·질병·부상 등 건강상의 사유
성별	남자			33	42.4%	48,5%
	여자	20	15,0%	70,0%	10,0%	5,0%
연령	20대	4	0,0%	75,0%	25,0%	0,0%
	30대	20	30,0%	60,0%	10,0%	0,0%
	40대	22	31,8%	59,1%	4,5%	4,5%
	50대 이상	7	57,1%	28,6%	14,3%	0,0%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32	28.1%	56.3%	12.5%	3.1%
	스태프	6	33.3%	66.7%	0.0%	0.0%
	실연자 겸 스태프	15	40.0%	53.3%	6.7%	0.0%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17	17.6%	58.8%	17.6%	5.9%
	뮤지컬배우	2	0.0%	100.0%	0.0%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13	46.2%	46.2%	7.7%	0.0%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17	17.6%	70.6%	11.8%	0.0%
	11~20년	21	33.3%	61.9%	4.8%	0.0%
	21년 이상	15	46.7%	33.3%	13.3%	6.7%

3)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가.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은 ‘이름을 들어 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가 47.3%였으며,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30.4%로 나타남.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83.7%, 반대가 16.3%
- 고용보험을 반대의 이유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56.7%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부담 때문에’가 33.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고용보험의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69.1%가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을 선호했으며, 29.6%는 ‘공연예술에 실연자·스태프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을 선호함.

〈표 4-25〉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

		빈도	퍼센트	사례수
고용보험 제도 인식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16	8.7	184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87	47.3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15	8.2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56	30.4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10	5.4	
	찬성	154	83.7	184
	찬성 여부	반대	30	16.3
고용보험 반대 이유	보험료 부담 때문에	10	33.3	30
	공연예술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7	56.7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1	3.3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번거로워서	1	3.3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1	3.3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105	69.1	152
선호 가입방식	공연예술에 실연자·스태프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	45	29.6	
	기타	2	1.3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	월 1만원 미만	18	11.8
	월 1만원 - 2만원 미만	52	34.2	
	월 2만원 - 3만원 미만	51	33.6	
	월 3만원 - 4만원 미만	9	5.9	
	월 4만원 - 5만원 미만	13	8.6	
	월 5만원 이상	9	5.9	
피보험단위기간 줄이고 실업급여 줄이는 방안	동의한다	72	47.4	152
	반대한다	11	7.2	
	잘 모르겠다	69	45.4	

■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는 ‘월 1만원 - 2만원 미만’ 과 ‘월 2만원- 3만원 미만’ 이 각각 34.2%,

33.6%로 나타남. 또한 ‘월 1만원 미만’ 이 11.8%였음.

- 피보험 단위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일 수 있다면 이에 동의하는 가에 대한 응답에는 ‘동의한다’ 가 47.4%였으며, ‘잘 모르겠다’ 가 45.4%로 나타남. ‘반대한다’ 의 의견은 7.2% 였음.

〈표 4-26〉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 고용보험 제도 인식

		고용보험 제도 인식					
		사례수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성별	남자	103	8.7%	50.5%	11.7%	25.2%	3.9%
	여자	81	8.6%	43.2%	3.7%	37.0%	7.4%
연령	20대	22	22.7%	45.5%	4.5%	18.2%	9.1%
	30대	81	9.9%	48.1%	8.6%	29.6%	3.7%
	40대	53	1.9%	50.9%	9.4%	34.0%	3.8%
	50대 이상	28	7.1%	39.3%	7.1%	35.7%	10.7%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20	8.3%	49.2%	10.0%	26.7%	5.8%
	스태프	25	4.0%	44.0%	0.0%	48.0%	4.0%
	실연자 겸 스태프	39	12.8%	43.6%	7.7%	30.8%	5.1%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78	1.3%	46.2%	9.0%	35.9%	7.7%
	뮤지컬배우	14	35.7%	57.1%	0.0%	0.0%	7.1%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0	13.3%	50.0%	16.7%	16.7%	3.3%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69	13.0%	50.7%	7.2%	23.2%	5.8%
	11-20년	66	9.1%	42.4%	12.1%	33.3%	3.0%
	21년 이상	49	2.0%	49.0%	4.1%	36.7%	8.2%

- 고용보험이란 제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가 가장 많았으며, ‘일을 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을 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연령은 20대의 경우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름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가 45.5%로 높았음.
- 성별과 연령, 실연자 직종, 공연예술의 경력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찬성하는 비율이 80%가 넘었음. 공연예술의 직종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지만, 스태프의 경우 반대하는 비율이 28.0%였음.

〈표 4-27〉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고용보험 도입 찬성 여부

		사례수	공연예술 실연자 스태프 고용보험 도입 찬성 여부	
			찬성	반대
성별	남자	103	82.5%	17.5%
	여자	81	85.2%	14.8%
연령	20대	22	81.8%	18.2%
	30대	81	85.2%	14.8%
	40대	53	83.0%	17.0%
	50대 이상	28	82.1%	17.9%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20	84.2%	15.8%
	스태프	25	72.0%	28.0%
	실연자 겸 스태프	39	89.7%	10.3%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78	80.8%	19.2%
	뮤지컬배우	14	92.9%	7.1%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0	90.0%	10.0%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69	84.1%	15.9%
	11~20년	66	81.8%	18.2%
	21년 이상	49	85.7%	14.3%

- 고용보험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로 크게 차이 없이 ‘공연예술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대다수 였으며, ‘보험료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도 크게 나타남.
- 특히 실연자 중 뮤지컬 배우의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이 100.0%인 반면, 연극

배우와 연극배우 겸 뮤지컬 배우의 경우 ‘공연예술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각각 73.3%, 66.7%로 나타남.

- 또한 공연예술 경력이 21년 이상이고, 스태프이고, 50대 이상의 응답자들 중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14.3%, 16.7%, 20%였음.

〈표 4-28〉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

		사례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반대 이유			
				공연예술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신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번거로우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성별	남자	17	41.2%	52.9%	0.0%	5.9%	0.0%
	여자	13	23.1%	61.5%	7.7%	0.0%	7.7%
연령	20대	4	25.0%	75.0%	0.0%	0.0%	0.0%
	30대	13	61.5%	38.5%	0.0%	0.0%	0.0%
	40대	8	12.5%	75.0%	0.0%	12.5%	0.0%
	50대 이상	5	0.0%	60.0%	20.0%	0.0%	20.0%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9	26.3%	68.4%	5.3%	0.0%	0.0%
	스태프	6	33.3%	50.0%	0.0%	0.0%	16.7%
	실연자 겸 스태프	5	60.0%	20.0%	0.0%	20.0%	0.0%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15	20.0%	73.3%	6.7%	0.0%	0.0%
	뮤지컬배우	1	100.0%	0.0%	0.0%	0.0%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3	33.3%	66.7%	0.0%	0.0%	0.0%
	연극배우	3	33.3%	66.7%	0.0%	0.0%	0.0%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12	41.7%	58.3%	0.0%	0.0%	0.0%
	11-20년	11	45.5%	54.5%	0.0%	0.0%	0.0%
	21년 이상	7	0.0%	57.1%	14.3%	14.3%	14.3%

- 고용보험의 가입방식인 임의가입과 당연가입에 대해서 성별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임의가입’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연예술의 직종별로는 실연자겸 스태프, 실연자, 스태프 순으로 ‘임의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연자 직종 중 뮤지컬 배우의 46.2%는 ‘공연예술에 실연자·스태프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을 선호하는 비중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컸음.

〈표 4-29〉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방식 선호

	사례수	고용보험 찬성자의 가입방식 선호			
		공연예술의 실연자 스태프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공연예술에 실연자 스태프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	기타	
성별	남자	83	67.5%	30.1%	2.4%
	여자	69	71.0%	29.0%	0.0%
연령	20대	18	77.8%	22.2%	0.0%
	30대	68	73.5%	26.5%	0.0%
	40대	43	67.4%	32.6%	0.0%
	50대 이상	23	52.2%	39.1%	8.7%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99	66.7%	33.3%	0.0%
	스태프	18	55.6%	38.9%	5.6%
	실연자 겸 스태프	35	82.9%	14.3%	2.9%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62	62.9%	37.1%	0.0%
	뮤지컬배우	13	53.8%	46.2%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26	80.8%	19.2%	0.0%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58	72.4%	27.6%
	11-20년	53	71.7%	26.4%	1.9%
	21년 이상	41	61.0%	36.6%	2.4%

- 직종별로 고용보험료 부담의사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월 1만원-2만원 미만’, ‘월 2만원-3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음.
-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공연예술의 경력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0〉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

		사례수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					
			월 1만원 미만	월 1만원 - 2만원 미만	월 2만원 - 3만원 미만	월 3만원 - 4만원 미만	월 4만원 - 5만원 미만	월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83	9.6%	31.3%	39.8%	6.0%	6.0%	7.2%
	여자	69	14.5%	37.7%	26.1%	5.8%	11.6%	4.3%
연령	20대	18	27.8%	44.4%	27.8%	0.0%	0.0%	0.0%
	30대	68	10.3%	38.2%	35.3%	2.9%	7.4%	5.9%
	40대	43	11.6%	30.2%	37.2%	9.3%	4.7%	7.0%
	50대 이상	23	4.3%	21.7%	26.1%	13.0%	26.1%	8.7%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99	10.1%	36.4%	33.3%	6.1%	8.1%	6.1%
	스태프	18	11.1%	22.2%	44.4%	0.0%	11.1%	11.1%
	실연자 겸 스태프	35	17.1%	34.3%	28.6%	8.6%	8.6%	2.9%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62 13 26	8.1% 23.1% 11.5%	35.5% 30.8% 38.5%	30.6% 30.8% 42.3%	9.7% 0.0% 0.0%	9.7% 7.7% 3.8%	6.5% 7.7% 3.8%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58	13.8%	44.8%	31.0%	3.4%	1.7%	5.2%
	11-20년	53	17.0%	28.3%	34.0%	3.8%	11.3%	5.7%
	21년 이상	41	2.4%	26.8%	36.6%	12.2%	14.6%	7.3%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특성별로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고용보험 설계방식’에 대한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31〉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 고용보험 설계방식에 대한 의견

		사례수	고용보험 설계방식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안 찬성 여부		
			동의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성별	남자	83	49.4%	8.4%	42.2%
	여자	69	44.9%	5.8%	49.3%

연령	20대	18	44.4%	0.0%	55.6%
	30대	68	52.9%	4.4%	42.6%
	40대	43	39.5%	11.6%	48.8%
	50대 이상	23	47.8%	13.0%	39.1%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99	50.5%	6.1%	43.4%
	스태프	18	55.6%	0.0%	44.4%
	실연자 겸 스태프	35	34.3%	14.3%	51.4%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62	50.0%	8.1%	41.9%
	뮤지컬배우	13	15.4%	7.7%	76.9%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26	65.4%	3.8%	30.8%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58	50.0%	6.9%	43.1%
	11-20년	53	47.2%	1.9%	50.9%
	21년 이상	41	43.9%	14.6%	41.5%

나. 향후 2년간 일자리 유지

- 향후 2년간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9.7%, ‘예측하기하기 어려운 편이다’ 는 70.3%
- 향후 2년간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을 예측한 응답자 중 ‘향후 2년 중 1년 이상’ 이 83.3%로 나타남.

〈표 4-32〉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향후 일자리 유지 예측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향후 2년간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 일자리 유지 예측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54	29.7	182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128	70.3	
향후 2년간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 일자리 유지 기간 예상	향후 2년 중 1년 이상	45	83.3	54
	향후 2년 중 1년 미만	6	11.1	
	기타	3	5.6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로 향후 2년간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일자리 유지에 대

한 예측가능성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33〉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 향후 2년간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일자리 예측

		사례수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공연예술의 실연자 스태프 일자리 유지 예측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성별	남자	101	25.7%	74.3%
	여자	81	34.6%	65.4%
연령	20대	22	36.4%	63.6%
	30대	80	31.3%	68.8%
	40대	52	26.9%	73.1%
	50대 이상	28	25.0%	75.0%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118	31.4%	68.6%
	스태프	25	32.0%	68.0%
	실연자 겸 스태프	39	23.1%	76.9%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77	31.2%	68.8%
	뮤지컬배우	14	28.6%	71.4%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29	31.0%	69.0%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69	26.1%	73.9%
	11-20년	65	33.8%	66.2%
	21년 이상	48	29.2%	70.8%

- 향후 2년간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예상하는 응답에서는 성별에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20대가 ‘향후 2년 중 1년 이상’이 100%임.
- 공연예술의 직종별로는 실연자 겸 스태프를 겸하는 경우, 실연자, 스태프에 비해서 ‘향후 2년 중 1년 미만’을 예상하는 비율이 37.5%로 높았음.

〈표 4-34〉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특성별 향후 2년간 일자리 유지 예상 기간

	사례수	향후 2년간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 일자리 유지 기간 예상		
		향후 2년 중 1년 이상	향후 2년 중 1년 미만	기타

성별	남자	25	84.0%	12.0%	4.0%
	여자	29	82.8%	10.3%	6.9%
연령	20대	8	100.0%	0.0%	0.0%
	30대	25	76.0%	16.0%	8.0%
	40대	15	86.7%	6.7%	6.7%
	50대 이상	6	83.3%	16.7%	0.0%
공연예술 직종	실연자	38	89.5%	7.9%	2.6%
	스태프	8	87.5%	0.0%	12.5%
	실연자 겸 스태프	8	50.0%	37.5%	12.5%
실연자 직종	연극배우	25	84.0%	12.0%	4.0%
	뮤지컬배우	4	100.0%	0.0%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9	100.0%	0.0%	0.0%
	연극배우 겸 뮤지컬배우	9	100.0%	0.0%	0.0%
공연예술 경력	10년 이하	18	83.3%	11.1%	5.6%
	11-20년	22	77.3%	13.6%	9.1%
	21년 이상	14	92.9%	7.1%	0.0%

3. 공연예술분야 심층면담 결과

1) 심층면담 방법

- 공연예술분야 심층면담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세부직군들 중 연극 실연자 및 스태프들의 현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고용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도입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진행
 - 그밖에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 측정을 위한 분야 활동 종사자 수 파악, 사업주 특징을 위한 계약 관련 실태 등이 논의되었음.
- 공연예술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공연예술분야 종사자와 2)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

- 다각적 차원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동안 조사된 분석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시사점 및 대안을 모색하였음.

2) 인터뷰 대상자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4인

- ○○○, 남, 43세, 극단 대표 겸 무대 기술 스태프
- ○○○, 남, 41세, 극단 소속 중견배우
- ○○○, 여, 45세, 사회적 기업 극단소속 배우 겸 행정직원
- ○○○, 남, 44세, 극단 소속 중견배우

■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9인

- ○○○, 여, 41세, 독립기획자
- ○○○, 남, 52세, 유관협회
- ○○○, 남, 43세, 연극평론가
- ○○○, 남, 43세, 유관재단
- ○○○, 남, 49세, 유관연구소
- ○○○, 남, 45세, 공연단대표
- ○○○, 남, 44세, 극단배우
- ○○○, 남, 48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 남, 46세, 프로듀서협회 관계자

3) 고용계약의 현황

- 종건 배우들은 보통 극단 공연 같은 경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 극단이나 방송이나 영화를 더 많이 하려고 하며, 신진 배우는 대부분 극단 공연만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 여러 작품의 동시 진행은 현실적으로 연극과 영화의 병행은 오히려 가능하나, 수입이 좋은 인기배우들이 여러 공연을 동시에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그들의 전속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됨.
- 무대기술 스태프와 같은 경우는 공연 업무 이외의 행사 및 이벤트 등의 외부 일을 하는 비중은 50% 정도이며, 보통 무대 업무는 분야에서 인정받은 상위 10%가 대부분 계약을 하게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주로 이벤트나 지방행사로 임금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임.
- 연극 분야는 영화 분야와 달리 아직도 계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약을 할 만큼의 공연료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
- 일반적으로 뮤지컬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은 보통 제작사와 이루어 짐. 계약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연출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계약이 많고, 배우는 보통 기간과 출연횟수가 결합된 형태로 계약서에 작성된 보수가 지급됨.
- 현재 한 면담자가 참여하고 있는 10개월짜리 공연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기간, 횟수, 지급방식이 명시되어 있으며, 연습기간과 공연기간도 각각 명시되어 있음.
 - 이것은 대학로 공연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데, 이 공연이 상업주의 성향이 강한 공연이므로 가능함.
- 공연예술계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서울 공연과 지방의 공연으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울 공연과 같은 경우에는 공연 횟수나 연습기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공연은 계약 시에는 횟수 산출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임.
- 지방공연과 같은 경우 공연장 상황에 따라 공연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횟수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이유로 추후에 결정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도 있음.

- 하지만 최근 스태프 분야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으며, 스태프의 경우 예전에 비해 임금 조건도 매우 좋아짐.
 - 감독이 아닌 무대 크루와 같은 경우에도 재단이나 국공립 단체에서 진행하는 공연에서는 무조건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이러한 영향으로 대학로 연극계도 바뀌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제작사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며 추후 세금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계약이 수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결과
 -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감독만 계약하고 크루는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국공립 및 민간분야를 통틀어 지금은 약 50%이상의 비율이 개별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음.
 - 간혹 보수를 회사단위로 받으면 세금정산이 문제가 되기도 함.
 - 하청계약이 이루어질 때도 결과보고 시에는 모든 작업자의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므로 스태프들의 개별계약도 해야만 하는 상황임.
- 일반적으로 극단 운영은 매우 어려워 극장 대관료를 지급도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극단에서 받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됨.
- 고용보험 수급조건과 관련하여 지난 2년 동안 12개월 공연을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소득으로는 공연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
 - 특히 극단 공연에만 종사하는 배우들은 수급요건을 채우기가 더욱 어려울 것인데, 그 이유는 공연계에는 비수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연일수로 계산하자면 1-2년간 공연일수가 6개월이 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
- 극단 소속 배우들의 생활은 극단의 공연이 없을 때 다른 부업으로 살아가며, 공연을 통한 정기적인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됨.
 - 보수의 수준은 1년에 1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최대 삼천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임.

- 수급 요건을 채우기 힘든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2년 중 1년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수급 요건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임.
- 무대 스태프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당 8만원이 평균적인 수준이며, 예전보다 조건이 매우 좋아져 최소 8만원에서 최대 11만원 정도의 일당이 지급됨.

4)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 심층 면담에 참여한 연극분야 종사자들은 경력이 높은 중견배우 이상으로 구성되어 지난 1년간 공연일수를 계산하였을 때, 신진배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예상하지만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극 동의하였음.
 - 그 이유는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신진배우들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배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지를 받았으면 하기 때문
 - 고용보험 제도가 당장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해 일단 복지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개선으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
 - 중견 배우 이상인 면담자들의 경우에도 당장 실업의 가능성이 낮을 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나 존재하여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충분히 가입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 일부 연기자들의 반발의 가능성은 높을 것이지만 경력인정의 차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됨.
 - 현재 공연계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핵심적 이유는 배우들이 공연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임.
 - 직업을 증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연 경력을 서류상 증명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음.

- 보수를 지급받지 않아도 경력 일수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극단에서 계속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및 기간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예술인 복지재단의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예술인만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실행된다면 당연가입으로 도입되어 극단이나 배우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면 하는 의견
 - 재정이 어려운 배우들도 월 1-2만원 수준의 보험료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라면 부담되지 않을 금액으로 느낄 것임.
- 가입 방식은 당연의무가입이라면 협회차원에서 단체 가입을 진행하는 방법이 예술인들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극단이 영세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협회를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협회에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며 일정 자격조건이 있는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협회를 가입하지 않은 배우들의 수가 훨씬 많고 소속증명도 힘들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사회적 기업의 직원이자 소속배우인 면담자는 극단주의 입장에서 0.65%정도의 보험료를 단원을 위해 부담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였음.
 - 또한 극단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객원 단원을 위한 보험가입 의사가 충분히 있으나, 문제는 매월 고정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 임의 가입에 동의하는 또 다른 면담자는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당연 가입의 문제점으로는 만약 의무가 되면 창작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기 때문
 - 현재까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제작하려는 극단들이 많았는데, 고용보험의 의무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제작자들이 고용보험 납입의 부담감 때문에 창작활동에 대한 제약을 느낄 수 있을 것임.

- 대학로 공연 기획자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매우 클 것임.
- 임의가입에 찬성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연극계 전반으로 볼 때 강제가입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

4. 소결

- 본 연구에서는 창작/실연자 분야의 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수와 제작스태프와 같은 실연 및 기술 분야 종사자들을 고용보험 가입 가능집단으로 간주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함.
- 예비조사는 일반적 사항, 업무종사실태, 계약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함.
 - 공연예술계는 뮤지컬 및 콘서트 시장 성장으로 최근 산업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며, 2014년 기준 공연시설 수는 총 1,034개, 종사자 수는 12,669명, 매출액 규모는 3,689억 원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실연을 하는 공연단체²⁷⁾의 수는 총 2,284개, 종사자 수는 55,858명, 매출액은 3,904억 원의 규모로 파악되었음.
 - 공연예술 실연자는 연극 및 뮤지컬 분야에서 활동하는 배우, 국악가 및 성악가 등의 가수, 연주자, 무용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달 5천 명 정도가 공연예술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공연예술분야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웹서베이와 심층면담, FGI를 병행함.
 - 실태조사에 참여한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중 남성은 54.8%, 여성은 45.2%임. 연령은 30대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8.2%, 50대 이상이 15.9%, 20대가 13.7%였음.
 - 실연자의 직종은 연극배우 64.4%, 뮤지컬배우 12.1%, 연극배우와 뮤지컬 배우를 겸하는 예

27) 공연단체 조사모집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단체(2010~2014년)와 한국뮤지컬협회 소속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술인이 23.5%였음. 예술 경력은 10년 이하가 14.2%, 11-20년이 33.5%, 22년 이상이 32.1%였음.

■ 공연예술분야의 고용 계약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공연예술의 한 기간과 수입, 계약형태, 보수지급주기, 계약기간, 해고 경험 등을 조사했음.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지난 24개월 중 공연예술 분야에서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1년미만이 20.2%, 1년-1년 반 미만이 17.7%, 1년 반-2년 이하가 29.6%로 나타났음.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공연예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56.1%로 가장 높았음. 101-200만원이 18.5%, 201-300만원이 7.4%, 301만원 이상이 18%로 나타남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현재(혹은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의 형태는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면계약이 40.1%로 나타남.
- 보수지급 주기는 ‘공연 종료 후’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지급, 월급 순으로 보수를 지급 받았음. 또한 ‘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8.4%였음.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가 ‘한 공연작품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연 작품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26.8%,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가 73.2%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계약기간 내의 해고 또는 계약 해지의 경험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남. 73.9%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해고 또는 계약 해지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1%였음.

■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가 대체로 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더 많았으며 임의가입을 선호했음.

-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은 ‘이름을 들어 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가 47.3%였으며,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30.4%로 나타남.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83.7%, 반대가 16.3%

- 고용보험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69.1%가 ‘공연예술 실연자·스태프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을 선호했으며, 29.6%는 ‘공연예술에 실연자·스태프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을 선호함.
- 심층면담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세부직군들 중 연극 실연자 및 스태프들의 현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진행됐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고용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도입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함.
 - 공연예술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공연예술분야 종사자와 2)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함.
 - 심층 면담에 참여한 연극분야 종사자들은 경력이 높은 중견배우 이상으로 구성되어 지난 1년간 공연일수를 계산하였을 때, 신진배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예상하지만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극 동의하였음.

제2절 방송산업분야 조사 결과

1. 방송산업분야 종사자 예비조사

(1) 개요

- 방송산업 종사자는 방송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현재 한류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으로서 국가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짐.
- 2014기준 방송산업 전체 사업자 수는 414개이며, 방송영상시장 종사자는 34,615명으로 조사됨.

〈표 4-35〉 2014년 기준 방송산업 사업자 수

구분		사업자 수
지상파방송	TV	32
	라디오	21
	DMB	19
	(소계)	72
유선방송	종합유선	92
	중계유선	65
	(소계)	157
위성방송	위성방송	1
방송채널사용사업		181
IPTV		3
계		414

* 자료원: 미래창조과학부 2015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 방송영상시장 종사자는 크게 직종별로 관리직(임원, 경영직, 기자, PD), 제작 관련직(카메라, 음향, 조명, 미술, 편집), 기술직(건축, 전기, 설비통신), 기타(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로 분류 가능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중심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4-36〉 방송 제작 참여 직종 구분

인력 중심	기술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자(탤런트)(주연, 조연, 단역 등) ▪ 가수 ▪ 개그맨 · 코미디언 ▪ 광고모델, 모델 ▪ 방송작가, 보조작가, 구성작가 ▪ 방송기자, 편집기자 ▪ 아나운서, MC, 앵커, 기상캐스터, 성우, 쇼호스트, 리포터 ▪ 방송프로듀서(PD), FD, AD보조 ▪ 연예 매니저, 에이전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 촬영(ENG, 스튜디오) ▪ 녹음(동시녹음/후시녹음) ▪ 음악, 음향 효과 ▪ 송출 ▪ 영상 편집 ▪ 장비(멀티큐브와 멀티버전, 크레인, 지미집, 가중기, 발전기, 특수차량, 철구조물, 리프트 등) ▪ 미술(세트, 전식, 소품, 의상, 분장미용) ▪ 코디네이터 ▪ 디스플레이어 등

* 자료원: 방송·연예 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2006)

- 방송제작 참여 직종 중에서 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FD, AD, 기술인력을 우선 제외하고,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사용자 종속성과 전속성이 높은 방송작가, 성우, 외주 기술 인력에 집중
 - 성우 외 연기자의 경우 1년에 절반 이상 일하는 연기자의 비율이 낮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 드라마 출연 연기자의 경우 방송사, 전문회사, 제작사, 기획사로 계약주체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방송국이 제작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제작사가 나머지 절반을 PPL 등으로 자체 조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특정화 불가
 - 드라마 방송작가의 경우 작업의 자율성이 크고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사용자 종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케이블 방송 및 종편의 출현으로 전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종사인력도 증가하였음.
- 방송 분야는 제작사, 기획사, 전문회사, 프리랜서 등 여러 주체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방송국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고용보험 도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 수행 예상
- 크게 드라마 부문과 비드라마 부문으로 구분되며, 드라마 부문은 생태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사용자 특정이 매우 어려움.
 - 드라마 제작 시 방송국은 저작권 수입 관리를 위한 유한회사인 문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제작을 맡김.
 - 제작사는 제작비의 절반 정도를 광고 수입이나 편성권 기반 용자 대출로 자체 조달
 - 연기자, 스태프는 주로 제작사와 계약을 맺지만, 전문회사나 방송국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도 존재
 - 일반적으로 드라마 부문의 방송작가는 메인작가와 2명 내외의 보조작가로 구성되는데, 메인작가는 회차당 원고료의 조건으로 높은 수익 올리고, 보조작가는 제작사에서 월급 형태로 지급
- 드라마에 출연하는 방송 실연자는 스타급은 별도의 계약으로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그 외 실연자는 방송국에서 정한 등급제를 기준으로 회차당 출연료를 받는데, 출연 활동기간이 대부분 고용보험 수급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함.
 - 출연 활동기간이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송 실연자는 경제적으로 고용보험 필요성 느끼지 못함.
- 방송 실연자 중에서는 성우와 무술 연기자가 비교적 고정되고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비드라마 부문의 구성작가는 프리랜서 형태이나 사용자 종속성이 강한 것으로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도 확인되었음.

- 따라서 방송분야 종사자 특성을 우선 파악하여 구성작가, 성우, 무술연기자 실태 분석과 고용보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

(2) 기본특성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방송분야 예술인은 전체 예술인의 4.2%에 해당

<표 4-37> 방송 분야 직업별 종사자

구분	빈도	퍼센트
작가	72	33.8
배우	71	33.3
성우	34	16
기술스태프	8	3.8
기타	6	2.8
연주가	5	2.3
감독 및 연출가	5	2.3
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	4	1.9
모델	2	0.9
건축가	1	0.5
국악연주가	1	0.5
가수	1	0.5
작곡가 및 편곡가	1	0.5
평론가	1	0.5
무용가	1	0.5
합계	213	100

- 방송분야 예술인의 직업은 작가(33.8%), 배우(33.3%), 성우(16.0%), 기술스태프(3.8%) 순으로 나타남.

〈표 4-38〉 방송분야 주요직업별 계약형태

구분		계약형태		계약없음	전체
		구두계약	서면계약		
방송 분야 주요 직업	작가	9	20	43	72
		12.5%	27.8%	59.7%	100.0%
	배우	5	27	39	71
		7.0%	38.0%	54.9%	100.0%
	성우	3	10	21	34
		8.8%	29.4%	61.8%	100.0%
	기술스태프	1	1	6	8
		12.5%	12.5%	75.0%	100.0%
방송 분야 전체		21	66	126	213
		9.9%	31.0%	59.2%	100.0%

- 계약형태는 계약없음이 59.2%, 서면계약이 31.0%, 구두계약이 9.9%로 나타남.
 - 관행에 따른 작업 진행의 결과 계약없이 사업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는 압도적 다수인 92.5%가 프리랜서였음.
 - 기술스태프의 경우 정규직과 프리랜서가 각 3명씩이었고, 나머지는 기간제/계약직과 파트타임이 각 1명씩이었음.
-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은 출연료가 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원고료 19.7%, 없음 16.4%, 급여 6.6%의 순서였음.
 - 배우, 성우는 압도적으로 출연료가 주 수입원인 반면, 작가는 원고료가 56.9%, 다음으로 없음 20.8%, 작품판매료와 급여 각 6.9%, 저작권 수입 4.2% 등이었음.
-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연 3,061만원으로 나타났고, 부업을 통한 수입은 평균 연 822만원으로 나타남.

■ 방송분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10.8%였음.

(3) 예비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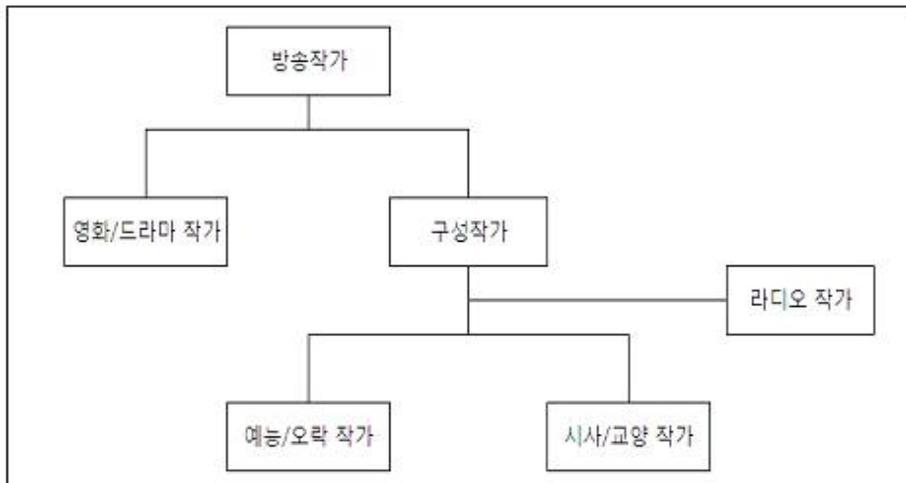
1) 창작/실연자

가. 구성작가

■ 일반사항

- 방송작가란 드라마, 영화, 연극, 코미디, 라디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 시나리오, 대본 등을 작성하는 사람을 말함.²⁸⁾
- 방송작가는 크게 드라마부문 작가와 비드라마부문 작가로 나뉘고 비드라마부문에서는 예능부
문 작가, 시사/교양부문 작가, 보도부문 작가로 나뉘는데, 비드라마부문에 종사하는 작가를 총
칭하여 구성작가라 부르기도 함.

[그림 1] 방송작가의 구분



* 자료원: 미래창조과학부 2015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28) 통계청 고시 제2007-3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기호 28111 '방송작가'에 대한 정의

- 출·퇴근의무가 없고 재택근무로 업무수행이 자유로운 드라마 작가와 달리, 구성작가는 방송 PD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출·퇴근의무등 사용자 종속성이 상당히 존재함.
-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은 64개사, 290지국을 두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사 각 프로그램에는 1명~3명의 구성작가를 두고 있음.
- 주요 지상파 프로그램의 현재 프로그램 수는 KBS 240개, MBS 94개, SBS 76개로 각 프로그램당 최소 3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작가로 이루어 짐.

〈표 4-39〉 지상파 방송사별 방송국 현황(2015년 3월 기준)

구분	TV 디지털	라디오				합계	
		AM	FM	단파	소계		
합계(45개사)	64	53	171	2	226	290	
한국방송공사(본사+18개지역국)	32	25	49	2	76	108	
한국교육방송공사	1	0	1	0	1	2	
(주)문화방송	1	1	2	0	3	4	
지역MBC (17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인동, 포항, 광주, 목포, 여수, 대전, 청주, 충주, 전주, 제주, 춘천, 원주, 강원영동)	19	19	38	0	57	76	
(주)SBS	1	1	2	0	3	4	
지역민방(9)	(주)KNN	1	0	1	0	1	2
	(주)대구방송	1	0	1	0	1	2
	(주)광주방송	1	0	1	0	1	2
	(주)대전방송	1	0	1	0	1	2
	(주)전주방송	1	0	1	0	1	2
	(주)청주방송	1	0	1	0	1	2
	(주)제주방송	1	0	1	0	1	2
	(주)울산방송	1	0	1	0	1	2
	(주)지원(G1)	1	0	1	0	1	2
OBS경인TV(주)	1	0	0	0	0	1	
지역방송(2)	(주)경기방송	0	0	1	0	1	1
	(주)경인방송	0	0	1	0	1	1
종교방송(5)	(재)기독교방송	0	5	16	0	21	21
	(재)불교방송	0	0	7	0	7	7

	(재)평화방송	0	0	5	0	5	5	
	(재)원음방송	0	0	5	0	5	5	
	(재)극동방송	0	2	10	0	12	12	
교통방송(2)	도로교통공단	0	0	10	0	10	10	
	서울특별시	tbs	0	0	1	0	1	1
		tbs-eFM	0	0	1	0	1	1
보도전문(1)	(주)와이티엔라디오	0	0	1	0	1	1	
국악전문(1)	(재)국악방송	0	0	2	0	2	2	
영어방송(3)	(재)국제방송교류재단	0	0	1	0	1	1	
	광주영어방송재단	0	0	1	0	1	1	
	부산영어방송재단	0	0	1	0	1	1	
공동체라디오(7)	(사)관악공동체라디오	0	0	1	0	1	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0	0	1	0	1	1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0	0	1	0	1	1	
	(사)성서공동체에프엠	0	0	1	0	1	1	
	(사)영주에프엠방송	0	0	1	0	1	1	
	(사)광주시민방송	0	0	1	0	1	1	
	(사)금강에프엠방송	0	0	1	0	1	1	

○ 방송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추정 한 전체 구성작가 인원으로는 라디오 5천여 명 추정, TV 는 1만 명~1만 5천 명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협회 가입기준²⁹⁾이 높은 편이라 회원 수는 많 지 않은 편.

〈표 4-40〉 방송작가 직능단체 현황

구분	회원 수	활동내역
한국방송작가협회	▪ 회원 : 2,757명(2013년 5월 말)	▪ 각 방송사와 원고료 협상 ▪ 월간 「방송작가」 발간
KBS구성작가협의회	▪ 회원 : 174명(2009년) ※ KBS 구성작가 수 : 자체제작부문 150여 명, 외주제작부문 200여 명	▪ 원고료 협상 ▪ PD집필제 반대 제작거부
MBC구성작가협의회	▪ 회원 : 102명(추정)	▪ 원고료 협상 ▪ 광주MBC 해고 구성작가 전원복직
SBS구성작가협의회	▪ 회원 : 118명(200년)	▪ 원고료 협상

* 자료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2016)

29) 방송작가협회 비드라마 부문 가입기준 ① 라디오 : 입회신청일 현재 라디오 분야에서 4년 6개월 이상 집필활동 한 방송 작가 ② 구성·다큐 : 입회신청일 현재 구성·다큐 분야에서 메인작가 1년을 포함한 4년 이상 집필 활동한 방송작가(메인 이라 함은 한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구성, 조율하고 대본을 집필한 작가를 말한다) ③ 예능 : 입회신청일 현재 예능 분야 에서 5년 이상 집필 활동 한 방송작가. 단, 시트콤은 대본을 집필한 기간을 두 배로 인정한다.

- 작가가 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주로 MBC 및 KBS의 방송아카데미, 작가협회의 작가 아카데미 등의 수료를 마친 후, 강사들의 소개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임.

■ 업무 종사실태

- 구성작가는 경력에 따라 메인작가³⁰⁾(종합구성), 서브작가, 막내작가³¹⁾(자료조사원)으로 분류됨.
- 구성작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당 메인 1명, 서브 1-2명으로 구성되나,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 코너별로 메인과 서브가 각각 존재하는 팀도 있어서, 프로그램 당 10명 내외임.
 - 다큐의 경우에는 서브작가는 없고 모두 다 메인 작가로 간주하며, 막내 작가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유조사원, 리서처, 작가 지망생, 작가 훈련생 등의 개념으로 간주함.
 - ▶ 다큐 작가의 경우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PD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일반적으로 3년 미만 작가는 막내로 취급하며, 라디오에는 막내작가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TV도 최대 1-2명 정도의 막내작가만 고용하므로 이직 가능성이 높은 작가의 비율은 낮은 편이라 볼 수 있음.
- 서브작가 이상의 경우 프로그램 축소 개편이나 본인 희망 등으로 이직이 빈번히 발생하나 구직기간이 길지 않음.
 -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편이고, TV 프로그램은 조기 종영 가능성 높지만, 시장의 규모가 커서 일자리를 구하기에 어렵지 않은 편임.

■ 계약실태

30) 메인작가는 비드라마부문의 모든 방송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기획과 프로그램 구성의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과 구성안, 세부 대본을 작성하는 일 등의 업무를 담당

31) 막내작가는 자료조사와 자료 정리 및 수집, 진행자 선정과 섭외, 촬영장소 선정 및 섭외, 복사 및 간담부름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 강도가 높아서 60%가 입사 1년 안에 그만둔다고 함

- 방송작가는 주로 지상파방송사 및 외주제작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무를 시작하며, 계약의 형태는 구두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음.
- TV 교양 부문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는 회차당 원고료가 명시되나, 계약기간은 명시 안 됨.
 - 일부 메인 작가 중에는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함.
-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경우가 아닌 일반 프로그램은 보통 12회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조기 종영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이직은 보통 1-2주 정도로 어렵지 않음.
- 임금 지급은 제작비 일부가 원고비로 지출되는 형태가 일반적임.
 - MBC와 SBS는 일반적으로 일 25매당 원고료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BS는 항상 주급으로 지급함.
 - 막내작가³²⁾의 경우에는 월급 또는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음.
 - 다큐의 경우에는 장기기획 다큐가 많아지면서 1년-2년 동안 기획을 한 후, 방영이 끝나고 한 번에 수령하거나 중간에 수령하는 경우도 있음.
 - ▶ 이러한 경우 동시에 여러 작품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주로 메인작가의 경우에만 가능함.
- 임금은 월 기준으로 메인작가는 500만원 이상, 서브작가는 200-500만원, 막내작가는 100-200만원으로 인터뷰 결과 파악됨.
- 임금은 모두 작가의 개별 통장으로 입금되며, 원천징수 3.3% 납부되고 기타 수당은 전혀 없음.
 - 일부 예능의 TV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50-70%정도 작가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며, 소수 스타급 메인작가의 경우 회당 원고료 수 백 만원 수준
 - 방송작가 협회원의 경우 “네트사용료” 등의 명칭으로 지역방송국 재전송에 따른 저작권 수입

이 존재

- 프로그램 작업 부담으로 복수의 프로그램 동시 참여는 실제로 어려워서 대부분 작가는 한 개의 프로그램만 작업
- 복수 프로그램을 작업하는 경우로는 스타급 메인 작가가 다수의 프로그램 작가 팀을 구성하면서 관리형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서브급 이상의 작가가 다른 방송국의 단기 프로그램을 부업으로 맡아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존재함.
- 메인인 팀을 구성할 때 작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막내작가는 출퇴근을 하며 근무하므로 월급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 방송작가의 채용 결정권은 주로 메인작가가 담당하며, 담당 PD나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관리자가 담당하기도 함.
- 경력이 없는 막내작가라 해도 PD가 팀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프로그램 조기종영 및 개편에 따른 실적이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른 이직이 대부분임.
 - 이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경력을 쌓고 몸값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어서 이직이 많이 발생

나. 성우

■ 일반사항

- 성우는 대부분 방송국 공채를 통해서 채용됨.
 - KBS의 경우 연간 12명의 공채 성우를 선발하며 2년의 전속기간을 가짐. SBS는 공채가 없고, MBC는 2004년 이후 공채가 폐지되었음. 그 밖에 EBS는 1년에 4명, 투니버스는 3년 마다 8명, 대원은 2년에 10명 정도로 공채 선발
- 1~2년의 공채 전속기간 끝난 후에는 주로 성우협회로 귀속되어 프리랜서로 활동함.
- 공채 출신 현직 중사 성우는 2015년 12월 기준 총 809명이지만, 실제 활발히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성우는 250명 수준임.

- 출신기준으로 KBS 426명, MBC 121명, EBS 74명, 대교 19명, 대원 48명, 투니버스 73명, CBS 17명, PBS 7명, MBC CNI 13명, 무소속 11명
- 연기, MC, 아나운서, 광고, 게임, 출판 등 종사분야 다양화되었으나, 방송 비중이 80% 이상으로 전업성우가 대부분이며 부업은 드문 상황임.
- 공채 출신 성우 이외 성무 지망생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언더성우로 방송국 외 성우 수요의 현업 종사
 - 공채 지망생 기준으로 여자 2천 명, 남자 1천 명 정도 추정되며, 매년 방송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2만 명 정도 성우 교육 이수자 배출

■ 업무 종사 실태

- 장기 더빙작품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3편 정도 녹음하며, 만화나 외화는 장기적인 작품이므로 근무일수가 많은 편임.
 - 만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13편, 26편, 52편으로 나뉘며 주로 주 1회 방송하므로 최장 1년 한 작품에 근속
- 주 1회 작품의 급여는 보통 1편당 13만 5천원, 케이블은 10~11만원 정도
- 수입 수준은 연 1억 원 이상이 50여 명, 7천~1억 원이 100여 명 정도로 추정

■ 계약실태

-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탤런트처럼 방송국의 등급제 기반으로 수당 지급
- 성우협회가 노조 지부의 역할을 맡아서 매년 방송국과 출연료 협상하였음.
 - 라디오는 4년에 한번 성우협회나 성우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임금협상을 진행함.
- KBS는 현재 450명의 성우를 고용 중이며, 프리랜서 성우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97% 이상이 KBS 출신의 성우임.
- 대원방송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전속체제 존재하며 활동 성우의 90% 이상이 대원 소속이고,

투니버스로 CJ의 공채가 있으며 대략 90%이상의 성우가 공채 출신

- 동시에 여러 방송사 근무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전속성이 높음.

다. 무술 연기자

■ 일반사항

- 무술연기자들의 유니온 개념의 노조가 존재하며 약 300명 정도의 규모임.
- 현재 활동하는 연기자들의 구체적 종사 분야는 영화와 방송 비율이 50대 50임.
- 활발하게 활동하는 팀은 10개 정도이며, 나이에 민감한 직군이니 만큼 재취업 문제가 매우 심각함.

■ 업무 종사 실태

- 영화 분야는 주로 팀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며, 드라마 분야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방식
-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며, 특수 기술 보유자는 여러 작품을 동시에 촬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아 불가능 함.
-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기는 약 70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들은 1년에 절반 정도는 현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촬영일이 아니더라도 대기하는 기간이 존재하는 문제가 큼.
- 현재 활동하는 연기자들의 연봉 수준은 10% 정도가 5천~7천만원 수준, 30% 정도가 3천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2천 이하라고 볼 수 있음. 3% 이내의 무술 감독의 경우 역대 연봉을 받음.

■ 계약실태

- 일반적으로 회차로 계약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회차당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그 외 매일 출

근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

- 임금은 연기자에 준하는 등급(6~18등급)으로 기본급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10등급부터 시작함.
- 전속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무일이 매우 불특정 하므로 근무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음.

2) 방송영상 제작스태프

■ 일반사항

-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구성은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능프로그램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비율이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
 - 프리랜서 스태프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 방송 촬영 종사자의 경우 프리랜서 수가 1,000명은 넘는 것으로 예비조사 결과 밝혀짐.
- 드라마의 경우는 외주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핵심 인력인 연출, 촬영 등은 방송사의 정규직이 담당, 시사프로그램은 자체 제작이 많고 외주 스태프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있음.
 - 제작스태프 중 정규직은 방송사업자나 제작사의 정규직원이며 지상파 방송사의 소위 언론고시를 통과한 인력들이며, 비정규직은 계약직, 파견, 용역, 임시직 그리고 바우처(프로그램 단위)로 고용되고 제작비에서 임금을 지급) 등으로 매우 다양한 인력들이 포함
 -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모호한 제작스태프는 프리랜서로 불리는데, 특수고용의 형태라고도 하지만 사전상의 의미로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노동법적 개념으로는 ‘계약근로(contract labor)³³⁾’에 따라 업무를 수행
- 외주제작에 의한 하도급 형태가 빈번히 발생하며 EBS의 경우 3단계의 하청이 발생함.

■ 업무 종사 실태

33) 계약근로는 개념은 특수형태근로와 사내하도급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매개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황준욱 외, 2009)

- 비드라마 부문에서는 방송국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사자와 외주 프로그램 종사자가 구분되며, 외주 프로그램 종사자의 경우 사용자 특성의 문제가 발생하나, 비드라마 프로그램은 제작비 전액을 방송국으로부터 받아서 주어진 내용을 제작하는 형태로서, 방송국을 최종 사용자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관리직(임원, 경영직, 기자, PD)은 주로 방송국 소속의 정규직이지만, 제작 관련 직(카메라, 음향, 조명, 미술, 편집)의 근로계약형태는 정규직, 자회사 소속, 프리랜서 등 매우 다양하므로 추가적 심층 조사가 필요.
- 일반적으로는 방송국 정규직에서 자회사 소속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
 - SBS와 MBC는 조명, 미술, 음향, 기술 분야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계약관계를 구성하고 있음.
 - 반면, KBS의 카메라 분야 인력은 내부 정규직이 약 30%정도이고, 나머지 70%는 외부 인력으로 프리랜서 또는 프로덕션 소속 인력으로 구성되며, 미술 분야는 자회사가 존재, 음향과 조명은 비정규나 프리랜서 등의 외부 인력
 - 성우, 작가 리포터 및 제작지원은 전적으로 프리랜서에 의존하며, 기술직은 조정실, 송출, 중계 인력 외에 방송사별로 건축, 전기, 설비, 통신 등의 인력이 포함됨.
- 경력이 높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작품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 경우 보통 한 달에 2주 이상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촬영의 경우 카메라 소지 여부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나며 감독이 되기까지 수월한 양상을 보임.

■ 계약실태

- 방송국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이지만, 그 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두 구두계약임.
- 방송국과 프로덕션이 계약할 경우 프로덕션이 인건비 견적서를 제공하면 일정금액을 제공한 후 프로덕션이 인건비를 개별 지불함.
 - 급여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서 이직하는 사례가 많음.

- 보수는 일반적으로 횡수를 기준으로 계약하여 임금지급을 하며, 회사나 팀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감독이 전체 금액을 받아 배분하는 형식임.
 - 신입의 경우 횡수가 아니라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조사 된 종사자 수는 방송국에서 직접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사자 수만을 의미하므로, 외주 제작사 소속 종사자 수는 제외된 수치임.

2. 비드라마 부문 구성작가 실태조사 결과

1) 자료

가. 응답자의 특성

- 방송작가의 경우 응답자의 94.1%가 여성이었으며, 20대가 70.3%로 가장 많았음.
- 참여하고 있는 방송장르의 경우에는 ‘시사교양’ 이 78.5%, ‘예능기타’ 가 21.5%였으며, 일하는 방송하는 지상파가 73.5%, ‘케이블중편기타’ 가 26.5% 였음.
- 방송작가의 역할별로는 메인작가가 17.5%, 꼭지작가가 42.1%, 취재작가가 40.3%
- 방송작가 경력으로는 ‘1년 미만’ 이 14.2%, ‘1-3년’ 이 33.5%, ‘4-7년’ 이 32.1%, ‘8년 이상’ 이 20.3%임.

〈표 4-41〉 방송작가의 응답자 특성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시려수
성별	남자	13	5.9	222
	여자	209	94.1	
연령	20대	156	70.3	222
	30대	56	25.2	
	40대	10	4.5	

방송장르	시사교양	168	78.5	214
	예능기타	46	21.5	
방송사	지상파	158	73.5	215
	케이블중편기타	57	26.5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8	17.6	216
	꼭지작가	91	42.1	
	취재작가	87	40.3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30	14.2	212
	1-3년	71	33.5	
	4-7년	68	32.1	
	8년 이상	43	20.3	

2) 고용 계약의 현황

가. 방송작가의 일한 기간과 수입

- 방송작가의 지난 2년 동안의 방송작가로 일한 기간은 ‘1년 반-2년 이하’ 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1년 반 미만’ 이 16.1%, ‘6개월-1년 미만’ 이 11.2%, ‘6개월 미만’ 이 6.8%였음.
- 방송작가의 부업기간은 ‘6개월 미만’ 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 이 16.3%, ‘1년-1년 반 미만’ , 18.4%, ‘1년 반-2년 이하’ 가 14.3%
- 방송작가의 참여 프로그램의 평균 작업기간은 ‘6개월-1년 미만’ 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미만’ , ‘1년-1년 반 미만’ , ‘1년 반-2년 이하’ 순이었음.

〈표 4-42〉 방송작가의 지난 2년간 활동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방송작가 일한 기간	6개월 미만	14	6.8	205
	6개월 - 1년 미만	23	11.2	
	1년 - 1년 반 미만	33	16.1	
	1년 반 - 2년 이하	135	65.9	

부업 기간	6개월 미만	25	51	49
	6개월 - 1년 미만	8	16.3	
	1년 - 1년 반 미만	9	18.4	
	1년 반 - 2년 이하	7	14.3	
프로그램 평균 작업기간	6개월 미만	47	24.2	194
	6개월 - 1년 미만	94	48.5	
	1년 - 1년 반 미만	31	16	
	1년 반 - 2년 이하	22	11.3	

- 방송작가 특성별 방송작가로서 일한 기간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1년 반-2년 이하’가 각각 72.7%, 65.8%로 가장 많았음. 연령별, 방송장르, 방송사별로도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음.
- 방송작가의 역할별로는 메인작가와 꼭지작가는 방송작가로서 일한 기간이 ‘1년 반-2년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취재작가는 43.8%로 다소 낮았으며, ‘6개월 미만’ 15%, ‘6개월-1년 미만’이 20.0%로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높았음.
- 방송작가 경력별로도 1년 미만의 경력자가 방송작가로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46.2%, ‘6개월-1년 미만’이 50.0%인 반면 년차가 많을수록 ‘1년 반-2년 이하’인 경우가 많았음.

〈표 4-43〉 방송작가 특성별 지난 2년간 방송작가로 일한 기간

	성별	사려수	방송작가 일한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1년 반 미만	1년 반 - 2년 이하
성별	남자	11	0.0%	18.2%	9.1%	72.7%
	여자	193	7.3%	10.9%	16.1%	65.8%
연령	20대	143	8.4%	14.7%	16.1%	60.8%
	30대	52	3.8%	1.9%	15.4%	78.8%
	40대	9	0.0%	11.1%	11.1%	77.8%
방송장르	시사교양	160	6.3%	12.5%	15.6%	65.6%
	예능기타	43	9.3%	7.0%	18.6%	65.1%
방송사	지상파	149	6.0%	8.1%	15.4%	70.5%
	케이블중편기타	56	8.9%	19.6%	17.9%	53.6%

방송작가	메인작가	37	2.7%	5.4%	13.5%	78.4%
역할	꼭지작가	88	1.1%	5.7%	12.5%	80.7%
	취재작가	80	15.0%	20.0%	21.3%	43.8%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	26	46.2%	50.0%	0.0%	3.8%
	1-3년	70	0.0%	8.6%	27.1%	64.3%
	4-7년	66	0.0%	4.5%	10.6%	84.8%
	8년 이상	41	4.9%	2.4%	14.6%	78.0%

○ 방송작가는 특성에 크게 관계없이 대부분 지난 1년간 부업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작가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지난 1년간 부업 경험은 52.0%임.

〈표 4-44〉 방송작가 특성별 지난 1년간 부업 경험

		사례수	지난 1년간 부업 경험	
			있음	없음
성별	남자	12	25.00%	75.00%
	여자	188	29.30%	70.70%
연령	20대	139	29.50%	70.50%
	30대	51	31.40%	68.60%
	40대	10	10.00%	90.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57	26.80%	73.20%
	예능기타	42	38.10%	61.90%
방송사	지상파	148	27.70%	72.30%
	케이블중편기타	53	32.10%	67.9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8	21.10%	78.90%
	꼭지작가	87	27.60%	72.40%
	취재작가	76	34.20%	65.8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5	52.00%	48.00%
	1-3년	67	26.90%	73.10%
	4-7년	66	25.80%	74.20%
	8년 이상	41	24.40%	75.60%

○ 방송작가 특성별로 부업기간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방송작가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의 '1년-1년 반 미만'의 부업을 한 경우가 54.5% 였으며, 경력 1-3년의 방송작가의 '1

년 반-2년 이하'의 부업기간도 27.8%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표 4-45〉 방송작가의 지난 2년간 부업기간

		사례수	부업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1년 반 미만	1년 반 - 2년 이하
성별	남자	3	33.3%	33.3%	33.3%	0.0%
	여자	45	53.3%	15.6%	17.8%	13.3%
연령	20대	33	48.5%	12.1%	21.2%	18.2%
	30대	15	60.0%	26.7%	13.3%	0.0%
	40대	1	0.0%	0.0%	0.0%	100.0%
방송장르	시사교양	38	52.6%	13.2%	15.8%	18.4%
	예능기타	11	45.5%	27.3%	27.3%	0.0%
방송사	지상파	34	58.8%	17.6%	8.8%	14.7%
	케이블 중편 기타	15	33.3%	13.3%	40.0%	13.3%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8	50.0%	25.0%	12.5%	12.5%
	꼭지작가	13	53.8%	30.8%	7.7%	7.7%
	취재작가	28	50.0%	7.1%	25.0%	17.9%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11	36.4%	0.0%	54.5%	9.1%
	1-3년	18	61.1%	5.6%	5.6%	27.8%
	4-7년	13	46.2%	46.2%	7.7%	0.0%
	8년 이상	7	57.1%	14.3%	14.3%	14.3%

- 방송작가의 특성별 프로그램 평균 기간은 성별에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은 40대가 20대, 30대에 비해서 프로그램 평균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시사교양의 경우 '6개월-1년 미만' 52.6%, 예능기타인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이 57.9%로 가장 높음.
- 지상파보다는 케이블중편기타의 작가들이 좀 더 짧은 프로그램 평균 종사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재작가나, 꼭지작가보다는 메인작가의 경우 프로그램의 평균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표 4-46〉 방송작가의 프로그램 평균 참여 기간

		사례수	프로그램 평균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1년 반 미만	1년 반 - 2년 이하
성별	남자	12	33.3%	41.7%	16.7%	8.3%
	여자	181	23.2%	49.2%	16.0%	11.6%
연령	20대	133	27.8%	50.4%	15.8%	6.0%
	30대	51	15.7%	49.0%	13.7%	21.6%
	40대	9	22.2%	11.1%	33.3%	33.3%
방송장르	시사교양	154	16.2%	52.6%	18.8%	12.3%
	예능기타	38	57.9%	31.6%	2.6%	7.9%
방송사	지상파	141	16.3%	50.4%	19.1%	14.2%
	케이블중편기타	53	45.3%	43.4%	7.5%	3.8%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7	10.8%	40.5%	18.9%	29.7%
	꼭지작가	83	24.1%	47.0%	16.9%	12.0%
	취재작가	74	31.1%	54.1%	13.5%	1.4%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2	59.1%	40.9%	0.0%	0.0%
	1-3년	68	20.6%	58.8%	16.2%	4.4%
	4-7년	61	19.7%	49.2%	16.4%	14.8%
	8년 이상	41	17.1%	36.6%	22.0%	24.4%

- 방송작가의 수입은 ‘101-200만원’ 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1만원 이상’ 이 18.3%, ‘100만원 이하가 12.4%, ’ 201-300만원 ‘이 11.8%였음.
- 방송작가의 부업수입은 ‘100만원 이하’ 가 63.5%로 가장 높았으며, ‘101-200만원’ 이 19.2% 임.
- 방송작가의 저작권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83.3%, ’ 301만원 이상 ‘이 11.1%, ’ 201-300만원 ‘ 5.6%

〈표 4-47〉 방송작가의 수입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방송작가 수입	100만원 이하	23	12.4	186
	101-200만원	107	57.5	
	201-300만원	22	11.8	
	301만원 이상	34	18.3	

부업 수입	100만원 이하	33	63.5	52
	101-200만원	10	19.2	
	201-300만원	5	9.6	
	301만원 이상	4	7.7	
저작권 수입	100만원 이하	15	83.3	18
	201-300만원	1	5.6	
	301만원 이상	2	11.1	

- 방송작가 특성별 방송작가의 수입을 살펴보면 성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이 좀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보다는 40대에서 ‘201-300만원’, ‘301 만원’이상의 수입이 높았음(각각 33.3%, 66.7%).
- 방송작가의 역할과 경력역시 메인작가와 8년 이상의 경력의 작가의 경우 방송작가로서의 수입이 ‘301만원 이상’이 55.9%, 56.8%로 높았음.

〈표 4-48〉 방송작가 특성별 방송작가 수입

		사례수	방송작가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11	27.3%	63.6%	0.0%	9.1%
	여자	174	10.9%	57.5%	12.6%	19.0%
연령	20대	131	12.2%	74.0%	6.1%	7.6%
	30대	45	13.3%	22.2%	24.4%	40.0%
	40대	9	0.0%	0.0%	33.3%	66.7%
방송장르	시사교양	147	12.2%	57.8%	11.6%	18.4%
	예능기타	37	13.5%	59.5%	10.8%	16.2%
방송사	지상파	139	9.4%	60.4%	12.2%	18.0%
	케이블중편기타	47	21.3%	48.9%	10.6%	19.1%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4	8.8%	14.7%	20.6%	55.9%
	꼭지작가	81	6.2%	63.0%	18.5%	12.3%
	취재작가	71	21.1%	71.8%	0.0%	7.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1	38.1%	52.4%	0.0%	9.5%
	1-3년	66	15.2%	80.3%	0.0%	4.5%
	4-7년	60	5.0%	66.7%	16.7%	11.7%
	8년 이상	37	5.4%	5.4%	32.4%	56.8%

- 방송작가의 특성별로 저작권 수입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저작권 수입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없었으며, 여성의 경우 '100만원 이하'가 83.3%로 가장 많았음.
- 연령별로는 20대는 저작권 수입이 없었으며, 30대, 40대의 경우 83.3%가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0대의 경우 '301만원 이상'인 경우도 16.7% 였음.

〈표 4-49〉 방송작가 특성별 저작권 수입

		사례수	저작권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0	0.0%	0.0%	0.0%	0.0%
	여자	18	83.3%	0.0%	5.6%	11.1%
연령	20대	0	0.0%	0.0%	0.0%	0.0%
	30대	12	83.3%	0.0%	8.3%	8.3%
	40대	6	83.3%	0.0%	0.0%	16.7%
방송장르	시사교양	15	86.7%	0.0%	0.0%	13.3%
	예능기타	2	100.0%	0.0%	0.0%	0.0%
방송사	지상파	15	86.7%	0.0%	0.0%	13.3%
	케이블중편기타	3	66.7%	0.0%	33.3%	0.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14	85.7%	0.0%	0.0%	14.3%
	꼭지작가	4	75.0%	0.0%	25.0%	0.0%
	취재작가	0	0.0%	0.0%	0.0%	0.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0	0.0%	0.0%	0.0%	0.0%
	1-3년	0	0.0%	0.0%	0.0%	0.0%
	4-7년	1	100.0%	0.0%	0.0%	0.0%
	8년 이상	16	81.3%	0.0%	6.3%	12.5%

- 방송작가 특성별 부업 수입은 연령별로, 20대대는 '100만원 이하'가 74.2%, 30대가 47.4%, 40대가 50.0%로 차이가 있었으며, 30대의 경우,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의 부업 수입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으며, 40대의 경우 '201-300만원'의 부업수입이 50%임.
- 방송장르 별로는 시사교양의 작가가 '100만원 이하'의 부업 수입이 73.2%으로 가장 많았으

며, 예능 기타의 경우는 ‘101-200만원’이 54.4%로 높게 나타남.

- 방송작가의 역할에 따라서는 메인작가가 꼭지작가나 취재작가에 비해서 부업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0〉 방송작가 특성별 부업 수입

		사례수	부업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2	100.0%	0.0%	0.0%	0.0%
	여자	50	62.0%	20.0%	10.0%	8.0%
연령	20대	31	74.2%	22.6%	3.2%	0.0%
	30대	19	47.4%	15.8%	15.8%	21.1%
	40대	2	50.0%	0.0%	50.0%	0.0%
방송장르	시사교양	41	73.2%	9.8%	9.8%	7.3%
	예능기타	11	27.3%	54.5%	9.1%	9.1%
방송사	지상파	36	66.7%	11.1%	13.9%	8.3%
	케이블중편기타	16	56.3%	37.5%	0.0%	6.3%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13	53.8%	7.7%	23.1%	15.4%
	꼭지작가	18	61.1%	22.2%	5.6%	11.1%
	취재작가	21	71.4%	23.8%	4.8%	0.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9	66.7%	33.3%	0.0%	0.0%
	1-3년	16	81.3%	18.8%	0.0%	0.0%
	4-7년	11	63.6%	9.1%	18.2%	9.1%
	8년 이상	16	43.8%	18.8%	18.8%	18.8%

나. 체결한 계약 특성

- 현재 체결한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 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구두계약’ 이 27.7%, ‘서면계약’ 은 12.1%에 불과함.
- 현재 계약의 상대로는 ‘제작 관리자(PD, 감독)’ 이 39.5%, ‘제작사 대표’ 33.3%, ‘방송사 대표’ 22.2% 였음.

- 계약의 형태로는 ‘프로그램당 계약’ 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계약’ 이 38.7%, ‘전속계약’ 5.2%, ‘주/월당 계약’ 이 4%

〈표 4-51〉 방송작가의 계약 실태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현재 체결한 계약 형태	서면계약	25	12.1	206
	구두계약	57	27.7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	124	60.2	
현재 계약의 상대	방송사 대표	18	22.2	81
	제작사 대표	27	33.3	
	제작 관리자(PD, 감독)	32	39.5	
	기타(잘 모른다)	4	4.9	
계약의 형태	고용계약 없음	17	9.8	173
	전속계약	9	5.2	
	프로그램당 계약	73	42.2	
	회당계약	67	38.7	
	주/월당 계약	7	4	

- 방송작가의 현재 체결한 계약의 형태는 특성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방송장르가 시사 교양인 경우보다, 예능기타의 작가인 경우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이 74.4%로 조금 높게 나타났음.
- 또한 방송작가의 역할이 취재작가인 경우 메인작가와 꼭지작가보다 서면계약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방송작가의 경력은 경력이 더 적을수록 서면계약의 비율이 높았음.

〈표 4-52〉 방송작가 특성별 현재 체결한 계약 형태

	성별	사례수	현재 체결한 계약 형태		
			서면계약	구두계약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
성별	남자	12	25.0%	33.3%	41.7%
	여자	193	11.4%	27.5%	61.1%

연령	20대	143	14.0%	23.1%	62.9%
	30대	52	7.7%	38.5%	53.8%
	40대	10	10.0%	40.0%	5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61	14.3%	29.2%	56.5%
	예능기타	43	2.3%	23.3%	74.4%
방송사	지상파	151	11.3%	27.8%	60.9%
	케이블중편기타	55	14.5%	27.3%	58.2%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8	7.9%	42.1%	50.0%
	꼭지작가	88	5.7%	31.8%	62.5%
	취재작가	80	21.3%	16.3%	62.5%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6	19.2%	19.2%	61.5%
	1-3년	70	17.1%	22.9%	60.0%
	4-7년	66	6.1%	28.8%	65.2%
	8년 이상	42	9.5%	38.1%	52.4%

- 방송작가의 특성별 현재 계약의 상대는 작가의 역할에 따라서, 취재작가 계약을 맺은 상대는 ‘방송사 대표’, ‘제작사 대표’, ‘제작관리자(PD, 감독)’이 각각 30.0%, 33.3%, 30.0%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메인작가와 꼭지작가의 경우 각각 52.5%, 40.6%의 비율로 ‘제작관리자(PD, 감독)’가 가장 많았음.

〈표 4-53〉 방송작가 특성별 현재 계약의 상대

		사례수	현재 계약의 상대			
			방송사 대표	제작사 대표	제작 관리자 (PD, 감독)	기타 (잘 모름)
성별	남자	7	14.3%	42.9%	42.9%	0.0%
	여자	74	23.0%	32.4%	39.2%	5.4%
연령	20대	53	28.3%	32.1%	34.0%	5.7%
	30대	23	8.7%	30.4%	56.5%	4.3%
	40대	5	20.0%	60.0%	20.0%	0.0%
방송장르	시사교양	69	21.7%	33.3%	40.6%	4.3%
	예능기타	11	27.3%	36.4%	27.3%	9.1%
방송사	지상파	58	25.9%	27.6%	39.7%	6.9%
	케이블중편기타	23	13.0%	47.8%	39.1%	0.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19	15.8%	31.6%	52.6%	0.0%

	꼭지작가	32	18.8%	34.4%	40.6%	6.3%
	취재작가	30	30.0%	33.3%	30.0%	6.7%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10	10.0%	50.0%	40.0%	0.0%
	1-3년	28	39.3%	25.0%	28.6%	7.1%
	4-7년	23	13.0%	30.4%	47.8%	8.7%
	8년 이상	19	15.8%	36.8%	47.4%	0.0%

○ 계약의 형태는 시사교양작가와 예능기타작가 모두 ‘프로그램당 계약’, ‘회당계약’의 순으로 가장 많은 계약의 형태였으며, 방송사별, 방송작가의 역할별, 경력별로 큰 차이 없이 프로그램당 계약, 회당계약이 가장 많은 계약의 형태임.

〈표 4-54〉 방송작가 특성별 계약의 형태

	성별	연령	방송장르	방송사	방송작가역할	방송작가경력	사례수	계약의 형태				
								고용계약 없음	전속계약	프로그램당 계약	회당계약	주/월당 계약
	남자	20대	시사교양	지상파	메인작가	1년 미만	11	0.0%	27.3%	18.2%	54.5%	0.0%
	여자	30대	예능기타	케이블중편기타	꼭지작가	1-3년	161	10.6%	3.7%	44.1%	37.9%	3.7%
		40대			취재작가	4-7년	126	9.5%	5.6%	39.7%	41.3%	4.0%
						8년 이상	41	9.8%	2.4%	51.2%	31.7%	4.9%
							6	16.7%	16.7%	33.3%	33.3%	0.0%
							131	9.9%	6.1%	42.7%	35.9%	5.3%
							40	10.0%	0.0%	40.0%	50.0%	0.0%
							122	9.8%	4.1%	42.6%	39.3%	4.1%
							51	9.8%	7.8%	41.2%	37.3%	3.9%
							28	7.1%	7.1%	46.4%	35.7%	3.6%
							75	10.7%	2.7%	37.3%	48.0%	1.3%
							70	10.0%	7.1%	45.7%	30.0%	7.1%
							26	15.4%	15.4%	38.5%	19.2%	11.5%
							61	6.6%	1.6%	49.2%	39.3%	3.3%
							53	13.2%	3.8%	28.3%	54.7%	0.0%
							32	6.3%	6.3%	53.1%	28.1%	6.3%

다. 채용 특성과 보수지급 주기, 여러 방송사 동시 참여

- 방송작가의 채용시 의사결정자는 ‘선배, 선임작가’가 52.5%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가 36%,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관리자가 11.5%임.
- 방송작가의 보수지급 주기는 월급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이 35.5%, ‘주급/격주급’이 17.9%
- 업무의 수행방법과 내용의 결정자는 ‘선배, 선임작가’가 54.6%,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 31.3%, ‘작가본인 스스로’가 9.5%,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관리자’가 4.5%임.

〈표 4-55〉 방송작가 채용 및 업무 수행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채용시 의사결정자	선배, 선임작가	105	52.5	200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	72	36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관리자	23	11.5	
보수지급 주기	월급	87	43.3	201
	주급/격주급	36	17.9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	71	35.3	
	시간급 또는 일당	1	0.5	
	잘 모르겠다	4	2	
	기타	2	1	
업무의 수행방법/내용의 결정자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	63	31.3	201
	선배, 선임작가	110	54.7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관리자	9	4.5	
	작가 본인 스스로	19	9.5	

- 채용시 의사결정자는 성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는 ‘선배, 선임작가’의 율이 약 55%인 반면, 40대의 경우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방송장르에 따라서는 시사교양의 작가가 ‘선배, 선임작가’,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가 약 42%의 비율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예능기타의 작가의 경우에는 ‘선배, 선임작가’가 채용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87.8%임.

- 방송사별로도 지상파는 ‘선배, 선임작가’,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의 율이 비슷했지만, 케이블중편기타 방송사의 경우에는 ‘선배, 선임작가’가 75.5%로 높게 나타났음.
- 방송작가의 역할별로는 메인작가의 경우 채용시 의사결정자가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가 55.3%로 가장 높았지만, 꼭지작가는 ‘선배, 선임작가’가 75.5%, 취재작가인 경우에는 ‘선배, 선임작가’가 49.3%,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가 40.0%

(표 4-56) 방송작가 특성별 채용시 의사결정자

	사례수	채용시 의사결정자			
		선배, 선임작가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관리자	
성별	남자	12	50.0%	41.7%	8.3%
	여자	187	52.4%	35.8%	11.8%
연령	20대	138	55.8%	34.1%	10.1%
	30대	51	54.9%	35.3%	9.8%
	40대	10	0.0%	70.0%	3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57	43.3%	42.0%	14.6%
	예능기타	41	87.8%	12.2%	0.0%
방송사	지상파	147	44.2%	42.9%	12.9%
	케이블중편기타	53	75.5%	17.0%	7.5%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8	18.4%	55.3%	26.3%
	꼭지작가	87	70.1%	24.1%	5.7%
	취재작가	75	49.3%	40.0%	10.7%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5	60.0%	24.0%	16.0%
	1-3년	66	47.0%	42.4%	10.6%
	4-7년	66	60.6%	30.3%	9.1%
	8년 이상	41	46.3%	39.0%	14.6%

- 보수지급 주기는 연령별로 20대는 ‘월급’이 가장 많았지만, 30대와, 40대는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이 가장 많았음.
- 방송작가의 역할별로 취재작가는 ‘월급’이 59.2%로 가장 많았지만, 꼭지작가와 메인작가는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이 가장 많음.

〈표 4-57〉 방송작가 특성별 보수지급 주기

		사례수	보수지급 주기					기타
			월급	주급 격주급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	시간급 또는 일당	잘 모르겠다	
성별	남자	12	66.7%	16.7%	16.7%	0.0%	0.0%	0.0%
	여자	188	41.5%	18.1%	36.7%	0.5%	2.1%	1.1%
연령	20대	139	46.8%	19.4%	30.2%	0.0%	2.2%	1.4%
	30대	51	37.3%	15.7%	43.1%	2.0%	2.0%	0.0%
	40대	10	30.0%	10.0%	60.0%	0.0%	0.0%	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57	42.0%	17.2%	37.6%	0.6%	1.9%	0.6%
	예능기타	42	45.2%	21.4%	28.6%	0.0%	2.4%	2.4%
방송사	지상파	148	39.2%	18.2%	39.2%	0.0%	2.0%	1.4%
	케이블중편기타	53	54.7%	17.0%	24.5%	1.9%	1.9%	0.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8	28.9%	10.5%	57.9%	2.6%	0.0%	0.0%
	꼭지작가	87	35.6%	19.5%	43.7%	0.0%	1.1%	0.0%
	취재작가	76	59.2%	19.7%	14.5%	0.0%	3.9%	2.6%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5	64.0%	24.0%	8.0%	0.0%	0.0%	4.0%
	1-3년	67	50.7%	16.4%	29.9%	0.0%	1.5%	1.5%
	4-7년	66	31.8%	22.7%	43.9%	0.0%	1.5%	0.0%
	8년 이상	41	39.0%	9.8%	46.3%	2.4%	2.4%	0.0%

- 업무의 수행방법과 내용의 결정자는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선배, 선임작가’가 가장 높았지만, 40대의 경우에는 ‘작가본인 스스로’가 60.0%로 가장 많았음.
- 방송사별로 지상파 작가와 케이블중편기타 방송사 작가 모두 ‘선배, 선임작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했지만, 지상파의 작가가 케이블중편기타 방송사의 작가에 비해서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 메인작가의 경우 50%가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가 업무의 수행방법과 내용을 결정한다고 응답했으나, 꼭지작가와 취재작가의 경우 각각 69.0%, 61.8%가 ‘선배, 선임작가’라고 응답함.

○ 또한 경력이 많아질수록 ‘작가 본인 스스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표 4-58〉 방송작가 특성별 업무의 수행방법/내용의 결정자

		사례수	업무의 수행방법/내용의 결정자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	선배, 선임작가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관리자	작가 본인 스스로
성별	남자	12	33.3%	58.3%	8.3%	0.0%
	여자	188	31.4%	54.3%	4.3%	10.1%
연령	20대	139	30.9%	61.2%	4.3%	3.6%
	30대	51	31.4%	47.1%	5.9%	15.7%
	40대	10	40.0%	0.0%	0.0%	6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57	35.0%	49.0%	5.1%	10.8%
	예능기타	42	16.7%	76.2%	2.4%	4.8%
방송사	지상파	148	36.5%	48.0%	4.7%	10.8%
	케이블중편기타	53	17.0%	73.6%	3.8%	5.7%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8	50.0%	7.9%	5.3%	36.8%
	꼭지작가	87	21.8%	69.0%	4.6%	4.6%
	취재작가	76	32.9%	61.8%	3.9%	1.3%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5	28.0%	60.0%	8.0%	4.0%
	1-3년	67	35.8%	59.7%	4.5%	0.0%
	4-7년	66	28.8%	62.1%	4.5%	4.5%
	8년 이상	41	29.3%	34.1%	2.4%	34.1%

- 방송작가의 경우 한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송국의 일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다른 방송국일에 참여하는 경우는 8.3%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91.7%
- 여러 방송국의 일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그 상황이 ‘한 방송국의 일이 주업이고 다른 방송국의 일은 부업’ 인 상황이 82.4%, ‘여러방송국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다’ 가 17.6% 였음.

〈표 4-59〉 방송작가 복수 방송국 업무 참여 현황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한 방송국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송국의 일 참여	예	17	8.3	204
	아니오	187	91.7	
여러 방송국의 일에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	한 방송국의 일이 주업이고 다른 방송국의 일은 부업이다	14	82.4	17
	여러 방송국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다	3	17.6	

- 한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송국에서 일하는 경우는 20대에는 거의 없었지만 (2.8%), 30대, 40대의 비율은 더 많았으며, 40대의 경우 30%였음.
- 메인작가가 꼭지작가나 취재작가에 비해서 한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송국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4-60〉 방송작가 특성별 복수방송국 참여 여부

		사례수	한 방송국에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송국의 일 참여 유무	
			예	아니오
성별	남자	12	8.3%	91.7%
	여자	191	8.4%	91.6%
연령	20대	142	2.8%	97.2%
	30대	51	19.6%	80.4%
	40대	10	30.0%	7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59	8.8%	91.2%
	예능기타	43	7.0%	93.0%
방송사	지상파	149	8.7%	91.3%
	케이블중편기타	55	7.3%	92.7%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8	18.4%	81.6%
	꼭지작가	87	10.3%	89.7%
	취재작가	79	1.3%	98.7%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6	0.0%	100.0%
	1-3년	69	4.3%	95.7%
	4-7년	66	6.1%	93.9%
	8년 이상	41	24.4%	75.6%

- 여러 방송국에 일에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방송국의 일이 주업이고 다른 방송국의 일은 부업이다’의 비율이 20대는 100.0%, 30대는 80.0%, 40대는 66.7%
- 방송작가의 경력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인 경우 여러 방송국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가 없었지만, 4-7년, 8년 이상의 경력의 작가가 대부분이 ‘한 방송국의 일이 주업이고 다른 방송국의 일은 부업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1년-2년의 경력의 작가는 ‘여러 방송국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다’가 66.7%임.

〈표 4-61〉 방송작가 특성별 여러 방송국에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

	성별	사례수	여러 방송국의 일에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	
			한 방송국의 일이 주업이고 다른 방송국의 일은 부업이다	여러 방송국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다
성별	남자	1	0.0%	100.0%
	여자	16	87.5%	12.5%
연령	20대	4	100.0%	0.0%
	30대	10	80.0%	20.0%
	40대	3	66.7%	33.3%
방송장르	시사교양	14	78.6%	21.4%
	예능기타	3	100.0%	0.0%
방송사	지상파	13	84.6%	15.4%
	케이블종편기타	4	75.0%	25.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7	85.7%	14.3%
	꼭지작가	9	77.8%	22.2%
	취재작가	1	100.0%	0.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0	0.0%	0.0%
	1-3년	3	33.3%	66.7%
	4-7년	4	100.0%	0.0%
	8년 이상	10	90.0%	10.0%

라. 해고 또는 계약 해지 경험

-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이 해지된 사유의 경우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가 40.7%였

으며, ‘보수 업무여건 불만족’ 이 18.5%, ‘프로그램 기획 취소 및 폐지’ 가 14.8%,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직’ 이 7.4%

〈표 4-62〉 방송작가의 계약기간 내 해고/계약 해지 경험과 사유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경험	있음	54	26.7	202
	없음	148	73.3	
해고 또는 계약 해지 사유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	22	40.7	54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직	4	7.4	
	보수 업무여건 불만족	10	18.5	
	업무과다 피로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	4	7.4	
	결혼 임신 육아 및 간병 등의 사유	1	1.9	
	프로그램 기획 취소 및 폐지	8	14.8	
	제작사 사정	3	5.6	
	기타	2	3.7	

- 작가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 비해서 40대가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가 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메인작가와 꼭지작가도 취재작가에 비해 각각 47.5%, 33.3%로 높게 나타남. 방송작가의 경력도 높아질수록 계약기간 내에 해고, 계약 해지의 경험의 비율이 높았음.

〈표 4-63〉 방송작가 특성별 계약기간 내 해고/해지 경험

		사례수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경험	
			있음	없음
성별	남자	12	33.3%	66.7%
	여자	189	26.5%	73.5%
연령	20대	140	18.6%	81.4%
	30대	51	39.2%	60.8%
	40대	10	80.0%	2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58	24.1%	75.9%
	예능기타	42	35.7%	64.3%
방송사	지상파	149	24.2%	75.8%
	케이블중편기타	53	34.0%	66.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8	47.4%	52.6%
	꼭지작가	87	33.3%	66.7%
	취재작가	77	9.1%	90.9%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5	8.0%	92.0%
	1-3년	68	16.2%	83.8%
	4-7년	66	28.8%	71.2%
	8년 이상	41	51.2%	48.8%

- 계약의 주된 해지와 만료 사유는 20대와 30대는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가 53.8%, 35.0%로 가장 높았지만, 40대는 ‘보수 업무여건 불만족’, ‘프로그램 기획 취소 및 폐지’, ‘제작사 사정’ 이 25%로, 가장 높았음.
- 꼭지작가와 취재작가의 경우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가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가 50%이상이었다는 반면, 메인작가의 경우 ‘보수 업무여건 불만족’이 22.2%,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 ‘업무과다 피로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 ‘프로그램 기획 취소 및 폐지’가 16.7%

〈표 4-64〉 방송작가 특성별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

		사례수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							
			1	2	3	4	5	6	7	8
성별	남자	4	25.0%	25.0%	25.0%	0.0%	0.0%	25.0%	0.0%	0.0%
	여자	50	42.0%	6.0%	18.0%	8.0%	2.0%	14.0%	6.0%	4.0%
연령	20대	26	53.8%	3.8%	11.5%	3.8%	0.0%	19.2%	3.8%	3.8%
	30대	20	35.0%	15.0%	25.0%	10.0%	5.0%	5.0%	0.0%	5.0%
	40대	8	12.5%	0.0%	25.0%	12.5%	0.0%	25.0%	25.0%	0.0%
방송장르	시사교양	38	28.9%	10.5%	18.4%	10.5%	2.6%	15.8%	7.9%	5.3%
	예능기타	15	73.3%	0.0%	20.0%	0.0%	0.0%	6.7%	0.0%	0.0%
방송사	지상파	36	33.3%	8.3%	16.7%	8.3%	2.8%	16.7%	8.3%	5.6%
	케이블중편기타	18	55.6%	5.6%	22.2%	5.6%	0.0%	11.1%	0.0%	0.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18	16.7%	11.1%	22.2%	16.7%	5.6%	16.7%	11.1%	0.0%
	꼭지작가	29	51.7%	3.4%	13.8%	3.4%	0.0%	17.2%	3.4%	6.9%
	취재작가	7	57.1%	14.3%	28.6%	0.0%	0.0%	0.0%	0.0%	0.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	50.0%	0.0%	0.0%	0.0%	0.0%	0.0%	0.0%	50.0%
	1-3년	11	45.5%	0.0%	36.4%	0.0%	0.0%	9.1%	9.1%	0.0%
	4-7년	19	57.9%	10.5%	0.0%	10.5%	0.0%	21.1%	0.0%	0.0%
	8년 이상	21	23.8%	9.5%	28.6%	9.5%	4.8%	14.3%	4.8%	4.8%

- | | |
|------------------------|------------------------|
| 1.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 | 5. 결혼 임신 육아 및 간병 등의 사유 |
| 2.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직 | 6. 프로그램 기획 취소 및 폐지 |
| 3. 보수 업무여건 불만족 | 7. 제작사 사정 |
| 4. 업무과다 피로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 | 8. 기타 |

3)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가.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

- 방송작가의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 인식은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28.1%,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라는 응답이 14.6%임.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92.7, 반대가 7.3%으로 찬성의 의견이 많았음.
- 고용보험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 53.8%, ’ 방송활동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가 38.5%
- 고용보험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임의가입과 당연가입의 선호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당연가입 40.5%에 비해 임의가입이 59.5%로 높았음.
-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월 1만원-2만원’ 이 33.3%, ‘월 2만원-3만원’ 28.7%였음.

- 피보험단위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가 45.1%, ‘반대한다’ 가 9.1%, ‘잘 모르겠다’ 가 45.7%임.

〈표 4-65〉 방송작가의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

		빈도	퍼센트	사례수
고용보험 제도 인식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26	14.6	178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71	39.9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22	12.4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50	28.1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9	5.1	
고용보험 도입 찬성 여부	찬성	165	92.7	178
	반대	13	7.3	
고용보험 반대 이유	보험료 부담 때문에	7	53.8	13
	방송활동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	38.5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1	7.7	
선호 가입방식	방송작가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97	59.5	163
	특정한 직종의 방송작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	66	40.5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	월 1만원 미만	5	3	164
	월 1만원 -2만원 미만	53	32.3	
	월 2만원 -3만원 미만	47	28.7	
	월 3만원 -4만원 미만	27	16.5	
	월 4만원- 5만원 미만	20	12.2	
	월 5만원 이상	12	7.3	
피보험단위기간 줄이고 실업급여 줄이는 방안	동의한다	74	45.1	164
	반대한다	15	9.1	
	잘 모르겠다	75	45.7	

○ 방송작가 특성별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음.

〈표 4-66〉 방송작가 특성별 고용보험 제도 인식

		사례수	고용보험 제도 인식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다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성별	남자	11	36.4%	54.5%	0.0%	9.1%	0.0%
	여자	166	13.3%	38.6%	13.3%	29.5%	5.4%
연령	20대	126	15.1%	42.1%	10.3%	25.4%	7.1%
	30대	43	14.0%	34.9%	18.6%	32.6%	0.0%
	40대	8	12.5%	37.5%	0.0%	50.0%	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41	13.5%	39.7%	13.5%	27.7%	5.7%
	예능기타	35	20.0%	40.0%	8.6%	28.6%	2.9%
방송사	지상파	133	14.3%	39.1%	12.8%	29.3%	4.5%
	케이블중편기타	45	15.6%	42.2%	11.1%	24.4%	6.7%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2	15.6%	31.3%	12.5%	40.6%	0.0%
	꼭지작가	77	15.6%	41.6%	15.6%	23.4%	3.9%
	취재작가	69	13.0%	42.0%	8.7%	27.5%	8.7%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0	0.0%	55.0%	5.0%	30.0%	10.0%
	1-3년	63	12.7%	42.9%	11.1%	23.8%	9.5%
	4-7년	58	17.2%	36.2%	13.8%	31.0%	1.7%
	8년 이상	35	20.0%	31.4%	17.1%	31.4%	0.0%

○ 방송작가 특성별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는 연령은 젊을수록 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메인작가보다는 꼭지작가와 취재작가가, 방송작가의 경력이 많을수록 고용보험 도입에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67〉 방송작가 특성별 고용보험 도입 찬성 여부

		사례수	방송작가 고용보험 도입 찬성 여부	
			찬성	반대
성별	남자	11	81.80%	18.20%
	여자	166	93.40%	6.60%
연령	20대	126	96.00%	4.00%
	30대	43	86.00%	14.00%
	40대	8	75.00%	25.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41	92.90%	7.10%
	예능기타	35	91.40%	8.60%
방송사	지상파	133	94.00%	6.00%
	케이블중편기타	45	88.90%	11.1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2	81.30%	18.80%
	꼭지작가	77	94.80%	5.20%
	취재작가	69	95.70%	4.3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20	95.00%	5.00%
	1-3년	63	96.80%	3.20%
	4-7년	58	94.80%	5.20%
	8년 이상	35	82.90%	17.10%

- 고용보험을 반대하는 경우 사유는 남성의 경우에는 ‘방송활동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100.0%, 여성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가 63.6%였음.
- 연령별로 20대는 ‘방송활동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83.3%, 40대는 ‘방송활동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가 각각 50%
- 메인작가와 꼭지작가의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취재작가는 ‘방송활동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의 이유로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4-68〉 방송작가 특성별 고용보험 반대 이유

		사례수	고용보험 반대 이유		
			보험료 부담 때문에	방송활동의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신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성별	남자	2	0.0%	100.0%	0.0%
	여자	11	63.6%	27.3%	9.1%
연령	20대	5	40.0%	60.0%	0.0%
	30대	6	83.3%	16.7%	0.0%
	40대	2	0.0%	50.0%	5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0	50.0%	40.0%	10.0%
	예능기타	3	66.7%	33.3%	0.0%
방송사	지상파	8	50.0%	37.5%	12.5%
	케이블중편기타	5	60.0%	40.0%	0.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6	50.0%	33.3%	16.7%
	꼭지작가	4	75.0%	25.0%	0.0%
	취재작가	3	33.3%	66.7%	0.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1	0.0%	100.0%	0.0%
	1-3년	2	100.0%	0.0%	0.0%
	4-7년	3	33.3%	66.7%	0.0%
	8년 이상	6	66.7%	16.7%	16.7%

- 고용보험의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는 과반수 이상이 ‘방송작가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을 선호 했지만, 40대는 ‘특정한 직종의 방송작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을 66.7%가 선호함.
- 시사교양의 작가와 예능기타 작가모두 과반수가 ‘임의가입’을 선호했으나, 예능기타 장르의 작가가 임의 가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컸음. 지상파와 케이블중편기타의 방송사의 경우에도 50% 이상이 ‘임의가입’을 선호했으나 케이블중편기타 방송사의 경우가 그 비율이 더 큼

〈표 4-69〉 방송작가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방식 선호

		사례수	가입방식 선호	
			방송작가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특정한 직종의 방송작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
성별	남자	9	55.6%	44.4%
	여자	153	60.1%	39.9%
연령	20대	119	59.7%	40.3%
	30대	37	64.9%	35.1%
	40대	6	33.3%	66.7%
방송장르	시사교양	129	53.5%	46.5%
	예능기타	32	81.3%	18.8%
방송사	지상파	123	54.5%	45.5%
	케이블중편기타	40	75.0%	25.0%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26	57.7%	42.3%
	꼭지작가	73	68.5%	31.5%
	취재작가	64	50.0%	50.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19	52.6%	47.4%
	1-3년	59	50.8%	49.2%
	4-7년	55	70.9%	29.1%
	8년 이상	29	62.1%	37.9%

○ 고용보험료 부담의사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40대는 ‘월 3만원-4만원 미만’을 납부할 의향이 83.4%로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30대는 ‘월 1만원-2만원 미만’이 각각 34.2%, 32.4%로 많았음.

〈표 4-70〉 방송작가 특성별 고용보험 부담 의사

		사례수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					
			월 1만원 미만	월 1만원 - 2만원 미만	월 2만원 - 3만원 미만	월 3만원 - 4만원 미만	월 4만원 - 5만원 미만	월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9	11.1%	11.1%	33.3%	11.1%	22.2%	11.1%
	여자	154	2.6%	33.8%	28.6%	16.9%	11.0%	7.1%
연령	20대	120	2.5%	34.2%	29.2%	14.2%	13.3%	6.7%
	30대	37	2.7%	32.4%	29.7%	13.5%	10.8%	10.8%
	40대	6	0.0%	0.0%	16.7%	83.3%	0.0%	0.0%

방송장르	시사교양	130	3.1%	30.0%	30.8%	16.2%	12.3%	7.7%
	예능기타	32	0.0%	43.8%	21.9%	15.6%	12.5%	6.3%
방송사	지상파	124	3.2%	32.3%	33.9%	15.3%	8.1%	7.3%
	케이블중편기타	40	2.5%	32.5%	12.5%	20.0%	25.0%	7.5%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26	0.0%	23.1%	30.8%	30.8%	7.7%	7.7%
	꼭지작가	73	4.1%	34.2%	24.7%	17.8%	9.6%	9.6%
	취재작가	65	3.1%	33.8%	32.3%	9.2%	16.9%	4.6%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19	0.0%	36.8%	26.3%	10.5%	15.8%	10.5%
	1-3년	60	3.3%	31.7%	31.7%	13.3%	16.7%	3.3%
	4-7년	55	3.6%	36.4%	25.5%	12.7%	12.7%	9.1%
	8년 이상	29	3.4%	20.7%	31.0%	34.5%	0.0%	10.3%

○ 고용보험 설계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20대, 30대는 ‘동의한다’와 ‘잘 모르겠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40대의 경우에는 ‘반대한다’가 33.3%, ‘잘모르겠다’가 50.0%임.

〈표 4-71〉 방송작가 특성별 고용보험 설계방식 의견

	성별	연령	방송장르	방송사	방송작가역할	방송작가경력	사례수	고용보험 설계방식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안 찬성 여부		
								동의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남자		시사교양	지상파	메인작가	1년 미만	9	77.8%	22.2%	0.0%
	여자		예능기타	케이블중편기타	꼭지작가	1-3년	154	43.5%	7.8%	48.7%
		20대			취재작가	4-7년	120	43.3%	9.2%	47.5%
		30대				8년 이상	37	54.1%	5.4%	40.5%
		40대					6	16.7%	33.3%	50.0%
			시사교양	지상파	메인작가	1년 미만	130	45.4%	10.0%	44.6%
			예능기타	케이블중편기타	꼭지작가	1-3년	32	43.8%	3.1%	53.1%
			지상파	케이블중편기타	취재작가	4-7년	124	43.5%	8.9%	47.6%
						8년 이상	40	50.0%	10.0%	40.0%
			시사교양	지상파	메인작가	1년 미만	26	42.3%	11.5%	46.2%
			예능기타	케이블중편기타	꼭지작가	1-3년	73	39.7%	12.3%	47.9%
			지상파	케이블중편기타	취재작가	4-7년	65	52.3%	4.6%	43.1%
						8년 이상	29	48.3%	13.8%	37.9%

나. 향후 2년간 일자리 유지

- 향후 2년간 방송작가 일자리를 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는 23.2%,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는 76.8%임.
-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향후 2년간 방송작가 일자리 유지 기간을 예상한 결과 ‘향후 2년 중 1년 이상’ 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0%, ‘향후 2년 중 1년 미만’ 의 비율이 10%

〈표 4-72〉 방송작가의 향후 2년 예측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향후 2년간 방송작가 일자리 유지 예측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41	23.2	177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136	76.8	
향후 2년간 방송작가 일자리 유지 기간 예상	향후 2년 중 1년 이상	36	90	40
	향후 2년 중 1년 미만	4	10	

- 향후 2년간 방송작가 일자리 유지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방송작가의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73〉 방송작가 특성별 향후 2년간 일자리 유지 예측 가능성

		사례수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방송작가 일자리 유지 예측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성별	남자	11	18.2%	81.8%
	여자	165	23.6%	76.4%
연령	20대	125	21.6%	78.4%
	30대	43	27.9%	72.1%
	40대	8	25.0%	75.0%

방송장르	시사교양	140	21.4%	78.6%
	예능기타	35	31.4%	68.6%
방송사	지상파	132	22.7%	77.3%
	케이블종편기타	45	24.4%	75.6%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32	21.9%	78.1%
	꼭지작가	77	28.6%	71.4%
	취재작가	68	17.6%	82.4%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	20	30.0%	70.0%
	1-3년	62	17.7%	82.3%
	4-7년	58	25.9%	74.1%
	8년 이상	35	25.7%	74.3%

○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방송작가 일자리 유지 기간 예상은 메인작가의 경우 꼭지작가나 취재작가에 비해서 ‘향후 2년 중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6%로 높았음.

〈표 4-74〉 방송작가 특성별 향후 2년간 방송작가 일자리 유지기간 예상

	사례수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방송작가 일자리 유지 기간 예상		
		향후 2년 중 1년 이상	향후 2년 중 1년 미만	
성별	남자	2	100.0%	0.0%
	여자	38	89.5%	10.5%
연령	20대	26	92.3%	7.7%
	30대	12	83.3%	16.7%
	40대	2	100.0%	0.0%
방송장르	시사교양	30	86.7%	13.3%
	예능기타	10	100.0%	0.0%
방송사	지상파	29	89.7%	10.3%
	케이블종편기타	11	90.9%	9.1%
방송작가역할	메인작가	7	71.4%	28.6%
	꼭지작가	21	90.5%	9.5%
	취재작가	12	100.0%	0.0%
방송작가경력	1년 미만	6	100.0%	0.0%
	1-3년	11	81.8%	18.2%
	4-7년	14	100.0%	0.0%
	8년 이상	9	77.8%	22.2%

3. 비드라마 부문 구성작가 심층면담 결과

1) 심층면담 방법

- 방송산업분야 세부직군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각 직군의 현황들을 특성별로 파악한 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군인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도입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
- 그밖에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 측정을 위한 분야 활동 종사자 수 파악, 사업주 특정을 위한 계약 관련 실태 등이 논의되었음.
- 방송작가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주요 방송사 구성작가협회 소속 작가들과 2)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2) 인터뷰 대상자

- 주요 방송사 구성작가협회 소속작가 6인
 - ○○○, 35세, MBC 구성작가협회
 - ○○○, 36세, EBS 구성작가
 - ○○○, 34세, KBS 구성작가협회
 - ○○○, 40세, SBS 구성작가협회
 - ○○○, 42세, 한국방송작가협회
- 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 2인

3) 고용계약의 현황

- 방송부분 비드라마 부분 구성작가는 일반적으로 경력에 따라 메인작가, 서브작가, 막내작가로 구분하며, 다큐멘터리 분야의 경우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메인작가만 존재하고 서브작가는 없으며 작가 지망생 및 훈련생 등이 자유조사원, 리서처라는 직급으로 한 팀을 이루고 있음.
 - 일반적으로 막내작가는 아직 입봉을 하지 못 한 경력 3-4년 정도를 가진 신진작가를 칭하며, 방송계에서는 서브작가로 진입하기 전에는 보통 작가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예전에 1-2년 정도 막내작가로서의 견습 기간을 거치면 작가로 입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 반해, 최근에는 3-4년 동안 입봉작을 완성하지 못하는 작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근무의 강도나 업무 내용상으로는 소위 막내작가와 서브작가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그룹 인터뷰 참가자들의 의견
- 계약은 대부분 구두계약이며 간혹 방송국과 전속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면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전속계약은 방송국에서 계속 일을 함께 하고 싶은 작가들을 타 방송국과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극소수 작가에게만 이루어 짐.
 - 대부분의 방송사가 10여년 전만해도 4대 보험 가입도 되고 퇴직금도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방송계 상황이 작가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임.
- 방송계의 일반 특성 상 이직 빈도는 높으나 방송작가의 구직기간이 짧은 편이며, 구직기간이 짧지 않은 경우는 주로 입봉을 해야 하는 막내 작가인 경우임.
 - 서브작가 이상은 커리어 패스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에 있을 때에만 주로 경력의 단절이 발생하며,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보수가 높아지거나 직급이 높아짐.
- 일반적으로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방송국에서 작가에게 원고료를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이 인정되지만, 다큐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기획이 많아지는 추세라 몇 달에서 최대 1년 이상이 지난 후 원고료가 지급되기도 함.

○ 따라서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하나의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는 메인작가에만 해당

- 근무기간의 증명은 프로그램 마지막에 크레딧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크레딧이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근무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재방에 다른 저작권 수입은 작가들이 받는 실제 원고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며, 경력에 따라 방송가에서 정한 최저 보수가 존재하고 이를 수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4)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 집단 인터뷰에 참가한 작가들은 모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 하였으며, 동료 작가들이 대부분 가입의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구직 중에 있는 작가들의 존재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작가집단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과 공식적으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제시되었음.

○ 이를 위해서는 관용적으로 행해지던 구두계약이나 근무조건 등으로는 실제 근무기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의 개선이 우선적이라고 지적

- 하지만 방송작가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상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음.

- 경력이 오래된 작가일수록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는 것이 집단 인터뷰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나,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의무가입 방식의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음.

○ 의무가입 방식의 도입을 찬성하는 작가일 지라도 실제로 수급 조건 충족이 어려워 가입 자격의 제한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국과 제작사 차원에서 계약의 문제가 개선되어 많은 작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황을 기대한다고 하였음.

- 경력 조건 미달이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작가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용보험이 도입된다면 많은 작가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작가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적어 연대가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경력이 짧은 작가와 같은 경우는 방송사에서 작가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프리랜서도 활동하는 특성 상 고용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작가의 지위에 관하여 방송국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이 아니라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거부감이나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

4. 성우 실태조사 결과

1) 자료

가. 응답자의 특성

- 성우의 실태조사 참여 비율은 남성이 50%, 여성이 50% 였으며, 연령은 20대 4.7%, 30대 43.8%, 40대 48.4%, 50대 이상이 3.1%
- 방송사는 지상파 TV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가 17.2%, 지상파 라디오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 10.9%, 케이블 종편 TV 54.7%, 기타가 17.2%임
- 성우 경력은 5년 이하가 17.2%, 6-10년이 32.8%, 11-20년이 37.5%, 21년 이상이 12.5%

〈표 4-75〉 성우 응답자 특성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성별	남자	32	50	64
	여자	32	50	

연령	20대	3	4.7	64
	30대	28	43.8	
	40대	31	48.4	
	50대 이상	2	3.1	
방송사	지상파 TV	11	17.2	64
	지상파 라디오	7	10.9	
	케이블 중편 TV	35	54.7	
	기타	11	17.2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17.2	64
	6-10년	21	32.8	
	11-20년	24	37.5	
	21년 이상	8	12.5	

2) 고용 계약의 현황

가. 성우의 일한 기간과 수입

- 지난 2년간 활동의 특성으로 성우로서 방송프로그램에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 이 30.2%, ‘6개월-1년 미만’ 6.3%, ‘1년-1년 반 미만’ 이 11.1%, ‘1년 반-2년 이하’ 가 52.4%
- 성우로서 방송 외 나레이션 활동(영화, 광고, 게임 등)에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 이 17.2%, ‘6개월-1년 미만’ 이 13.8%, ‘1년-1년 반 미만’ 이 12.1%, ‘1년 반-2년 이하’ 가 56.9%임.
- 부업 기간은 ‘6개월 미만’ 이 30%, ‘6개월-1년 미만’ 이 20%, ‘1년-1년 반 미만’ 이 10%, ‘1년 반-2년 이하’ 가 40%임.
- 최근 24개월 중 주기적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경우는 73.8%
- 프로그램의 평균기간은 ‘6개월 미만’ 이 31.1%, ‘6개월-1년 미만’ 이 15.6%, ‘1년-1년 반 미만’ 이 20%, ‘1년 반-2년 이하’ 가 33.3%임.

〈표 4-76〉 성우의 지난 2년간 활동 특성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성우 일한 기간 _방송프로그램	6개월 미만	19	30.2	63
	6개월 - 1년 미만	4	6.3	
	1년 - 1년 반 미만	7	11.1	
	1년 반 - 2년 이하	33	52.4	
성우 일한 기간 _방송 외	6개월 미만	10	17.2	58
	6개월 - 1년 미만	8	13.8	
	1년 - 1년 반 미만	7	12.1	
	1년 반 - 2년 이하	33	56.9	
부업 기간	6개월 미만	9	30	30
	6개월 - 1년 미만	6	20	
	1년 - 1년 반 미만	3	10	
	1년 반 - 2년 이하	12	40	
주기적 방영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없다	16	26.2	61
	있다	45	73.8	
주기적 방영 프로그램 평균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14	31.1	45
	6개월 - 1년 미만	7	15.6	
	1년 - 1년 반 미만	9	20	
	1년 반 - 2년 이하	15	33.3	

- 성우로서 방송프로그램에서 일한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1년 반-2년 이하'가 가장 높았으며,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도 '1년 반-2년 이하'가 가장 많았음.
- 성우 경력별로는 5년 이하, 6-10년, 11-20년 경력의 성우는 '1년 반-2년 이하'의 일한 기간이 가장 많았지만, 21년 이상의 경력의 성우는 '6개월 미만'이 50%로 가장 많았음.

〈표 4-77〉 성우 특성별 방송프로그램 일한 기간

	성별	사례수	성우 일한 기간_방송프로그램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1년 반 미만	1년 반 - 2년 이하
	남자	32	37.5%	6.3%	9.4%	46.9%
	여자	31	22.6%	6.5%	12.9%	58.1%

연령	20대	3	0.0%	0.0%	0.0%	100.0%
	30대	27	29.6%	3.7%	11.1%	55.6%
	40대	31	35.5%	6.5%	12.9%	45.2%
	50대 이상	2	0.0%	50.0%	0.0%	50.0%
방송사	지상파 TV	11	36.4%	9.1%	0.0%	54.5%
	지상파 라디오	7	14.3%	14.3%	28.6%	42.9%
	케이블 종편 TV	35	22.9%	5.7%	8.6%	62.9%
	기타	10	60.0%	0.0%	20.0%	2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36.4%	0.0%	9.1%	54.5%
	6-10년	21	28.6%	4.8%	14.3%	52.4%
	11-20년	23	21.7%	13.0%	8.7%	56.5%
	21년 이상	8	50.0%	0.0%	12.5%	37.5%

○ 성우가 방송 외 나레이션(영화, 광고, 게임 등)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1년 반-2년 이하’가 각각 64.3%, 50.0%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사의 특성과 성우의 경력과 관계 없이 ‘1년 반-2년 이하’가 높은 비율임.

〈표 4-78〉 성우 특성별 방송 외 나레이션 활동 일한 기간

	사례수	성우 일한 기간 방송 외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1년 반 미만	1년 반 - 2년 이하	
성별	남자	28	14.3%	10.7%	10.7%	64.3%
	여자	30	20.0%	16.7%	13.3%	50.0%
연령	20대	2	50.0%	0.0%	0.0%	50.0%
	30대	27	7.4%	14.8%	11.1%	66.7%
	40대	27	25.9%	11.1%	11.1%	51.9%
	50대 이상	2	0.0%	50.0%	50.0%	0.0%
방송사	지상파 TV	11	18.2%	27.3%	0.0%	54.5%
	지상파 라디오	6	33.3%	16.7%	16.7%	33.3%
	케이블 종편 TV	32	12.5%	9.4%	15.6%	62.5%
	기타	9	22.2%	11.1%	11.1%	55.6%
성우 경력	5년 이하	10	50.0%	0.0%	10.0%	40.0%
	6-10년	20	0.0%	20.0%	10.0%	70.0%
	11-20년	20	20.0%	10.0%	10.0%	60.0%
	21년 이상	8	12.5%	25.0%	25.0%	37.5%

- 성우의 부업 기간은 여성은 ‘6개월 미만’이 50.0%로 많았지만, 남성의 경우는 ‘1년 반-2년 이하’는 64.3%로 더 많은 기간 동안 부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하면 ‘1년 반-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업을 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또한 성우 경력에 많을수록 부업을 한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표 4-79〉 성우 특성별 부업 기간

		사례수	부업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1년 반 미만	1년 반 - 2년 이하
성별	남자	14	7.1%	21.4%	7.1%	64.3%
	여자	16	50.0%	18.8%	12.5%	18.8%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30대	12	58.3%	16.7%	0.0%	25.0%
	40대	15	13.3%	26.7%	13.3%	46.7%
	50대 이상	2	0.0%	0.0%	50.0%	50.0%
방송사	지상파 TV	6	66.7%	16.7%	16.7%	0.0%
	지상파 라디오	2	50.0%	0.0%	0.0%	50.0%
	케이블 종편 TV	17	23.5%	17.6%	5.9%	52.9%
	기타	5	0.0%	40.0%	20.0%	40.0%
성우 경력	5년 이하	4	75.0%	25.0%	0.0%	0.0%
	6-10년	10	50.0%	20.0%	0.0%	30.0%
	11-20년	10	10.0%	10.0%	30.0%	50.0%
	21년 이상	6	0.0%	33.3%	0.0%	66.7%

- 최근 24개월 중 주기적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경우 지상파 라디오가 ‘주기적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상파 TV 70.0%, 케이블 종편 TV 73.5%, 기타 방송사도 60.0%로 높은편임.

〈표 4-80〉 성우 특성별 주기적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 종사 여부

		사례수	최근 24개월 중 주기적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종사 여부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종사한 적이 없다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종사한 적이 있다
성별	남자	30	30.0%	70.0%
	여자	31	22.6%	77.4%
연령	20대	3	0.0%	100.0%
	30대	26	34.6%	65.4%
	40대	30	23.3%	76.7%
	50대 이상	2	0.0%	100.0%
방송사	지상파 TV	10	30.0%	70.0%
	지상파 라디오	7	0.0%	100.0%
	케이블 종편 TV	34	26.5%	73.5%
	기타	10	40.0%	6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36.4%	63.6%
	6-10년	20	20.0%	80.0%
	11-20년	22	27.3%	72.7%
	21년 이상	8	25.0%	75.0%

- 주기적 방영 프로그램의 평균 참여기간은 남성의 경우 ‘1년 반-2년 이하’가 40.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6개월 미만’이 30.4%로 가장 높았음.
- 지상파 TV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의 평균 참여기간은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이 대다수였지만, 지상파 라디오와 케이블 종편 TV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 경우에는 ‘1년 반-2년 이하’가 가장 많았음.

〈표 4-81〉 성우 특성별 주기적 방영 프로그램 평균 참여 기간

		사례수	주기적 방영 프로그램 평균 참여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1년 반 미만	1년 반 - 2년 이하
성별	남자	22	31.8%	13.6%	13.6%	40.9%
	여자	23	30.4%	17.4%	26.1%	26.1%

연령	20대	3	0.0%	0.0%	33.3%	66.7%
	30대	17	41.2%	17.6%	17.6%	23.5%
	40대	23	26.1%	17.4%	17.4%	39.1%
	50대 이상	2	50.0%	0.0%	50.0%	0.0%
방송사	지상파 TV	6	33.3%	33.3%	16.7%	16.7%
	지상파 라디오	7	28.6%	14.3%	14.3%	42.9%
	케이블 중편 TV	25	24.0%	12.0%	24.0%	40.0%
	기타	7	57.1%	14.3%	14.3%	14.3%
성우 경력	5년 이하	7	28.6%	0.0%	14.3%	57.1%
	6-10년	16	43.8%	18.8%	25.0%	12.5%
	11-20년	16	25.0%	12.5%	18.8%	43.8%
	21년 이상	6	16.7%	33.3%	16.7%	33.3%

- 공채출신 방송사에서 현재도 활동하는지 여부는 성별, 연령별, 경력별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 ‘공채출신 방송사와 관련없이 일한다’라고 응답함. 반면,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 ‘공채 출신 방송사에서 주로 일한다’라고 응답한 성우가 57.1%

〈표 4-82〉 성우 특성별 공채출신 방송사와 현재 활동 방송사 일치여부

		사례수	공채출신 방송사와 현재 활동	
			공채 출신 방송사에서 주로 일한다	공채 출신 방송사와 관련 없이 일한다
성별	남자	32	21.9%	78.1%
	여자	32	37.5%	62.5%
연령	20대	3	33.3%	66.7%
	30대	28	25.0%	75.0%
	40대	31	32.3%	67.7%
	50대 이상	2	50.0%	50.0%
방송사	지상파 TV	11	36.4%	63.6%
	지상파 라디오	7	57.1%	42.9%
	케이블 중편 TV	36	25.0%	75.0%
	기타	10	20.0%	8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36.4%	63.6%
	6-10년	21	19.0%	81.0%
	11-20년	24	33.3%	66.7%
	21년 이상	8	37.5%	62.5%

- 성우의 방송 수입은 '100만원 이하' 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만원' 이 25.5%, '201-300만원' 이 3.9%, '301만원 이상' 이 33.3%
- 성우의 방송 외 수입은 '100만원 이하' 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만원' 이 16.7%, '201-300만원' 이 6.3%, '301만원 이상' 이 31.3%
- 부업 수입은 '100만원 이하' 가 37.3%, '101-200만원' 이 16.7%, '201-300만원' 이 6.3%, '301만원 이상' 이 37.5%
- 저작권 수입은 '100만원 이하' 가 82.6%로 가장 많았으며, '201-300만원' 이 4.3%, '301만원 이상' 이 13%

〈표 4-83〉 성우의 수입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성우 방송 수입	100만원 이하	19	37.3	51
	101-200만원	13	25.5	
	201-300만원	2	3.9	
	301만원 이상	17	33.3	
성우 방송 외 수입	100만원 이하	22	45.8	48
	101-200만원	8	16.7	
	201-300만원	3	6.3	
	301만원 이상	15	31.3	
부업 수입	100만원 이하	9	37.5	24
	101-200만원	4	16.7	
	201-300만원	2	8.3	
	301만원 이상	9	37.5	
저작권 수입	100만원 이하	19	82.6	23
	201-300만원	1	4.3	
	301만원 이상	3	13	

- 성우의 방송 수입은 지상파 TV에 종사하는 성우의 경우 '301만원 이상'이 55.6%로 가장 많았지만,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 '1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이 모두 33.3%로 나타났으며, 케이블 중편 TV의 경우 '101-200만원'이 37.0%로 가장 많았음.

〈표 4-84〉 성우 특성별 방송활동 수입

		사례수	성우 수입 방송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23	30.4%	30.4%	8.7%	30.4%
	여자	28	42.9%	21.4%	0.0%	35.7%
연령	20대	3	0.0%	100.0%	0.0%	0.0%
	30대	23	43.5%	21.7%	0.0%	34.8%
	40대	23	39.1%	21.7%	8.7%	30.4%
	50대 이상	2	0.0%	0.0%	0.0%	100.0%
방송사	지상파 TV	9	44.4%	0.0%	0.0%	55.6%
	지상파 라디오	6	33.3%	33.3%	0.0%	33.3%
	케이블 종편 TV	27	25.9%	37.0%	7.4%	29.6%
	기타	9	66.7%	11.1%	0.0%	22.2%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45.5%	27.3%	0.0%	27.3%
	6-10년	17	35.3%	29.4%	5.9%	29.4%
	11-20년	15	33.3%	20.0%	6.7%	40.0%
	21년 이상	8	37.5%	25.0%	0.0%	37.5%

○ 성우의 방송 외 나레이션 활동의 수입은 20대, 30대, 40대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지상파 TV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가 '301만원 이상'의 수입이 50%로 다른 방송사에서 종사하는 성우의 방송 외 나레이션 활동 수입보다 높았음.

〈표 4-85〉 성우 특성별 방송 외 나레이션 활동 수입

		사례수	성우 수입 방송 외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21	42.9%	19.0%	4.8%	33.3%
	여자	27	48.1%	14.8%	7.4%	29.6%
연령	20대	3	66.7%	33.3%	0.0%	0.0%
	30대	22	45.5%	18.2%	4.5%	31.8%
	40대	21	47.6%	14.3%	9.5%	28.6%
	50대 이상	2	0.0%	0.0%	0.0%	100.0%

방송사	지상파 TV	8	37.5%	0.0%	12.5%	50.0%
	지상파 라디오	6	33.3%	33.3%	0.0%	33.3%
	케이블 종편 TV	25	52.0%	20.0%	4.0%	24.0%
	기타	9	44.4%	11.1%	11.1%	33.3%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63.6%	27.3%	0.0%	9.1%
	6-10년	15	40.0%	20.0%	6.7%	33.3%
	11-20년	14	35.7%	14.3%	7.1%	42.9%
	21년 이상	8	50.0%	0.0%	12.5%	37.5%

○ 성우의 저작권 수입은 성우 특성과 관계 없이 대부분 '100만원 이하'임.

〈표 4-86〉 성우 특성별 저작권 수입

		사례수	저작권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13	84.6%	0.0%	7.7%	7.7%
	여자	10	80.0%	0.0%	0.0%	20.0%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30대	9	88.9%	0.0%	0.0%	11.1%
	40대	12	83.3%	0.0%	8.3%	8.3%
	50대 이상	1	0.0%	0.0%	0.0%	100.0%
방송사	지상파 TV	4	75.0%	0.0%	0.0%	25.0%
	지상파 라디오	1	100.0%	0.0%	0.0%	0.0%
	케이블 종편 TV	15	86.7%	0.0%	6.7%	6.7%
	기타	3	66.7%	0.0%	0.0%	33.3%
성우 경력	5년 이하	2	100.0%	0.0%	0.0%	0.0%
	6-10년	8	87.5%	0.0%	0.0%	12.5%
	11-20년	8	75.0%	0.0%	12.5%	12.5%
	21년 이상	5	80.0%	0.0%	0.0%	20.0%

○ 성우의 부업 수입은 20대, 30대인 경우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이 대다수였으며, 40대와 50대 이상은 '301만원 이상'의 부업 수입이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성우 경력 11년-20년, 21년 이상인 경우 '301만원 이상'의 부업 수입 비율이 높았음.

〈표 4-87〉 성우 특성별 부업 수입

		사례수	부업 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성별	남자	12	25.0%	33.3%	0.0%	41.7%
	여자	12	50.0%	0.0%	16.7%	33.3%
연령	20대	2	0.0%	100.0%	0.0%	0.0%
	30대	7	85.7%	14.3%	0.0%	0.0%
	40대	13	23.1%	7.7%	15.4%	53.8%
	50대 이상	2	0.0%	0.0%	0.0%	100.0%
방송사	지상파 TV	4	75.0%	0.0%	0.0%	25.0%
	지상파 라디오	2	50.0%	50.0%	0.0%	0.0%
	케이블 중편 TV	15	33.3%	20.0%	6.7%	40.0%
	기타	3	0.0%	0.0%	33.3%	66.7%
성우 경력	5년 이하	4	75.0%	25.0%	0.0%	0.0%
	6-10년	7	57.1%	28.6%	0.0%	14.3%
	11-20년	7	0.0%	14.3%	14.3%	71.4%
	21년 이상	6	33.3%	0.0%	16.7%	50.0%

나. 채용의 특성, 보수지급주기와 여러 방송사 동시 참여

- 성우의 채용시 의사결정자는 '프로그램 담당 PD' 가 71.2%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관리자' 가 20.3%, '동료 선배 성우' 가 5.1%, 기타가 3.4%
- 성우의 보수지급 주기는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 이 74.6%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기적' 8.5%, '월급' 과 '녹음 3개월 이내' 가 5.1%, '잘 모르겠다' 가 1.7%
- 업무의 수행방법과 내용의 결정자는 '프로그램 제작 관리자(PD, 감독, 기자)' 가 62.7%, '성우 본인 스스로' 가 22%,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대표' 6.8%

〈표 4-88〉 성우의 채용과 업무 수행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채용시 의사결정자	동료 선배 성우	3	5.1	59
	프로그램 담당 PD	42	71.2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관리자	12	20.3	
	기타	2	3.4	
보수지급 주기	월급	3	5.1	59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	44	74.6	
	시간급 또는 일당	3	5.1	
	잘 모르겠다	1	1.7	
	녹음 3개월 이내	3	5.1	
	비정기적	5	8.5	
업무의 결정자	수행방법/내용의 프로그램 제작 관리자(PD, 감독, 기자)	37	62.7	59
	선배, 선임 성우	1	1.7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대표	4	6.8	
	성우 본인 스스로	13	22	
	기타	3	5.1	
	무응답	1	1.7	

○ 성우의 채용시 의사결정자는 성별, 연령별, 방송사별, 성우 경력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프로그램 담당 PD’가 가장 많았음.

〈표 4-89〉 성우 특성별 채용시 의사결정자

		사례수	채용시 의사결정자			
			동료 선배 성우	프로그램 담당 PD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의 관리자	기타
성별	남자	29	3.4%	65.5%	27.6%	3.4%
	여자	30	6.7%	76.7%	13.3%	3.3%
연령	20대	3	0.0%	66.7%	33.3%	0.0%
	30대	26	3.8%	65.4%	26.9%	3.8%
	40대	28	7.1%	78.6%	10.7%	3.6%
	50대 이상	2	0.0%	50.0%	50.0%	0.0%

방송사	지상파 TV	9	0.0%	66.7%	33.3%	0.0%
	지상파 라디오	7	0.0%	85.7%	0.0%	14.3%
	케이블 종편 TV	33	6.1%	69.7%	24.2%	0.0%
	기타	10	10.0%	70.0%	10.0%	1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9.1%	72.7%	0.0%	18.2%
	6-10년	19	5.3%	63.2%	31.6%	0.0%
	11-20년	21	4.8%	66.7%	28.6%	0.0%
	21년 이상	8	0.0%	100.0%	0.0%	0.0%

○ 성우의 보수지급 주기는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았지만, 20대의 경우 ‘월급’이 33.3%였으며, 지상파 TV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의 경우에 ‘비정기적’이 22.2%, 지상파 라디오에서 종사하는 성우가 ‘월급’이 14.3%

〈표 4-90〉 성우 특성별 보수지급 주기

		사례수	보수지급 주기					
			월급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	시간급 또는 일당	잘 모르겠다	녹음 3개월 이내	비정기적
성별	남자	29	6.9%	65.5%	6.9%	3.4%	6.9%	10.3%
	여자	30	3.3%	83.3%	3.3%	0.0%	3.3%	6.7%
연령	20대	3	33.3%	66.7%	0.0%	0.0%	0.0%	0.0%
	30대	26	0.0%	73.1%	3.8%	3.8%	7.7%	11.5%
	40대	28	7.1%	75.0%	7.1%	0.0%	3.6%	7.1%
	50대 이상	2	0.0%	100.0%	0.0%	0.0%	0.0%	0.0%
방송사	지상파 TV	9	0.0%	77.8%	0.0%	0.0%	0.0%	22.2%
	지상파 라디오	7	14.3%	71.4%	0.0%	0.0%	14.3%	0.0%
	케이블 종편 TV	33	3.0%	75.8%	6.1%	3.0%	3.0%	9.1%
	기타	10	10.0%	70.0%	10.0%	0.0%	10.0%	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9.1%	72.7%	9.1%	0.0%	9.1%	0.0%
	6-10년	19	0.0%	78.9%	0.0%	5.3%	5.3%	10.5%
	11-20년	21	4.8%	71.4%	9.5%	0.0%	4.8%	9.5%
	21년 이상	8	12.5%	75.0%	0.0%	0.0%	0.0%	12.5%

○ 업무의 수행방법과 내용의 결정자는 특성별 관계없이 대부분 ‘프로그램 제작 관리자(PD, 감

독, 기자)’가 가장 많은 비율임. 그러나 성우 경력이 11년-20년, 21년 이상의 성의 경우에는 ‘성우 본인 스스로’가 각각 33.3%, 50%로 다소 높았음.

〈표 4-91〉 성우 특성별 업무의 수행방법과 내용의 결정자

		사례수	업무의 수행방법/내용의 결정자					
			프로그램 제작 관리자(PD, 감독, 기자)	선배, 선임 성우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대표	‘성우 본인 스스로’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29	58.6%	0.0%	10.3%	24.1%	3.4%	3.4%
	여자	30	66.7%	3.3%	3.3%	20.0%	6.7%	0.0%
연령	20대	3	66.7%	0.0%	33.3%	0.0%	0.0%	0.0%
	30대	26	73.1%	0.0%	11.5%	7.7%	7.7%	0.0%
	40대	28	53.6%	3.6%	0.0%	35.7%	3.6%	3.6%
	50대 이상	2	50.0%	0.0%	0.0%	50.0%	0.0%	0.0%
방송사	지상파 TV	9	77.8%	0.0%	11.1%	11.1%	0.0%	0.0%
	지상파 라디오	7	57.1%	14.3%	0.0%	14.3%	14.3%	0.0%
	케이블 종편 TV	33	57.6%	0.0%	9.1%	24.2%	6.1%	3.0%
	기타	10	70.0%	0.0%	0.0%	30.0%	0.0%	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90.9%	0.0%	0.0%	9.1%	0.0%	0.0%
	6-10년	19	73.7%	0.0%	15.8%	5.3%	5.3%	0.0%
	11-20년	21	42.9%	4.8%	4.8%	33.3%	9.5%	4.8%
	21년 이상	8	50.0%	0.0%	0.0%	50.0%	0.0%	0.0%

- 성우가 한 방송사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송사에서 일하는 경우는 61.7% 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38.3%임.
- 여러 방송사에서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은 ‘한 방송사의 일을 주로 하고 다른 방송사의 일은 부업처럼 한다’ 가 18.9%, ‘여러 방송사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다’ 가 81.1%

〈표 4-92〉 성우의 방송사 동시 활동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현재 한 방송사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송사에서 일을 한다	예	37	61.7	60
	아니오	23	38.3	

여러 방송사에서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	한 방송사의 일을 주로 하고 다른 방 송사의 일은 부업처럼 한다	7	18.9	37
	여러 방송사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 로 일한다	30	81.1	

- 한 방송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했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복수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아짐.
- 지상파 라디오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의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의 성우보다 한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4-93〉 성우 특성별 복수 방송사 일참여 여부

		사례수	현재 한 방송사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송사에서 일을 한다	
			예	아니오
성별	남자	30	60.0%	40.0%
	여자	30	63.3%	36.7%
연령	20대	3	33.3%	66.7%
	30대	26	65.4%	34.6%
	40대	29	58.6%	41.4%
	50대 이상	2	100.0%	0.0%
방송사	지상파 TV	9	55.6%	44.4%
	지상파 라디오	7	28.6%	71.4%
	케이블 종편 TV	34	70.6%	29.4%
	기타	10	60.0%	4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18.2%	81.8%
	6-10년	20	75.0%	25.0%
	11-20년	21	66.7%	33.3%
	21년 이상	8	75.0%	25.0%

- 여러 방송사에서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은 대부분 ‘여러 방송사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다’는 응답이었음.

〈표 4-94〉 성우 특성별 여러 방송사에서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

		사례수	여러 방송사에서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	
			한 방송사의 일을 주로 하고 다른 방송사의 일은 부업처럼 한다	여러 방송사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다
성별	남자	18	11.1%	88.9%
	여자	19	26.3%	73.7%
연령	20대	1	100.0%	0.0%
	30대	17	11.8%	88.2%
	40대	17	17.6%	82.4%
	50대 이상	2	50.0%	50.0%
방송사	지상파 TV	5	20.0%	80.0%
	지상파 라디오	2	50.0%	50.0%
	케이블 종편 TV	24	16.7%	83.3%
	기타	6	16.7%	83.3%
성우 경력	5년 이하	2	0.0%	100.0%
	6-10년	15	20.0%	80.0%
	11-20년	14	21.4%	78.6%
	21년 이상	6	16.7%	83.3%

다. 해고 또는 계약 해지 경험

- 성우가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3%였음.
-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는 ‘프로그램 개편, 성과미흡에 따른 해고’ 와 ‘기타’ 가 35.5%로 가장 높았으며,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가 14.3%, ‘결혼 · 임신 · 육아 및 간병 등의 사유’ 가 7.1% 임.

〈표 4-95〉 해고 또는 계약의 해지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경험	있음	14	23.3	60
	없음	46	76.7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2	14.3	14
	프로그램 개편, 성과미흡에 따른 해고	5	35.7	
	결혼·임신·육아 및 간병 등의 사유	1	7.1	
	기타	5	35.7	
	무응답	1	7.1	

○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지상파 라디오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는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었음 .

〈표 4-96〉 성우 특성별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 경험

		사례수	계약기간 내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경험	
			있음	없음
성별	남자	30	20.0%	80.0%
	여자	30	26.7%	73.3%
연령	20대	3	33.3%	66.7%
	30대	26	30.8%	69.2%
	40대	29	13.8%	86.2%
	50대 이상	2	50.0%	50.0%
방송사	지상파 TV	9	55.6%	44.4%
	지상파 라디오	7	0.0%	100.0%
	케이블 종편 TV	34	14.7%	85.3%
	기타	10	40.0%	6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1	9.1%	90.9%
	6-10년	20	35.0%	65.0%
	11-20년	21	23.8%	76.2%
	21년 이상	8	12.5%	87.5%

○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의 사유는 경력이 6-10년인 경우 ‘프로그램 개편, 성과미흡에 따른
해고’ 71.4%, 11-20년이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가 40.0%임.

〈표 4-97〉 성우 특성별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

		사례수	계약의 주된 해지 만료 사유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프로그램 개편, 성과미흡에 따른 해고	결혼·임신·육아 및 간병 등의 사유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6	16.7%	33.3%	0.0%	33.3%	16.7%
	여자	8	12.5%	37.5%	12.5%	37.5%	0.0%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0.0%
	30대	8	0.0%	50.0%	12.5%	37.5%	0.0%
	40대	4	25.0%	0.0%	0.0%	50.0%	25.0%
	50대 이상	1	100.0%	0.0%	0.0%	0.0%	0.0%
방송사	지상파 TV	5	20.0%	60.0%	0.0%	20.0%	0.0%
	지상파 라디오	0	0.0%	0.0%	0.0%	0.0%	0.0%
	케이블 종편 TV	5	0.0%	40.0%	20.0%	20.0%	20.0%
	기타	4	25.0%	0.0%	0.0%	75.0%	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	0.0%	0.0%	0.0%	100.0%	0.0%
	6-10년	7	0.0%	71.4%	0.0%	28.6%	0.0%
	11-20년	5	40.0%	0.0%	20.0%	20.0%	20.0%
	21년 이상	1	0.0%	0.0%	0.0%	100.0%	0.0%

3)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가.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

- 성우의 44.9%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라고 응답했으며, 28.6%는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응답했음.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는 14.3%,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10.2%,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2%로 나타남.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1.2%, 반대가 38.8%로 나타남.

- 고용보험을 반대하는 이유는 ‘방송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가 68.6%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 21.1%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 ‘고용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가 각각 5.3%로 나타남.
- 고용보험 선호 방식은 ‘임의가입’ 이 76.7%, 당연가입이 23.3%
- 고용보험료 부담의사는 ‘월 1만원-2만원 미만’ 이 33.3%, ‘월 2만원-3만원 미만’ 이 26.7%, ‘월4만원-5만원’ , ‘월 5만원 이상’ 이 각각 13.3%, ‘월 1만원 미만’ , ‘월 3만원-4만원 미만’ 이 6.7%로 나타남.
- 설계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는 40%, ‘반대한다’ 13.3%, ‘잘 모르겠다’ 는 46.7%

〈표 4-98〉 성우의 고용보험 관련 의견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고용보험 제도 인식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7	14.3	49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22	44.9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5	10.2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14	28.6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1	2	
고용보험 도입 찬성 여부	찬성	30	61.2	49
	반대	19	38.8	
고용보험 반대 이유	보험료 부담 때문에	4	21.1	19
	방송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3	68.6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1	5.3	
	고용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1	5.3	

고용보험 선호 가입방식	임의가입	23	76.7	30
	당연가입	7	23.3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	월 1만원 미만	2	6.7	30
	월 1만원 ~2만원 미만	10	33.3	
	월 2만원 ~3만원 미만	8	26.7	
	월 3만원~4만원 미만	2	6.7	
	월 4만원~5만원 미만	4	13.3	
	월 5만원 이상	4	13.3	
기간과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안	동의한다	12	40	30
	반대한다	4	13.3	
	잘 모르겠다	14	46.7	

○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은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와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4-99〉 성우 특성별 고용보험 제도 인식

		고용보험 제도 인식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일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성별	남자	22	13.6%	50.0%	13.6%	18.2%	4.5%
	여자	27	14.8%	40.7%	7.4%	37.0%	0.0%
연령	20대	3	33.3%	0.0%	0.0%	33.3%	33.3%
	30대	22	9.1%	50.0%	13.6%	27.3%	0.0%
	40대	22	18.2%	40.9%	9.1%	31.8%	0.0%
	50대 이상	2	0.0%	100.0%	0.0%	0.0%	0.0%
방송사	지상파 TV	8	12.5%	25.0%	12.5%	50.0%	0.0%
	지상파 라디오	6	0.0%	50.0%	0.0%	33.3%	16.7%
	케이블 종편 TV	26	15.4%	57.7%	7.7%	19.2%	0.0%
	기타	9	22.2%	22.2%	22.2%	33.3%	0.0%

성우 경력	5년 이하	10	10.0%	30.0%	0.0%	50.0%	10.0%
	6-10년	17	11.8%	47.1%	17.6%	23.5%	0.0%
	11-20년	14	21.4%	50.0%	0.0%	28.6%	0.0%
	21년 이상	8	12.5%	50.0%	25.0%	12.5%	0.0%

- 고용보험 도입 찬성여부는 지상파 TV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의 찬성 비율이 지상파 라디오와 기타 방송사에서 작업하는 성우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87.5%로 나타남. 또한 지상파 라디오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의 찬성과 반대의 비율은 반반임.
- 경력이 21년 이상인 성우는 고용보험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62.5%로 높게 나타남.

〈표 4-100〉 성우 특성별 고용보험 도입 찬성 여부

		사례수	성우 고용보험 도입 찬성 여부	
			찬성	반대
성별	남자	22	68.2%	31.8%
	여자	27	55.6%	44.4%
연령	20대	3	66.7%	33.3%
	30대	22	59.1%	40.9%
	40대	22	59.1%	40.9%
	50대 이상	2	100.0%	0.0%
방송사	지상파 TV	8	87.5%	12.5%
	지상파 라디오	6	50.0%	50.0%
	케이블 종편 TV	26	65.4%	34.6%
	기타	9	33.3%	66.7%
성우 경력	5년 이하	10	70.0%	30.0%
	6-10년	17	58.8%	41.2%
	11-20년	14	71.4%	28.6%
	21년 이상	8	37.5%	62.5%

- 고용보험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우 ‘방송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가 대부분 가장 많았으며, 성우 경력이 11-20년 이상인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이 50%였음.

〈표 4-101〉 성우 특성별 고용보험 반대 이유

		사례수	고용보험 반대 이유			
			보험료 부담 때문에	방송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신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고용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	남자	7	28.6%	42.9%	14.3%	14.3%
	여자	12	16.7%	83.3%	0.0%	0.0%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30대	9	11.1%	77.8%	0.0%	11.1%
	40대	9	33.3%	55.6%	11.1%	0.0%
	50대 이상	0	0.0%	0.0%	0.0%	0.0%
방송사	지상파 TV	1	0.0%	100.0%	0.0%	0.0%
	지상파 라디오	3	0.0%	100.0%	0.0%	0.0%
	케이블 종편 TV	9	22.2%	55.6%	11.1%	11.1%
	기타	6	33.3%	66.7%	0.0%	0.0%
성우 경력	5년 이하	3	33.3%	66.7%	0.0%	0.0%
	6-10년	7	0.0%	85.7%	0.0%	14.3%
	11-20년	4	50.0%	25.0%	25.0%	0.0%
	21년 이상	5	20.0%	80.0%	0.0%	0.0%

○ 고용보험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대부분 ‘임의가입’을 선호했으나, 경력이 11-20년 인 성우의 경우 ‘임의가입’을 50%, ‘당연가입’을 50%가 선호함.

〈표 4-102〉 성우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방식 선호

		사례수	고용보험 가입방식 선호	
			성우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성우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
성별	남자	15	73.3%	26.7%
	여자	15	80.0%	20.0%
연령	20대	2	100.0%	0.0%
	30대	13	84.6%	15.4%
	40대	13	61.5%	38.5%
	50대 이상	2	100.0%	0.0%

방송사	지상파 TV	7	100.0%	0.0%
	지상파 라디오	3	66.7%	33.3%
	케이블 중편 TV	17	70.6%	29.4%
	기타	3	66.7%	33.3%
성우 경력	5년 이하	7	100.0%	0.0%
	6-10년	10	90.0%	10.0%
	11-20년	10	50.0%	50.0%
	21년 이상	3	66.7%	33.3%

○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는 연령이 젊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할 의사를 보였으며, 지상파 TV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가 지상파 라디오, 케이블 중편 TV, 기타 방송사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할 의사를 나타냄.

〈표 4-103〉 성우 특성별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

		사례수	고용보험료 부담 의사					
			월 1만원 미만	월 1만원 ~2만원 미만	월 2만원 ~3만원 미만	월 3만원 ~4만원 미만	월 4만원 ~5만원 미만	월 5만원 이상
성별	남자	15	6.7%	26.7%	33.3%	6.7%	6.7%	20.0%
	여자	15	6.7%	40.0%	20.0%	6.7%	20.0%	6.7%
연령	20대	2	0.0%	50.0%	0.0%	0.0%	0.0%	50.0%
	30대	13	15.4%	30.8%	30.8%	0.0%	15.4%	7.7%
	40대	13	0.0%	30.8%	23.1%	15.4%	15.4%	15.4%
	50대 이상	2	0.0%	50.0%	50.0%	0.0%	0.0%	0.0%
방송사	지상파 TV	7	0.0%	0.0%	42.9%	14.3%	28.6%	14.3%
	지상파 라디오	3	0.0%	33.3%	0.0%	0.0%	33.3%	33.3%
	케이블 중편 TV	17	11.8%	47.1%	23.5%	5.9%	5.9%	5.9%
	기타	3	0.0%	33.3%	33.3%	0.0%	0.0%	33.3%
성우 경력	5년 이하	7	14.3%	42.9%	14.3%	14.3%	14.3%	0.0%
	6-10년	10	10.0%	30.0%	20.0%	0.0%	20.0%	20.0%
	11-20년	10	0.0%	20.0%	40.0%	10.0%	10.0%	20.0%
	21년 이상	3	0.0%	66.7%	33.3%	0.0%	0.0%	0.0%

- 고용보험 설계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20대는 '반대한다'가 100% 였으며, 3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30.8%, 100%로 '동의한다'의 비율이 더 많음. 40대는 69.2%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함.

〈표 4-104〉 성우 특성별 고용보험 설계방식에 대한 의견

		사례수	고용보험 설계방식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안 찬성 여부		
			동의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성별	남자	15	40.0%	20.0%	40.0%
	여자	15	40.0%	6.7%	53.3%
연령	20대	2	0.0%	100.0%	0.0%
	30대	13	46.2%	15.4%	38.5%
	40대	13	30.8%	0.0%	69.2%
	50대 이상	2	100.0%	0.0%	0.0%
방송사	지상파 TV	7	57.1%	14.3%	28.6%
	지상파 라디오	3	33.3%	33.3%	33.3%
	케이블 종편 TV	17	41.2%	5.9%	52.9%
	기타	3	0.0%	33.3%	66.7%
성우 경력	5년 이하	7	28.6%	28.6%	42.9%
	6-10년	10	40.0%	20.0%	40.0%
	11-20년	10	50.0%	0.0%	50.0%
	21년 이상	3	33.3%	0.0%	66.7%

나. 향후 2년간 일자리 유지

- 성우 일자리를 향후 2년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성우는 20.4%,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는 79.6%였음.
-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성우 중 향후 2년간 성우 일자리 유지 기간에 대한 예상은 '향후 2년 중 1년 이상이다' 가 80% 였음.

〈표 4-105〉 성우의 일자리에 대한 향후 예측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사례수
향후 2년간 성우 일자리 유지 예측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10	20.4	49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39	79.6	
향후 2년간 성우 일자리 유지 기간 예상	향후 2년 중 1년 이상	8	80	10
	기타	1	10	
	무응답	1	10	

- 향후 2년간 성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30대, 40대는 20대와 50대 이상에 비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했음.
- 지상파 TV의 경우 예측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00.0%였으며, 지상파 라디오, 케이블 종편 TV, 기타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우 경력으로는 21년 이상을 제외한 20년 이하의 경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며, 21년 이상의 경우 절반임.

〈표 4-106〉 성우 특성별 향후 2년간 성우 일자리 유지 예측 가능성

		사례수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성우 일자리 유지 예측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성별	남자	22	27.3%	72.7%
	여자	27	14.8%	85.2%
연령	20대	3	66.7%	33.3%
	30대	22	9.1%	90.9%
	40대	22	22.7%	77.3%
	50대 이상	2	50.0%	50.0%
방송사	지상파 TV	8	0.0%	100.0%
	지상파 라디오	6	16.7%	83.3%
	케이블 종편 TV	26	26.9%	73.1%
	기타	9	22.2%	77.8%
성우 경력	5년 이하	10	20.0%	80.0%
	6-10년	17	5.9%	94.1%
	11-20년	14	21.4%	78.6%
	21년 이상	8	50.0%	50.0%

○ 향후 2년 간 성우 일자리 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특성에 관계없이 2년 중 1년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함.

〈표 4-107〉 성우 특성별 향후 2년간 성우 일자리 유지 기간 예상

	성별	사례수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성우 일자리 유지 기간 예상			
			향후 2년 중 1년 이상	향후 2년 중 1년 미만	기타	무응답
성별	남자	6	66.7%	0.0%	16.7%	16.7%
	여자	4	100.0%	0.0%	0.0%	0.0%
연령	20대	2	50.0%	0.0%	0.0%	50.0%
	30대	2	100.0%	0.0%	0.0%	0.0%
	40대	5	80.0%	0.0%	20.0%	0.0%
	50대 이상	1	100.0%	0.0%	0.0%	0.0%
방송사	지상파 TV	0	0.0%	0.0%	0.0%	0.0%
	지상파 라디오	1	0.0%	0.0%	0.0%	100.0%
	케이블 종편 TV	7	85.7%	0.0%	14.3%	0.0%
	기타	2	100.0%	0.0%	0.0%	0.0%
성우 경력	5년 이하	2	50.0%	0.0%	0.0%	50.0%
	6-10년	1	100.0%	0.0%	0.0%	0.0%
	11-20년	3	66.7%	0.0%	33.3%	0.0%
	21년 이상	4	100.0%	0.0%	0.0%	0.0%

5. 성우 심층면담 결과

1) 심층면담 방법

- 방송산업분야 세부직군 중 실연자 집단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방송사의 전속 근무 비중이 가장 높은 성우집단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도입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

○ 그밖에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 측정을 위한 분야 활동 종사자 수 파악, 사업주 특정을 위한 계약 관련 실태 등이 논의되었음.

■ 성우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성우협회 및 노조 관계자와 2)성우협회 소속 중건급 이상 성우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2) 인터뷰 대상자

■ 성우협회 관계자 및 소속 성우 2인

- ○○○, 남, 51, 전 KBS 공채성우(협회관계자)
- ○○○, 여, 38, EBS 공채성우

3) 고용계약의 현황

■ 매일 혹은 매주 방영하는 장기프로그램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성우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높은 편임.

○ 간혹 만화 같은 경우 시즌으로 방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간의 지속성이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성우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나 근로소득 등의 이유로 방송 외 활동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과 방송 이외의 수입은 비슷한 수준임.

○ 집단 인터뷰에 응한 성우와 같은 경우에는 방송과 그 외 활동의 비중이 반반이었고, 방송 외 활동은 홍보물이 주를 이루며, 게임이나 앱에 사용되는 음성 녹음이 많았음.

- 게임은 저작권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서 포기각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

■ 기타 방송 분야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아직 표준계약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노조에서 정한 임의의 규칙 및 등급제를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

○ 표준계약서의 상용화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으며, 이는 임의 등급에 의해서 작성되어 온 계약서 역사가 길기 때문이고 오히려 이 규칙 안에서 조정을 통해 인정해 주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음.

■ 자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파악되며 조기종영이나 일반종영과 같은 계약만료의 경우 협회에서 증거가 가능

■ 근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협회 및 노조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송편성표 및 배역에 관한 내용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것임.

○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가 적용되므로 방송국의 협조를 통한 증거가 가장 간단할 수는 있으나, 방송 외 작업의 경우 더욱 고려하기 힘들 것

4)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며 집단 인터뷰 참가자 뿐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

○ 기타 분야와는 다르게 고용보험 이외의 지원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보이지 않음.

■ 집단 인터뷰 참가자들의 가입방식에 관한 의견은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각각 나뉘었음.

○ 예전과 다르게 일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입 방식으로 도입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근무 기간산정이 어렵다면 원천징수나 노조에 납입하는 금액 등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됨.

■ 의무가입을 찬성하는 참가자의 입장은 사용자인 방송국들이 회피하고 있으니 고용보험 도입을 원천징수를 제하는 것과 같이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불만 제기도 적을 것이라 예상

- 특히 규모가 큰 외주 제작사를 우선적으로 당연가입을 실시하도록 하면 반발도 적고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
- 임의가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고용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임의가입으로 시작하면 동분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포함시키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방송 외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인데, 사실 방송 분야에서는 전혀 업무를 하지 않고 광고 및 기타 업무로만 역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
 - 이를 감안 하였을 때 앞으로 활동하는 분야가 점점 다양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앞으로 콘텐츠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근로 조건이나 근무시간, 계약 기간 등이 천차만별로 다양해 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이 수월하다는 의견
-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으로는 개인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나 노조에서 중간 관리 역할을 한다면 가입 및 관리가 수월할 것이지만, 협회 차원에서는 운영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회원들에게는 거부감이 들지 않을 것이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분야 종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대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을 일부 직종에 일괄적으로 적용 시켰을 때 집단 별로 노동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

6. 소결

- 방송산업 종사자는 방송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현재 한류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으로서 국가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짐. 2014기준 방송산업 전체 사업자 수는 414개이며, 방송영상시장 종사자는 34,615명으로 조사됨.

- 방송 분야는 제작사, 기획사, 전문회사, 프리랜서 등 여러 주체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방송국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고용보험 도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 수행 예상
- 본 연구에서는 방송분야의 방송작가, 성우, 무술연기자, 방송영상 제작스태프 직군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했음.
 - 방송작가 중 출·퇴근의무가 없고 재택근무로 업무수행이 자유로운 드라마 작가와 달리, 구성작가는 방송PD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출·퇴근의무등 사용자 종속성이 상당히 존재함.
 - 성우는 대부분 방송국 공채를 통해서 채용되며, 1~2년의 공채 전속기간 끝난 후에는 주로 성우협회로 귀속되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실제 활발히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성우는 250명 수준임.
 - 무술연기자들의 유니온 개념의 노조가 존재하고 약 300명 정도의 규모이며, 현재 활동하는 연기자들의 구체적 종사 분야는 영화와 방송 비율이 50대 50임.
 -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구성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비율이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드라마는 외주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핵심 인력인 연출, 촬영 등은 방송사의 정규직이 담당하고, 시사프로그램은 자체 제작이 많고 외주 스태프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있음.
- 이러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비드라마분 구성작가, 성우에 대한 웹서베이와 심층면담, FGI를 수행함.
 - 실태조사에 참여한 비드라마분 구성작가의 특성은 응답자의 94.1%가 여성이었으며, 20대가 70.3%로 가장 많았음.
 - 참여하고 있는 방송장르의 경우에는 ‘시사교양’이 78.5%, ‘예능기타’가 21.5%였으며, 일하는 방송하는 지상파가 73.5%, ‘케이블중편기타’가 26.5%였으며, 방송작가의 역할별로는 메인작가가 17.5%, 꼭지작가가 42.1%, 취재작가가 40.3%였음.
 - 성우의 경우 실태조사 참여한 남성은 50%, 여성 50%이었으며, 연령은 20대 4.7%, 30대

43.8%, 40대 48.4%, 50대 이상이 3.1%였음. 방송사는 지상파 TV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가 17.2%, 지상파 라디오에서 주로 작업하는 성우 10.9%, 케이블 중편 TV 54.7%, 기타가 17.2%임.

○ 성우 경력은 5년 이하가 17.2%, 6-10년이 32.8%, 11-20년이 37.5%, 21년 이상이 12.5%

■ 방송작가와 성우의 고용 계약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공연예술의 한 기간과 수입, 계약형태, 보수지급주기, 계약기간, 해고 경험 등을 조사했음.

○ 방송작가의 지난 2년 동안의 방송작가로 일한 기간은 '1년 반-2년 이하'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1년 반 미만'이 16.1%, '6개월-1년 미만'이 11.2%, '6개월 미만'이 6.8%였음. 방송작가의 참여 프로그램의 평균 작업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48.5%로 가장 많았음.

○ 방송작가의 수입은 '101-200만원'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1만원 이상'이 18.3%, '100만원 이하'가 12.4%, '201-300만원'이 11.8%였음. 또한, 방송작가의 저작권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83.3%, '301만원 이상'이 11.1%, '201-300만원' 5.6%임.

○ 현재 체결한 계약의 형태로는 '별도로 정해진 계약형태가 없음'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구두계약'이 27.7%, '서면계약'은 12.1%에 불과함. 계약의 형태로는 '프로그램당 계약'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계약'이 38.7%, '전속계약' 5.2%, '주/월당 계약'이 4%으로 나타남.

○ 방송작가의 보수지급 주기는 월급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이 35.5%, '주급/격주급'이 17.9%

○ 성우는 방송프로그램에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30.2%, '6개월-1년 미만' 6.3%, '1년-1년 반 미만'이 11.1%, '1년 반-2년 이하'가 52.4%, 방송 외 나레이션 활동(영화, 광고, 게임 등)에 일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17.2%, '6개월-1년 미만'이 13.8%, '1년-1년 반 미만'이 12.1%, '1년 반-2년 이하'가 56.9%임.

○ 성우의 방송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만원'이 25.5%, '201-300만원'이 3.9%, '301만원 이상'이 33.3%였으며, 저작권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82.6%로 가장 많았으며, '201-300만원'이 4.3%, '301만원 이상'이 13%

- 성우의 보수지급 주기는 '회당 지급 또는 작품방송'이 74.6%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기적' 8.5%, '월급'과 '녹음 3개월 이내'가 5.1%, '잘 모르겠다'가 1.7%임.

■ 방송작가의 경우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대체로 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더 많았으며,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의 선호비율은 비슷했음.

- 방송작가의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 인식은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28.1%,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라는 응답이 14.6%임.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92.7, 반대가 7.3%으로 찬성의 의견이 많았음.

- 고용보험 가입방식에 대해서는 임의가입과 당연가입의 선호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당연가입 40.5%에 비해 임의가입이 59.5%로 높았음.

■ 성우의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 대체로 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더 많았으나 반대의 비율도 큰 편이었고, 임의가입을 더 선호함.

- 성우의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 인식은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라고 응답했으며, 28.6%는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음.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는 14.3%,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10.2%,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2%로 나타남.

-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1.2%, 반대가 38.8%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 선호 방식은 '임의가입'이 76.7%, 당연가입이 23.3%임.

■ 방송작가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주요 방송사 구성작가협회 소속 작가들과 2)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 집단 인터뷰에 참가한 작가들은 모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 하였으며, 동료 작가들이 대부분 가입의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구직 중에 있는 작가들의 존재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작가집단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과 공식적으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제시되었음.
- 이를 위해서는 관용적으로 행해지던 구두계약이나 근무조건 등으로는 실제 근무기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의 개선이 우선적이라고 지적
 - 하지만 방송작가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상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음.
- 경력이 오래된 작가일수록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는 것이 집단 인터뷰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나,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의무가입 방식의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음.
- 성우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성우협회 및 노조 관계자와 2)성우협회 소속 중견급 이상 성우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 성우의 심층면담 결과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며 집단 인터뷰 참가자 뿐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

제3절 웹툰분야 조사 결과

1. 웹툰분야 종사자 예비조사

(1) 개요

- 웹툰은 국내 만화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2005년 이후 국내 만화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만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5년 4,362억에서 2013년 7,976억원으로 약 두 배 정도 성장했음.
-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급성장 하고 있는 국내 웹툰이 성장한 배경에는 웹툰 플랫폼이 있는데, 웹툰 플랫폼은 전 세계 유례없는 한국 고유의 생태계 모델로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
- 스마트 미디어 환경 이후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로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만화를 통한 상품개발 기능도 강화되고 있음.
 -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부터는 앱을 통해 웹툰을 즐기는 이용자가 급증하였고, 소비층도 중장년층으로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만화를 이용한 여가 시간이 증가

(2) 예비조사 결과

■ 일반사항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 웹툰산업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고료를 지급받는 연재 작품이 총 4,661작품으로 조사 되었으나, 웹툰 작가 인터뷰 결과 실제 활동하는 작가 수는

2천~3천명으로 추정된다고 함.

- 2014년 현재 포털 3개, 통신사 플랫폼 2개, 해외 플랫폼 2개, 신문사 플랫폼 7개, 웹툰 전문 플랫폼 11개, 모바일/SNS전용 플랫폼 3개로 총 28개 플랫폼, 총 4,661작품이 연재 중임.

■ 업무 종사 실태

- 플랫폼이든 에이전시든 종속성은 없는 편으로, 업계 3위 정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웹툰 작가가 수익이 소속 직원들 수익보다 높은 편이고 안정적이라 볼 수 있음.
 - 만화협회 및 웹툰작가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웹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작가들의 원고료 상승 및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작가 계약형태의 다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님.
- 다양한 웹툰 플랫폼과 계약하는 작가들도 예전 만화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성격이 매우 강한 종사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플랫폼이 최소 원고료를 규정하고 있고, 이미 연재가 시작된 이후에 특별한 흥행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손해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함.
 - 또한 다른 직업을 가진 작가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특히 신인작가들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데뷔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음.

■ 계약실태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 웹툰산업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소 3개월에서부터 3년 정도의 연재기간이 소요되는 만화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속계약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임.
 - 또한 전속 계약의 경우 작가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작가와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작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 포털과 웹툰 전문 플랫폼의 수익 시스템은 다르고, 네이버와 같은 포털은 원고료 기준이 있어 평균적으로 2-3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기도 함.
 - 계약을 바로 연장하는 경우와 휴식기를 가진 후 새로운 작품으로 계약을 하는 작가의 비율은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음.

- 계약 갱신 시 원고료 협상의 개념은 없지만 최소 원고료가 있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의 최소 원고료는 200만 원 정도임.
- 최근에는 웹툰 관련 에이전시³⁴⁾도 증가했는데 현재 총 9개의 에이전시가 약 235명의 작가와 계약하여 매니지먼트와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
 - 작품의 2차적 수익 창출을 위해 에이전시가 역할을 할 경우 작가와의 수익 배분은 통상 10%, 에이전시의 역할이 강화된 경우 최고 20%까지의 수익배분
 - 웹툰 작가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에이전시가 하는 역할은 거의 없으며, 작가들도 웹툰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에이전시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작가의 등급은 통상적으로 신인작가, 중급작가, SA급작가로 구분하며, 몇 년의 경력을 가져야 중급 작가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전혀 없는데, 작품의 인기가 없다고 해도 원고료는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등급의 구분이 특히 어렵다고 함.

2. 웹툰 작가 실태 조사

- 웹툰 작가 직군의 실태조사는 주요 포털 및 웹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나, 대부분의 작가들이 매주 마감 시간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로 서베이에 응답할 여유가 없어 참여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웹툰 산업 실태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웹툰 작가 FGI 및 분야 전문가들의 면담으로 웹툰 분야 조사를 대체하였음.

3. 웹툰 작가 심층면담 결과

34) 에이전시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오래 전 회사와 계약을 해서 회사가 플랫폼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이 에이전시의 역할을 했음. 그 당시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이 작가에게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함

1) 심층면담 방법

- 웹툰 및 애니메이션 분야 선행연구 분석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포털이나 플랫폼과 전속 계약의 형태로 근무하는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도입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
 - 그밖에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 측정을 위한 분야 활동 종사자 수 파악, 사업주 특징을 위한 계약 관련 실태 등이 논의되었음.
- 웹툰 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중견급 이상의 웹툰 작가집단과 2)애니메이션 관련학과 교수진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2) 인터뷰 대상자

- 웹툰 분야 종사자 4인
 - ○○○, 여, 35세, 스토리 작가
 - ○○○, 여, 32세, KT 연재작가
 - ○○○, 남, 33, 프리랜서 웹툰작가
 - ○○○, 남, 39, 한국만화가협회 소속 웹툰작가
-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교수진 2인

3) 고용계약의 현황

- 일반적으로 웹툰 작가들은 데뷔보다 활동의 유지가 더욱 힘들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에 관한 문제보다 부업의 활동에 관심이 높거나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높음.

- 포털과 같은 경우 작가가 그만두기 전에는 먼저 해고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마다 작품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가들은 자신들이 3개월 계약의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 최근 웹툰 작가의 보수는 네이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2차 저작물에 관한 수익을 위하여 포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기도 함.
 - 계약 시 전속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작업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경력 작가들의 경우 먼저 전속계약을 요청하기도 함.
- 웹툰 작가로만 구성된 에이전시는 업무를 공유하기 위하여 경력이 오래된 작가들이 많은 경우이거나, 만화, 영화, 예능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된 에이전시도 등장
 - 2차 저작물이 생성되어 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이전시나 계약을 맺은 포털에서 저작권 관리를 하기도 함.
- 웹툰 산업에서 그림 작가와 마찬가지로 스토리 작가의 비중은 높으며 스토리 작가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작가보다 겸업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무의 규제나 관리의 강도는 신생 플랫폼일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과 같은 경우 오히려 작가들의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됨.
 - 간혹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경우에는 작품 연재 초기에 방향성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4회 혹은 8회 정도가 연재되며 자리를 잡아가면서 독자들의 피드백을 제외하고는 전혀 업무 내용에 대한 간섭은 하지 않음.
-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월 단위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정 상 휴재를 할 때도 원고료가 지급됨.
- 자율적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근무시간을 정해주지 않지만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쉬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셈
 - 병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연재를 쉬게 되는 경우 독자들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이 몇 주 내지 몇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

4)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

- 웹툰 작가 평균연령은 20대 후반으로 타 직군에 비해 낮은 편인데, 따라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관한 문제에 의식이 부족함.
 - 따라서 웹툰 분야 종사자들과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후 점차적인 도입이 필수적으로 여겨짐.
 - 또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보다 4대보험이나 사회보험이라는 상대적으로 친숙한 용어로 웹툰 작가 집단에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할 것임.
- 예술인에 대한 고용에 관한 문제는 작가 개인마다 의견이 매우 상이한데, 면담에 참가한 작가와 같은 경우는 예술도 중요하지만 생계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가도 노동자이며 고용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
 - 특히 포털이나 매니지먼트에서 웹툰 작가와 계약 시에 고용보험의 책임을 지우는 편이 현실적으로도 적합하고 전반적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 고용보험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은 무엇보다 프리랜서 작가들의 특성 상 구직 활동을 하며 구직 급여를 받을 시간에 어떻게든 작업을 이어나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인식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지 않다면 의무가입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 하지만 웹툰 분야에 계속 종사하다가 다른 분야로의 이직 과정에 있어서 구직 급여의 수급은 매우 큰 혜택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4. 소결

- 웹툰은 국내 만화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2005년 이후 국내 만화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급성장 하고 있는 국내 웹툰이 성장한 배경에는 웹툰 플랫폼이 있는데, 웹툰 플랫폼은 전 세계 유례없는 한국 고유의 생태계 모델로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
- 웹툰 작가 직군의 실태조사는 주요 포털 및 웹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나, 대부분의 작가들이 매주 마감 시간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로 서베이에 응답할 여유가 없어 참여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웹툰 산업 실태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웹툰 작가 FGI 및 분야 전문가들의 면담으로 웹툰 분야 조사를 대체하였음.
- 웹툰 분야 심층면담을 위해 1)중견급 이상의 웹툰 작가집단과 2)애니메이션 관련학과 교수진 집단으로 나누어 FGI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FGI에는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및 문화산업·예술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질적 도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음.
- 심층면담은 포털이나 플랫폼과 전속계약의 형태로 근무하는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도입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 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 측정을 위한 분야 활동 종사자 수 파악, 사업주 특정을 위한 계약 관련 실태 등을 논의함.
 - 일반적으로 웹툰 작가들은 데뷔보다 활동의 유지가 더욱 힘들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에 관한 문제보다 부업의 활동에 관심이 높거나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높았음. 보통 포털의 경우 3개월 마다 작품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가들은 자신들이 3개월 계약의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 최근 웹툰 작가의 보수는 네이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2차 저작물에 관한 수익을 위하여 포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기도 함. 계약 시 전속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작업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경력 작가들의 경우 먼저 전속계약을 요청하기도 함.
 - 웹툰 작가로만 구성된 에이전시는 경력이 오래된 작가들이 업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경우이거나, 만화, 영화, 예능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된 에이전시도 있음.
 - 웹툰 산업에서 그림 작가와 마찬가지로 스토리 작가의 비중은 높으며 스토리 작가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작가보다 겸업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무의 규제나 관리의 강도는 신생 플랫폼일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과 같은 경우 오히려 작가들의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됨.
- 자율적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근무시간을 정해주지 않지만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쉬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셈
- 웹툰 작가 평균연령은 20대 후반으로 타 직군에 비해 낮은 편인데, 따라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관한 문제에 의식이 부족함. 따라서 웹툰 분야 종사자들과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후 점차적인 도입이 필수적으로 여겨짐.
- 예술인에 대한 고용에 관한 문제는 작가 개인마다 의견이 매우 상이한데, 면담에 참가한 작가와 같은 경우는 예술도 중요하지만 생계 수단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예술가도 노동자이며 고용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고용보험에 대하여 회의적은 입장은 무엇보다 프리랜서 작가들의 특성 상 구직 활동을 하며 구직 급여를 받을 시간에 어떻게든 작업을 이어나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인식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지 않다면 의무가입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제5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규모 추정

제1절 개념적 정의

제2절 규모 추정

제1절 개념적 정의

1. 문화예술의 범위 및 예술인 정의

- 문화예술분야 및 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예술인 직군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임.
 - 특히 문화산업분야의 방송,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광고, 패션 등에 속하는 직군을 예술인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
- 양건열(2009)은 예술분야의 범위가 미학적, 예술학적, 문화정책적, 법률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예술인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문화·예술 관련법에서도 예술의 정의 대신 예술범위 규정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보았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문화’로 규정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김효정(2011)은 문화예술분야 및 인력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에 의해 근거하나, 정책 대상으로서의 기준은 개별정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봄.
- 박영정(2009)은 예술 장르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대중예술로 구분하였으며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공예, 디자인, 연극, 음악, 국악, 무용, 곡예, 영화, 연예에 속한 창작 예술인과 실연예술가를 구분하였음.

〈표 5-1〉 전문예술인 범위설정방안 연구에 따른 예술장르와 예술인

장르1	장르2	창작예술인	실연예술가
문학	문학	소설가, 시인, 극작가, 평론가, 번역가	
시각예술	미술	화가, 조각가, 서예가, 만화가	
	사진	사진작가	
	건축	건축가	
	(공예)	공예가	
	(디자인)	디자이너	
공연예술	연극	극작가, 무대미술가, 무대조명 디자이너, 무대음향디자이너, 무대소품디자이너, 무대의상 디자이너	연출가,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음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
	국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 소리꾼
	무용	안무가	무용가
	(곡예)	(곡예사), (미술사)	곡예사, 미술사
대중예술	영화	시나리오작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애 니메이터
	연예	방송작가, 작곡가, 편곡가, 작 사가, 안무가	성우, 탤런트, 대중가수, 코미디언, 만담가, 대중 무용수, 모델

* 자료원: 전문예술인 범위설정방안 연구(2009) 재구성

■ 〈2015 예술인 실태조사³⁵⁾〉에서는 예술 분야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의 14개의 예술분야를 조사함.

○ 2009년과 2012년의 실태조사에서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의 10개의 분야로 구분

■ 안주엽·황준욱(2014)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예술 분야는 연극, 영화, 음악, 국악, 연예,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문학이며, 직업은 배우, 작가, 연출가, 작곡가, 연주가, 기타로 구분됨.

35) <예술인 복지법> 제 4조 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활용을 위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함

2. 문화예술분야 직업군 분류

- 양건열(2009)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작가, 시각예술인, 건축가, 작곡가, 디자이너, 공예가, 감독 및 지휘자, 배우 및 모델,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연주가 및 성악가, 안무가 및 무용가, 기타 실연자, 예술 교육가’ 의 총 13개 직업군을 예술인으로 제시함.
- 김효정(2011)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20개의 문화예술직과 3개의 문화예술관련직을 문화예술분야 직업군으로 분류
 - 문화예술직 종사자는 ‘건축가, 작가 및 관련전문가, 번역가, 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화가 및 조각가, 사진기자 및 사진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국악 및 전통예능인,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제품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 및 멀티디자이너,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으로 총 20개

〈표 5-2〉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문화예술직업군(20개)

직업군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에 따른 직업세분류 범위
건축가		14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작가		0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0812 번역가
시각예술인		0841 화가 및 조각가
		0842 사진기자 및 사진가
		085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³⁶⁾
공연예술인	음악가	08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0846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0847 무용가 및 안무가
	국악인	0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디자이너		0851 제품 디자이너

	0852 패션 디자이너
	0853 실내장식 디자이너 ³⁷⁾
	0854 시각 디자이너
	0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연출가	0861 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0862 배우 및 모델
기타	0882 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공예가	2271 공예원
	2272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 자료원: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김효정, 2011) 재구성, 한국고용직업분류표 (KECO '09참조)

○ 문화예술관련직 종사자는 관리자(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학예 및 기록(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교육직(예능계열 교수, 예능계열 시간강사, 예능 중·고등학교사, 예능강사)으로 총 3개

■ 이승렬(2012)은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한국표준직업 분류를 통해 예술인 직군을 파악하였는데, 크게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에 포함된 문화예술관련 직업군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5-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문화예술직업군

구분	직업 분류 기호 (세분류)	직업	직업 분류 기호 (세세분류)	직업
관리자	1340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13401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
			13402	디자인관련 관리자
			13403	영상관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35	행사 기획자	27351	이벤트 전문가
			27352	행사 전시 기획자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111	방송작가

36) 2009년 한국고용직업분류표에는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가 0843으로 분류되어있었음.

37) 2009년 한국고용직업분류표에는 실내장식디자이너의 세분류가디스플레이디자이너로 표기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28112	작가 및 평론가
			28119	그 외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12	번역가	28120	번역가
	2815	출판물 전문가	28151	출판물 기획자
			28152	출판물 편집자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28211	큐레이터
			28212	문화재 보존원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28311	감독 및 연출가
			28312	기술감독
			28319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2832	배우 및 모델	28321	배우
			28322	개그맨 및 코미디언
			28323	모델
			28324	성우
	2834	촬영기사	28340	촬영기사
	2835	음향 및 녹음 기사	28350	음향 및 녹음 기사
	2836	영상 녹화 및 편집 기사	28360	영상 녹화 및 편집 기사
	2837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2841	화가 및 조각가	28411	화가
28412			조각가	
28413			서예가	
2842	사진기자 및 사진가			
2899	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28991	미술사	
		28999	그 외 문화 예술 관련 종사원	
서비스 종사자	422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42241	메이크업 아티스트
			42242	특수분장사
			42243	분장사

*출처: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012) 재정리

- 황준욱(2014)도 마찬가지로 <공연예술 직업분류체계연구>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문화예술관련직을 예술인으로 제시함.

제2절 규모 추정

1. 예술인 규모 추정

- 본 연구에서는 이승렬(2012)의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서 제시된 직군을 우선적으로 규모를 추정하였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제외 된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음.

<표 5-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직업군

구분	직업분류 기호 (세분류)	직업	직업분류 기호 (세분류)	직업
관리자	1340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13401	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
			13402	디자인 관련 관리자
			13403	영상관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35	행사기획자	27351	이벤트 전문가
			27352	행사 전시 기획자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111	방송작가
			28112	작가 및 평론가
			28119	그 외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12	번역가	28120	번역가
	2815	출판물 전문가	28151	출판물 기획자
			28152	출판물 편집자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28211	큐레이터
			28212	문화재 보존원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28311	감독 및 연출가
			28312	기술감독
			28319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2832	배우 및 모델	28321	배우
			28322	개그맨 및 코미디언
28323			모델	

			28324	성우
			28329	그 외 배우 및 모델
2834	촬영기사		28340	촬영기사
2835	음향 및 녹음 기사		28350	음향 및 녹음 기사
283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28360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2837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28371	조명기사
			28372	영상기사
2839	기타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2841	화가 및 조각가		28411	화가
			28412	조각가
			28413	서예가
2842	사진기자 및 사진가		28421	사진작가
			28422	사진기자
			28423	사진가
2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28431	만화가
			28432	만화영화 작가
2844	국가 및 전통예능인		28441	국악인
			28442	국악 연주가
			28443	국악작곡 및 편곡가
			28444	전통예능인
284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28451	지휘자
			28452	작곡가 및 편곡가
			28453	연주가
2846	가수 및 성악가		28461	가수
			28453	연주가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28471	무용가
			28472	안무가
2899	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28991	미술사
			28999	그 외 문화예술 관련 종사원
서비스 종사자	422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42241	메이크업 아티스트
			42242	특수 분장사
			42243	분장사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911	공예원	79111	도자기 공예원
			79112	조화 공예원
			79113	목 공예원
			79114	석 공예원
			79115	양초 공예원
			79116	종이 공예원
			79119	그 외 공예원

	7912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29121	귀금속 세공원
			79122	보석 세공원
			79129	그 외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 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예술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³⁸⁾>의 통계를 이용하였는데, 조사 결과는 소분류까지만 공개되기 때문에 2015년 기준 취업자 수는 세분류 직종의 개수로 나누어 규모를 추정하였음.

■ 그 결과 2015년 기준 300,660명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에는 지역별고용조사시기(4월 22일-5월 11일)에 다양한 사유로 경력단절이 있는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함.

- 문화예술분야의 관리 및 기획자는 총 17,800명으로 추정되며 작가 및 출판물 전문가는 55,200명,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조원은 13,500명으로 추정
- 시각예술인과 공연예술인은 62,000명, 영화 및 영상관련 전문가는 66,500명으로 추정
- 분장사는 52,160명, 공예가는 30,000명, 기타 예술인은 3,500으로 추정되어 총 예술인은 300,660명으로 추정

<표 5-5>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른 문화예술관련직 종사자 규모

직업군	세분류 범위	종사자 수(단위: 천명)
관리자 및 기획자	1340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17,800
	2735 행사기획자	
작가 및 출판물 전문가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55,200
	2812 번역가	
	2815 출판물 전문가	

38) 지역별 고용조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해당하는 전국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임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13,500
시각예술인		2841 화가 및 조각가	62,000
		2842 사진기자 및 사진가	
		2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공연예술인	음악가	28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62,000
		2846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2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66,500
		2832 배우 및 모델	
		2834 촬영기사	
		2835 음향 및 녹음기사	
		283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2837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2839 기타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기타		2899 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3,500
분장사		422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52,160
공예가		7911 공예원	30,000
		7912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총 29개 직종 예술직종사자	300,660

■ 김효정(2011)의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에서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있던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와 김효정(2011)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과 황준욱(2014) <공연예술 직업분류체계연구>에 포함되어있던 제품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는 본 연구의 예술인 추정에서 제외

○ 제외된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의 수는 35,007명, 디자이너는 219,000명 임.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규모 추정

■ <2016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의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군 추정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수행함.

○ <2016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700명의 표본을 수집하여 계약 실태 및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조사 수행

○ $p(a_i) = a_i(s_i, \bar{q}_i, at_i, p_i^*)$

- $p(a_i)$ 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성을 의미함.

○ s_i 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 상황임.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 $\bar{q}_i = q(f^*, p^*)$

- \bar{q}_i 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갖출 것에 대한 기대임. 이는 미래 예술활동의 기간에 대한 예측인 f 와 과거 예술활동 경험인 p 를 고용보험의 요건과 비교한 f^* 와 p^* 의 함수임. 표준계약의 보급으로 노동으로서 예술활동이 가졌던 불확실성, 불명료성이 개선 중이나 여전히 상당함을 고려할 때 미래 예술활동에 대한 예측이나 과거 예술활동에 대한 경험만을 가지고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따라서 고용보험 수급 자격 확보에 대한 기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과거의 경험이 모두 작용할 것으로 전제함.

○ at_i 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임. 새로운 제도로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구분되는 태도임.

○ $p_i^* = 1 \Leftrightarrow p_i \geq r$
 $p_i^* = 0 \Leftrightarrow p_i < r$

- p_i^* 는 고용보험 지불의사인 p_i 가 고용보험료인 r 보다 큰지를 비교한 값임.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변수를 y_i 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

○ $y_i = 1 \Leftrightarrow p(a_i^*) > 0$
 $y_i = 0 \Leftrightarrow p(a_i^*) \leq 0$

■ 이상의 모형에 <2016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를 적용한 결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300,660명 중 임의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군은 17,739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의 경우 27,961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대한 기대 요건을 미래 예측과 과거 경험 모두 충족하는 것에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자군의 증가가 추정됨.

<표 5-6>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군 추정 (단위: 명)

	월 보험료 3만원	월 보험료 2만원
모델1 : 과거와 미래 기준 모두 충족	17,739	27,961
모델2 : 미래 기준 충족	30,367	52,916
모델3 : 과거 혹은 미래 기준 충족	36,981	65,845

■ 예술인의 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은 현실에서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예술인 고용보험의 존재와 적용 방식에 대한 홍보의 효과성에 따라 가입율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실제 예술인이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본인과 유사한 동료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수급 경험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

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제6장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제1절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기존연구

제2절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제1절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기준연구

1.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재정추계

-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방법에 따라 재정추계도 달라질 것이나 고용보험의 재정추계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예술인고용보험 재정추계방법론의 단서를 구할 수 있을 것임.
- 고용보험의 재정추계에 대한 연구로는 금재호 외(2005), 허재준(2008), 원종학·최준욱(2010) 등을 들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원종학·최준욱(2010)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함.
- 원종학·최준욱(2010)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추계 및 적정요율 분석을 시도 함.
 - 수입추계, 지출추계,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 보험요율조정안 분석 등을 거시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함.
- 예술인고용보험의 경우 좀 더 다양한 구성으로 인해 임의가입방식, 특고 등으로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겠으나 고용보험 거시분석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재정추계 기본모형

- 통상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재정추계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5년까지의 실업급여계정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및 적립금 규모를 추정한다고 상정함.

- 실업급여계정의 수입 = 보험료 수입 + 기타 수입
 - 보험료 수입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일인당 평균 고용보험 납부액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임금근로자 수 × 고용보험가입률
 - 일인당 평균 고용보험 납부액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고용보험요율
 - 실업급여계정의 지출 = 실업급여 지출 + 기타지출(운영비, 반환금 등)
 - 실업급여지출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일인당 평균 수급액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대상 실업자 수 × 신청비율
 - 대상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고용보험가입률
 - 일인당 평균 수급액 = 평균 수급일수 × 일인당 평균 일 수급액
 - 평균 수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 지급함.
- 원종학·최준욱(2010)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15세 이상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자수, 취업자수 등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사용하여 분석함.

〈표 6-1〉 인구 및 기타주요변수 전망(예시)

(단위: 천명, %)

연도	15세이상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자 수	취업자 수	임금 근로자수	임금근로자 증가율	임금근로자 비중
2010	37,717	23,370	62.0	860	22,557	14,894	-	66.0
2011	38,300	23,689	61.9	887	22,856	15,185	2.0	66.4
-	-	-	-	-	-	-	-	-
2019	42,645	26,227	61.5	892	25,335	19,892	1.9	78.5
2020	42,717	26,271	61.5	893	25,378	20,270	1.9	79.9

*원종학·최준욱(2010)에서 차용

**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구직기간 4주 기준)

- 실업급여 적용대상자를 구하기 위해 일용직과 임시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임금근로자 중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함.
-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률에 대해 일정 가정하고, "적용대상자×가입률"로 계산함.

〈표 6-2〉 실업급여 적용대상자(예시)

(단위: 천명, %)

연도	임금근로자	적용제외자	적용대상자	피보험자수	가입률
2010	16,785	4,378	12,407	9,962	80.3
2011	17,125	4,477	12,649	10,273	81.2
-	-	-	-	-	-
2019	19,892	5,173	14,719	13,100	89.0
2020	20,270	5,283	14,987	13,491	90.0

*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구직기간 1주 기준)

2) 실업급여계정 수입추계

- 실업급여 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구분함.

○ 보험료 수입 = 피보험자 수 × 평균임금 × 보험요율

- 평균임금의 증가율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인 장기 경제전망치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것이 필요함.

○ 기타수입의 경우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자율 및 적립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명목이자율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반영하여 추계함.

〈표 6-3〉 실업급여 수입추계(예시)

(단위: 백만원)

연도	보험료수입	기타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합
2010	2,948,292	244,877	10,394	3,203,563
2011	3,225,759	221,896	10,653	3,458,308
-				
2019	6,605,829	66,058	12,980	6,684,867
2020	7,218,271	72,183	13,305	7,303,758

3) 실업급여계정 지출추계

■ 실업급여계정의 지출 = 실업급여 지출 + 모성보호사업 지출 + 기타지출(운영비, 반환금)

■ 실업급여 지출의 구분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할 수 있음.
-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모성보호사업(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에 포함하여 추계함.

가. 구직급여

■ 구직급여의 내용

-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함.

- 구직급여 일액은 40,000원을 넘지 못하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함.

〈표 6-4〉 구직급여 지원현황(예시)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직급여	
	인원	금액
1997	44,334	75,947
1998	392,569	783,118
-	-	-
2008	981,985	2,466,521
2009	1,299,567	3,589,872

* 자료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구직급여 지출액 = 수급자 수 × 평균 수급일 × 평균 수급일액

- 구직급여의 평균 수급일과 평균 수급일액은 기간 동안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DB에서 추출함.
- 구직급여 수급일은 평균수급일이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구직급여 일액은 임금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과 하한이 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상승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임.

■ 향후 평균수급일액의 증가율은 임금증가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수급자수

- 일단 미래의 수급자수의 전망을 위해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수혜율)의 추세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함.

나. 상병급여

■ 상병급여 내용

-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고 구직급여의 미지급한도 내에서 지급됨.
- 또한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표 6-5〉 상병급여 지원현황(예시)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상병급여		
	인원	금액	
		(백만원)	(증가율, %)
1997	257	212	-
1998	1,366	1,019	380.7
-	-	-	-
2008	5,436	6,867	8.6
2009	6,585	8,921	29.9

* 자료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상병급여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존의 추세를 향후 전망에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증가율을 계산하는가에 따라 평균증가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전망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구직급여 대비 상병급여의 비율 역시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 비율을 향후 상병급여 전망에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 두 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 대비 상병급여의 비율을 활용하여 향후 전망치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의 내용

- 실업신고일이 7일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잔여 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함.
- 재취직할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급여일수의 2/3을 지급함.

〈표 6-6〉 조기재취업수당 지원현황(예시)

(단위: 명, 백만원)

	조기재취업수당	
	인원	금액
1997	4,481	2,558
1998	17,712	15,260
-	-	-
2008	174,403	391,613
2009	221,389	517,083

* 자료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대비 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라. 기타수당

■ 기타 수당은 구직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마. 모성보호사업

■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사업은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실업급여 사업계정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에 포함하여 추계함.

■ 모성보호 지출소요를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산출함.

- 산전후 휴가급여
- 유사산 휴가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근로시간 단축급여

■ 각각의 항목에 대한 지출은 해당항목별 적용인원×해당항목별 일인당 평균급여로 산출하며, 해당항목별 일인당 평균급여는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후 매년 임금증가율에 연동되는 것으로 가정함.

○ 산전후 휴가급여 적용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산휴가급여 적용인원, 육아휴직급여 적용인원, 육아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산전후 휴가급여 적용인원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4) 재정수지 및 적립금

■ 실업급여의 수입과 지출 추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요율 하에서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를 구할 수 있음.

5) 정책적 분석

- 이상의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수입추계와 지출추계 그리고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를 통해 기금 고갈시점을 판단할 수 있음.
- 실업급여계정의 기금고갈을 피하기 위한 적정요율 및 필요요율 인상에 대한 정책적 시나리오 작성이 필요함.
 - 기금고갈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요율 조정 폭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수혜율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다소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2. 고용보험 재정추계 수정안 검토

- 기본적인 고용보험 제정추계 모형에 대해 최근 환경변화와 미시데이터 증가로 인해 좀 더 세밀화된 분석을 통해 정치화된 결과가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원종학·최준욱(2010)에서 제시된 수정안을 검토하여 예술인고용보험 재정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1) 추계방법 수정의 필요성

- 실업급여 지출액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실업급여 수혜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연령별 가입성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장래의 재정수지를 보다 적정하게 예측할 것으로 기대됨.
 - 연령별로 소정급여일수, 평균 수급액, 신청비율 등 고용보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름.
 - 연령별 실업률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고용보험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재정소요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고용보

험 가입 및 수급 성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기존의 추계방법은 주로 월별 고용보험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급 자격요건의 완화, 일 최대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의 증대, 자발적 실업자를 포함하는 경우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재정소요액의 변화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다양한 경우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관한 개별 데이터 (micro data)를 사용한 분석 모델이 필요함.

2) 고용보험 재정추계 수정안

■ 재정수지 = 수입 - 지출

■ 수입

○ 기존의 수입계산 방법과 같음.

■ 지출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대상) 실업자 수 × 신청비율

= 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임금근로자 비율 × 고용보험 가입률 × 신청비율

= (총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임금근로자 비율 × 고용보험 가입률 × 신청비율

○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 = 수급일수 × 일 수급액

3) 시사점

■ 기본적인 사회보험 진단도구인 거시적 수입-지출 추계모형을 좀 더 세분화하고 평균

적 실업급여 수급액을 가급적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좀 더 정치된 추계결과를 득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관심사인 예술인고용보험의 재정추계에 대해서도 예술인의 집단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소집단에서의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을 구체화한다면 좀 더 정치된 추계결과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방법론

1) 추계방법 개요

-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는 예술인을 몇 개의 주요 소그룹으로 나누고 소그룹별 재정 추계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됨.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고 이에 따라 소그룹별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는 각 소그룹별로 재정추계를 수행할 수 있음.

- 소그룹별 계정의 수입 = 보험료 수입 + 기타 수입

○ 보험료 수입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일인당 평균 고용보험 납부액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임금근로자 수 × 고용보험가입률

○ 일인당 평균 고용보험 납부액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고용보험요율

○ 기타 수입은 자체수입은 없고 문체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생각할 수 있음.

○ 전입금에 대하여는 일종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소그룹별 계정의 지출 = 실업급여 지출 + 기타지출(운영비, 반환금 등)

- 실업급여지출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일인당 평균 수급액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대상 실업자 수 × 소그룹별 신청비율
= (15세 이상 민간) 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고용보험가입률 × 신청비율
- 일인당 평균 수급액 = 평균 수급일수 × 일인당 평균 일 수급액
- 평균 수급일수

■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수 상황에 대한 논의 및 주요 쟁점 도출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재정추계를 수행함.

- 대상
- 보험요율
- 보험사업의 범위
- 피보험단위기간
- 실업급여 인정기준
- 실업인정 상태
- 구직급여 수급요건

■ 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처럼 예술인 고용보험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재정추계에서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

- 예술인 복지사업의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예술인 실태조사 활용

■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형태를 자영업자(고용주), 근로자(정규직부터 파견/용역까지), 일용직(프리랜서)로 3분하고 예술활동분야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등 14개로 나누어 총 42개의 소그룹을 조성함.

■ 소그룹별로 수입과 지출을 추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소그룹별 계정의 보험료 수입

- 보험료 수입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일인당 평균 고용보험 납부액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임금근로자 수 × 고용보험가입률
- 일인당 평균 고용보험 납부액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고용보험요율

■ 소그룹별 계정의 실업급여 지출

- 실업급여지출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일인당 평균 수급액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대상 실업자 수 × 소그룹별 신청비율
- 일인당 평균 수급액 = 평균 수급일수 × 일인당 평균 일 수급액

■ 예술인 고용보험은 도입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 재정추계에 대한 주요 변수에 대한 예술계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고용보험요율 중 문체부나 예술인복지재단의 부담비율에 대한 의견
- 고용보험요율 중 개인부담비율에 따른 고용보험가입율에 대한 의견
- 평균수급액에 대한 의견
- 실업인정에 대한 의견

■ 예술인실태조사의 경우 각 소그룹별 주요 사안을 설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대상
- 보험요율

- 보험사업의 범위
- 피보험단위기간
- 실업급여 인정기준
- 실업인정 상태
- 구직급여 지급요건

■ 예술인실태조사의 소그룹별 주요 평균치 데이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혜 횟수 및 금액
- 수입: 가구총수입, 예술활동수입, 비예술활동수입
- 예술활동기간

제2절 예술인 고용보험 재정추계

-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등급별 가입자수와 전체 가입율이 파악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을 추계할 수 있음.
- 파악된 정보를 이용하여 추계할 때, 소득분포가 균등분포라고 가정하는 경우와 가입율이 균등분포라고 가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음.
 - 동일가입비율모형은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는데, 고용형태와 소득구분법에 따른 가입 자료를 활용하여 가입비율이 소득등급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분석함.
 - 동일소득등급비율모형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설문조사를 이용하는데, 소득등급별 가입자비율을 이용하여 소득등급별 모집단 추정인원을 시산하여 분석함.
- 동일가입비율모형과 동일소득등급비율모형 각각에 대한 고용보험 수입, 지출, 수지 추계치를 시산한 후, 고용보험 재정추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실업급여 추계: 동일가입비율모형

1)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

- 보험료 수입 = 피보험자 수 × 보수총액 × 보험료율
- 피보험자 수는 (종사자 수 × 가입률)이며 종사자 수는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에서 파악한 14개 분야 131,332명으로 추정하고, 가입률은 임의 적용 시 가입률로 상정할

수 있는 25.1%를 베이스라인으로 하며 향후 그 밖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변화를 살펴봄.

- 예술인 보수 파악이 어려워 자영업자와 같이 기준보수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함.
- <표 6-7>의 산재보험 예술인 기준보수를 적용하되, 저소득자를 고려하여 최저소득 구간을 추가로 검토함.

<표 6-7>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 현황(2015년)

(단위 : 원, 명)

소득등급	월보수액	가입자수	비율	비고
1등급	1,250,400	175	42.68	
2등급	1,395,180	8	1.95	
3등급	1,540,000	11	2.68	
4등급	1,730,000	4	0.98	
5등급	1,920,000	67	16.34	
6등급	2,110,000	12	2.93	
7등급	2,310,000	28	6.83	
8등급	3,349,170	20	4.88	
9등급	4,388,370	2	0.49	
10등급	5,427,570	83	20.24	
합계	-	410	100	

- 예술인에 대하여 자영업자 가입의 특례로 적용하여 자영업자 계정에 통합하고, 보험료율도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함.
 - 예술인의 80%가 프리랜서이며, 임의가입을 적용하는 경우 독립계정보다는 유사 계정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준보수의 0.25%를 보험료율로 상정함.
 - 본고에서는 실업급여만을 시산하여 대체적인 보험재정추계를 도출할 예정임.

■ 기본 가정(향후 시계열적 추산에 사용함)

- 사업노동력조사 `08-14년 연평균 임금인상률인 4.0%를 적용하여 2016년 이후에는 보수액이 매년 4%씩 증가한다고 가정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로 가정함.
- 일단 전체 월평균 분포를 추계하고 총 보험료 수입액을 추계함.

■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예술인 고용형태별 월평균수입 분포를 정리하면, <표 176>과 같음.

- 예술인의 80%를 차지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도 50만 원 이하가 24.3%인 반면 300만 원 이상이 20.8%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 예술인 분포와 다르다거나 프리랜서라고 해서 저소득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표 6-8> 고용형태별 월평균수입 분포

월 수입	전체	고용주	기간제등	기타	일용직	정규직	파견/용역	시간제등	프리랜서
50만원 이하	22.7	5.1	14.6	35.7	40.2	6.1	19.4	32.3	24.3
50~100	14.7	8.1	19.6	11.4	42.1	6.1	27.7	27.0	14.9
100~130	6.4	2.5	9.8	1.8	0.0	3.2	26.9	9.6	6.7
130~150	3.6	2.0	4.9	3.8	0.0	5.6	0.0	2.1	3.6
150~200	12.4	8.8	15.9	9.2	0.0	8.5	26.0	8.2	12.8
200~250	12.1	10.8	11.9	11.7	3.6	13.9	0.0	1.5	12.3
250~300	4.6	0.5	3.6	5.3	4.4	6.7	0.0	5.5	4.7
300만원 초과	23.5	62.2	19.7	21.1	9.7	49.8	0.0	13.8	20.8

〈표 6-9〉 예술인 월보수액 분포 추계(2015년)

(단위 : 원, 명)

등급	월보수액	분포 추정비율	산재보험 가입비율	비고
1등급	1,250,400	42.7	42.68	
2등급	1,395,180	2.7	1.95	
3등급	1,540,000	3.0	2.68	
4등급	1,730,000	4.7	0.98	
5등급	1,920,000	4.7	16.34	
6등급	2,110,000	4.7	2.93	
7등급	2,310,000	4.8	6.83	
8등급	3,349,170	12.6	4.88	
9등급	4,388,370	10.0	0.49	
10등급	5,427,570	10.1	20.24	
합계	-	100	100	

■ 예술인 실태조사보고서의 월수입을 10분위 소득등급에 따라 보간법(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재구성하면 〈표 6-9〉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됨.

- <표 6-9>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소득 등급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소득 등급별 추정비율과 비교하면 1등급은 거의 유사하고 9등급과 10등급의 합이 유사함을 볼 수 있음 .
- 따라서 통상적으로 산재보험가입자가 고용보험가입자와의 상관관계가 높음에 착안하여 추정비율을 기본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가입비율 추정

-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설문조사에 사용된 소득구분법에 의해 계산된 소득분포와 고용형

태와 소득구분법에 따라 보고된 고용보험 가입비율을 재계산하여 얻은 소득구분법에 따른 가입비율분포가 전체 합(7.7%)만 다를 뿐 소득구분법상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율(7.7%)로 가입한다고 가정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로 가정
- 일단 전체 월평균 분포를 추계하고 총 보험료 수입액을 추계함.

〈표 6-10〉 예술인 고용보험 기준보수 추계(2015년)

(단위 : 원, 명)

등급	월보수액	분포 추정비율	가입 추정비율	추정보수총액 (백만원)
1등급	1,250,400	42.7	3.29	64,833
2등급	1,395,180	2.7	0.21	4,617
3등급	1,540,000	3.0	0.23	5,582
4등급	1,730,000	4.7	0.36	9,815
5등급	1,920,000	4.7	0.36	10,893
6등급	2,110,000	4.7	0.36	11,971
7등급	2,310,000	4.8	0.37	13,470
8등급	3,349,170	12.6	0.97	51,199
9등급	4,388,370	10.0	0.77	53,253
10등급	5,427,570	10.1	0.78	66,719
합계	-	100	7.7	292,352

■ 보험료 수입 추계

- 보험료율 2%의 가정 하에서 시산된 2016년도 이후 보험료 수입 추계를 정리하면 <표 6-11>과 같음.
- 기본 시나리오로 종사자가 유지되고 가입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함.
- 물가 상승율이 3%로 유지된다고 가정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로 유지된다고 가정함.

<표 6-11> 보험료 수입 추계(보험료율 2%)

	종사자	물가상승률 (%)	보수총액(연) (백만원)	보험료율	보험료 수입 (백만원)
2016	131,332	3%	292,352	2%	5,847
2017	131,332	3%	301,123	2%	6,022
2018	131,332	3%	310,156	2%	6,203
2019	131,332	3%	319,461	2%	6,389
2020	131,332	3%	329,045	2%	6,581
2021	131,332	3%	338,916	2%	6,778
2022	131,332	3%	349,084	2%	6,982
2023	131,332	3%	359,556	2%	7,191
2024	131,332	3%	370,343	2%	7,407
2025	131,332	3%	381,453	2%	7,629

2) 실업급여 지출

■ 실업급여 지출 = 실업급여 수급자 수 ×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

○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 = 일 수급액 × 수급일수

■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신청자 × 수급자격인정률 × 수급률

○ 실업급여신청자 = 이직신고자 × 고용보험가입률 × 실업급여신청률

○ 전체상실자(이직신고자)는 고용보험통계 2013년 연령대별 상실자, 신청자, 급여지급자 데이터를 이용한 추계를 따름.

○ 고용보험가입률은 수입 추계시와 마찬가지로 25.1%를 베이스라인으로 이용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변화를 검토

○ 실업급여신청률, 수급자격인정률, 수급률은 기존 고용보험 데이터에서 자영업자의 수치를 이용

○ 상실자(이직자) 중 근속기간 미만인 자(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는 본인이 스스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하더라도 수급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따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 식의 실업급여신청률과 수급자격인정률을 통해 자동으로 걸러진다고 가정함.

○ 신청률×인정률×수급률은 2013년 고용보험 통계를 사용

○ 20세 미만, 20대, 30대를 가중평균방식을 사용하여 30대 이하로 단일화함.

〈표 6-12〉 2015년 자영업자 연령대별 상실자, 신청자, 급여 지급자

형태	나이	상실건수	상실자 (순수)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격 인정자 중 급여지급자	급여지급자/ 상실자 (순수)
자영 업자	30대 이하	1,122	1,115	179	174	174	15.6%
	40대	1,252	1,247	244	234	233	18.7%
	50대	1,310	1,303	426	411	409	31.4%
	60대 이상	487	483	222	212	211	43.7%
	합계	4,171	4,148	1,071	1,031	1,027	-

■ 1인당 실업급여 일 수급액은 실직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1일 최고는 43,000원, 최저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 2016년 이후 시간당 최저임금은 향후 매년 7%씩 증가한다고 가정
- 2014년부터 증가율의 단순평균을 계산하면 7.5%임.
- 2021년 상한선이 6만원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표 6-13〉 연도별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수급 최저액

	시간당 최저임금	증가율	최저액	최고액
2011	4,320	5.1%	27,648	-
2012	4,580	6.0%	29,312	-
2013	4,860	6.1%	31,104	-
2014	5,210	7.2%	33,344	-
2015	5,580	7.1%	35,712	-

2016	6,030	8.1%	38,592	43,000
2017	6,460	7.1%	41,344	43,000
2018	6,920	7.1%	44,288	43,000
2019	7,410	7.1%	47,424	43,000
2020	7,940	7.1%	50,816	43,000
2021	8,500	7.1%	54,400	50,000
2022	9,100	7.1%	58,240	50,000
2023	9,750	7.1%	-	50,000
2024	10,440	7.1%	-	50,000
2025	11,180	7.1%	-	50,000

* 자료원: 최저임금위원회 및 저자의 계산

■ 수급일수의 경우 기존 고용보험 대상 자영업자 수급일수 통계를 이용하여 추계

- 자영업자의 경우 2015년 자영업자 등급별 연령별 실업급여 평균 수급일(수급만료일 기준)을 이용
- 20세 미만, 20대, 30대를 가중평균방식을 사용하여 30대 이하로 단일화함.

〈표 6-14〉 자영업자 연령별 실업급여 평균 수급일

등급	나이	전체 수급일	수급자 수	평균 수급일
전체	30대	16,878	185	91.2
	40대	22,268	251	88.7
	50대	35,455	393	90.2
	60세 이상	17,680	183	96.6
총계		92,281	1,012	91.2

■ 자영업자의 연령별 평균 수급일수를 이용한 실업급여 지출 추계

- 연령별 신청률×인정률×수급률은 고용보험통계 자영업자 통계치를 따른다고 가정

- <표 6-15>에서는 2016년 실업급여 지출 추계 예를 제시
- 20세 미만, 20대, 30대를 가중평균방식을 사용하여 30대 이하로 단일화 함.

〈표 6-15〉 예술인 2016년 실업급여 지출 추계

(단위: 백만원)

	비율	이직신고율	가입률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	평균일액 (원)	평균 수급일	실업급여액
30대	29.2%	10.5	22.1%	15.6%	38,592	91.2	651
40대	21.3%	8.2	30.4%	18.7%	38,592	88.7	859
50대	23.8%	4.9	34.9%	31.4%	38,592	90.2	1,368
60대	25.7%	4.4	12.3%	43.7%	38,592	90.6	682
합계							3,561

■ 보험 지출 추계

- 물가상승율이 3%라고 가정함.
- 근속기간 자격을 6개월로 한다고 가정하여 1차년도 지출이 50% 발생한다고 가정함.
- 이직신고율×신청률×인정률×수급률을 연령대별로 시산하여 산정함.
- 소정급여일수는 90일, 즉 3개월로 가정함.

〈표 6-16〉 예술인 연도별 실업급여 지출 추계

(단위: 백만원)

	종사자	물가상승율	평균일액	실업급여액
2016	131,332	3%	38,592	1,780
2017	131,332	3%	41,344	3,928
2018	131,332	3%	43,000	4,209

2019	131,332	3%	43,000	4,335
2020	131,332	3%	43,000	4,465
2021	131,332	3%	50,000	5,348
2022	131,332	3%	50,000	5,508
2023	131,332	3%	50,000	5,673
2024	131,332	3%	50,000	5,844
2025	131,332	3%	50,000	6,019

3) 실업급여 수치

■ <표 6-17>은 시나리오별(보험료율, 지출추계방식, 최소 근속기간 기준) 수입 및 지출 추계를 요약

<표 6-17> 보험료율 2%, 자영자 연령별 평균 수급일수 기준 추계

(단위: 백만원)

	수입(2%)	실업급여	수지차	연말적립금	적립배율
2016	5,847	1,780	4,067	4,067	-
2017	6,022	3,928	2,094	6,161	1.04
2018	6,203	4,209	1,994	8,155	1.46
2019	6,389	4,335	2,054	10,209	1.88
2020	6,581	4,465	2,116	12,325	2.29
2021	6,778	5,348	1,430	13,755	2.30
2022	6,982	5,508	1,474	15,229	2.50
2023	7,191	5,673	1,518	16,747	2.68
2024	7,407	5,844	1,563	18,310	2.87
2025	7,629	6,019	1,610	19,920	3.04

- 제도 시행 초년도에 실업급여가 50%만 발생한다고 가정할 후 동일가입비율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급여가 발생한다고 계산하여 보험제도 수지, 연말적립금, 적립배율을 도출함.
- 10년 정도의 시정을 볼 때 적립배율이 1.04에서 3.04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추계됨.

2. 실업급여 추계: 동일소득등급비율모형

1)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

- 보험료 수입 = 피보험자 수 × 보수총액 × 보험료율
- 피보험자 수는 (종사자 수 × 가입률)이며 종사자 수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파악한 27,961명으로 추정하고, 가입률은 임의적용시 가입률로 상정할 수 있는 산재보험가입비율에 근거하여 베이스라인으로 하며 향후 그 밖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변화를 살펴봄.
- 예술인 보수 파악이 어려워 자영업자와 같이 기준보수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함.
 - <표 6-18>의 산재보험 예술인 기준보수를 적용하되, 가입자 소득분포가 일정하게 균등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각 소득등급별 추정인원을 시산함.
 - 가입자 비율은 총가입자 중 해당 소득등급에 속하는 가입자의 비율을 지칭함.

〈표 6-18〉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원, 명)

소득등급	월보수액	가입자수	가입자비율	추정인원
1등급	1,250,400	175	42.68	11,934
2등급	1,395,180	8	1.95	545
3등급	1,540,000	11	2.68	749
4등급	1,730,000	4	0.98	274
5등급	1,920,000	67	16.34	4,569
6등급	2,110,000	12	2.93	819
7등급	2,310,000	28	6.83	1,910
8등급	3,349,170	20	4.88	1,365
9등급	4,388,370	2	0.49	137
10등급	5,427,570	83	20.24	5,659
합계	-	410	100	27,961

■ 소득등급별 월보수액과 인원에 근거하여 보험료수입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시산한 것을 나타내면 〈표 6-19〉와 같음.

- 1년차 추정수입은 월보수액 × 인원 × 2% 보험료 × 12개월에 50%정도의 기간을 산정함.
- 2-4년차 또는 그 이후에는 100%를 반영함.

〈표 6-19〉 추정수입 1-4년차

(단위 : 원, 명)

등급	월보수액	인원	추정수입 1년차 (백만원)	추정수입 2년차 (백만원)	추정수입 3년차 (백만원)	추정수입 4년차 (백만원)
1	1,250,400	11,934	1,791	3,581	3,581	3,581
2	1,395,180	545	91	182	182	182
3	1,540,000	749	138	277	277	277

4	1,730,000	274	57	114	114	114
5	1,920,000	4,569	1,053	2,105	2,105	2,105
6	2,110,000	819	207	415	415	415
7	2,310,000	1,910	529	1,059	1,059	1,059
8	3,349,170	1,365	549	1,097	1,097	1,097
9	4,388,370	137	72	144	144	144
10	5,427,570	5,659	3,686	7,372	7,372	7,372
	-	27,961	8,173	16,346	16,346	16,346

■ 보험료 수입 추계

- 보험료율 2%의 가정 하에서 시산된 2016년도 이후 보험료 수입 추계를 정리하면 <표 6-20>와 같음.
-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가입자 추정인원 27,961명이 2016년도에 가입하더라도 전체 기간 중 절반인 6개월만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하고 2차년도부터 12개월 전체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함.
- 2017년부터 가입률이 3년마다 50%씩 증가한다고 가정함.
- 물가상승율을 가정하지 않음.
-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로 유지된다고 가정함.
- 1년차는 50%수준인 10%가 가입한다고 가정함.
- 201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4%를 감안하면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률추정치는 매우 높은 수준임.

<표 6-20> 보험료 수입 추계(보험료율 2%)

	가입자 추정인원	보험료율	보험료 수입 (백만원)
2016	-	2%	8,173
2017	27,961	2%	16,346

2018	27,961	2%	16,346
2019	27,961	2%	16,346
2020	41,942	2%	24,519
2021	41,942	2%	24,519
2022	41,942	2%	24,519
2023	55,922	2%	32,692
2024	55,922	2%	32,692
2025	55,922	2%	32,692

2) 실업급여 지출

■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신청자 × 수급자격인정률 × 수급률

- 실업급여신청자 = 이직신고자 × 고용보험가입률 × 실업급여신청률
- 전체상실자(이직신고자)는 고용보험통계 2013년 연령대별 상실자, 신청자, 급여지급자 데이터를 이용한 추계를 따름(향후 2015년 데이터로 확인 필요).
- 실업급여신청률, 수급자격인정률, 수급률은 기존 고용보험 데이터에서 자영업자의 수치를 이용
- 추정 1년차는 지출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월평균보수액의 50%를 지급하고 3개월 기한으로 가정함.
- (이직신고율×신청률×인정률×수급률 인) 보험수령율이 8%라고 가정하고 2018년부터 10%를 유지한다고 가정함.
- 소정급여일수는 90일, 즉 3개월로 가정함 .

〈표 6-21〉 추정지출 1-4년차

등급	월보수액	인원	추정지출 1년차	추정지출 2년차 (백만원)	추정지출 3년차 (백만원)	추정지출 4년차 (백만원)
1	1,250,400	11,934		1,791	2,238	2,238
2	1,395,180	545		91	114	114
3	1,540,000	749		138	173	173
4	1,730,000	274		57	71	71
5	1,920,000	4,569		1,053	1,316	1,316
6	2,110,000	819		207	259	259
7	2,310,000	1,910		529	662	662
8	3,349,170	1,365		549	686	686
9	4,388,370	137		72	90	90
10	5,427,570	5,659		3,686	4,607	4,607
총계	-	27,961		8,173	10,216	10,216

■ 보험 지출 추계

- 보험수령율 8%의 가정 하에서 시산된 2016년도 이후 보험 지출 추계를 정리하면 <표 6-22>와 같음.
- 2017년부터 가입률이 3년마다 50%씩 증가한다고 가정함
- 기본 시나리오로 이직신고율이 8%라고 가정함
- 물가상승율을 가정하지 않음
- 근속기간 자격을 1년으로 한다고 가정하여 1차년도 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 (이직신고율 × 신청률 × 인정률 × 수급률 인) 보험수령율이 8%라고 가정하고 2018년부터 10%를 유지한다고 가정함.
- 소정급여일수는 90일, 즉 3개월로 가정함.

〈표 6-22〉 보험 지출 추계

	가입자 추정인원	보험수령율	보험료 지출 (백만원)
2016	27,961	8%	0
2017	27,961	8%	8,173
2018	27,961	10%	10,216
2019	27,961	10%	10,216
2020	41,942	10%	15,324
2021	41,942	10%	15,324
2022	41,942	10%	15,324
2023	55,922	10%	20,432
2024	55,922	10%	20,432
2025	55,922	10%	20,432

3) 실업급여 수지

- 〈표 6-23〉는 시나리오별(보험료율, 지출추계방식, 최소 근속기간 기준) 수입 및 지출 추계를 요약

〈표 6-24〉 보험료율 2%, 자영자 연령별 평균 수급일수 기준 추계

(단위: 백만원)

	수입(2%)	실업급여	수지차	연말적립금	적립배율
2016	8,173	0	8,173	8,173	-
2017	16,346	8,173	8,173	16,346	1.00
2018	16,346	10,216	6,130	22,476	1.60
2019	16,346	10,216	6,130	28,606	2.20

2020	24,519	15,324	9,195	37,801	1.87
2021	24,519	15,324	9,195	46,996	2.42
2022	24,519	15,324	9,195	56,191	3.07
2023	32,692	20,432	12,260	68,451	2.75
2024	32,692	20,432	12,260	80,711	3.35
2025	32,692	20,432	12,260	92,971	3.95

- 제도 시행 초년도에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후 동일소득등급비율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급여가 발생한다고 계산하여 보험제도 수지, 연말적립금, 적립배율을 도출함.
- 10년 정도의 시정을 볼 때 적립배율이 1.00에서 3.95로 괄목 할 만큼 증가한다고 추계 됨.

3. 소결

- 이상의 두 가지 추정방식에 따라 기본시나리오, 즉 보험료율이 2%인 경우 계산한 예술인고용보험 수지추이를 보면 적립배율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소득분포가 균등분포라고 가정하고 가입비율이 여 도출한 적립배율은 1.04에서부터 2025년 3.0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가입률이 균등분포라고 가정하여 도출한 적립배율은 1.00에서부터 2025년 3.9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보험가입률이 균등분포가 아니고 소득분포 또한 균등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 모형의 관점에서는 추계치가 이 둘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안정적인 적립배출의 존재로 인해 고용보험의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에서 가정한 파라미터들이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모형 자체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나리오별 재정추계 추이를 고찰하여야 할 것임.
 - 예술인 특성상 현재 가입률이 낮으나 계약관계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유효하다면 가입률의 일정 비율로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음.
 - 고용관계와 고용보험가입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된다면 보험수급 관련하여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예술인고용보험이 도입되면 도입 초기의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적절성에 위반되는 사항이 나오면 고용보험제도를 신속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을 유지시키면서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청률, 인정률, 수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액이 급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수적임.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고용보험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감대 존재

- 대부분 높은 비율로 동의하였으나 일부 예외 존재(공연예술 83.7%, 방송작가 92.7%, 성우 61.2%)
- 반대 사유는 “고용보험 수급조건 충족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나(공연예술 54.8%, 성우 57.9%), 방송작가는 “보험료 부담”이 53.8%로 가장 많았음.
- 안정된 수입을 올리는 중진 예술인의 경우도 자신은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후배나 동료들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인터뷰 과정에서 수차례 접함.
-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 다른 근로자나 직장인처럼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 받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고용보험의 당위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압도적이었음.

■ 고용보험이 예술인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 “예술인이 노동자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 예술인의 단속적인 활동의 패턴에서 예술인을 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는 반응도 존재함.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보다 예술인 일자리 창출이나 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음.

- 특히 예술정책 수립 및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큰 지위에 있거나 지원사업 수혜 경험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과 재원 투입에 따라 기존의 예술정책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

■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한 선호도 비교

- 임의가입 선호도가 당연가입에 비해서 매우 높음(공연예술 83.7%, 방송작가 59.5%, 성우 76.7%).
- 임의가입을 선호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1) 예술인 고용보험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 부족, 2) 예술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해석이 가능함.
- 하지만 임의가입 선호가 고용보험의 다양한 측면 및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념으로 보기는 어려움. 임의가입을 선호했던 예술인도 심층면접의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여러 측면들을 알게 된 후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당연가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경우들이 나타남. 따라서 임의가입 선호 양상은 변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됨.
- 중진 예술인의 경우 대체로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본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임의가입을 선호한다는 양면적인 의견들도 있었음. 이는 중진 예술인들이 대체로 근로자적인 속성 보다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속성이 강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임의가입 고용보험 도입 시 예술인 가입 저조가 우려되는 이유로는 1) 예술인들의 경제적 합리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2) 고소득 예술인에게 수급 혜택의 체감 가치 미약, 3)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음.

■ 공연예술계의 당연가입 방식 적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회의적임.

- 공연예술계는 기존 논의에서 당연가입 방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 거론되어 왔음.
- 공연예술계 종사자의 현재 종사 현황을 볼 때 다수가 수급조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년 중 1년 미만 일한 기간의 비율이 52.8%), 당연가입 적용 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도 수혜 받기 힘든 집단이 높은 비율로 존재함.
- 피보험기간 산정의 문제는 횡수나 납품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공연예술계 관행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연예술계에서 횡수와 기간을 병기하는 계약 방식이 도입·확산됨에 따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
- 하지만 과거의 동인제 제작 관행이 축소되고 뮤지컬이나 상업연극의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진급 연극자가 동시에 복수의 작품에 출연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가입의 전제조건으로서 전속성의 충족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복수의 작품에 출연하는 연극자가 전체 공연예술계 인력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율은 낮지만 이들이 공연예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일부 예외 사례로 무시할 수 없음.
- 또한 복수 작품 출연 연극자가 복수의 제작사나 극단들 중에 한 단체를 임의로 사용자로 지정할 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한 공연단체가 고용보험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감당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공연예술계의 경제적 취약성이 고용보험 도입에 큰 난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소수의 상업 연극을 제외하면 지원금에 의존하여 공연을 지속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공공 지원금을 받는 공연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예술인 사회보험 확충에 유리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재원조달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도입에 필요한 경제적 안정성이 취약한 것과 연관됨.
- 미리 보수를 정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마감 후 대관료 등의 비용 정산 후 잔여 예산을 보수로 지급하는 관행이 아직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함. 공연예술계 내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가 전체 연극 공연의 절반 이상을 넘으며, 공공 지

원을 받는 공연의 경우에도 20% 이상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보수를 미리 정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다만 공연예술인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임.
-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된 뮤지컬의 경우에도 시장 기반에 비해 외형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수입 구조의 안정성이 취약하여 유망한 기획자가 자살 등의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들이 최근에 나타났음.
- 또한 영세한 극단이나 제작사의 경우 행정 인력 부족으로 고용보험의 도입 시 행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와 같은 공연예술계의 상황에서 극단이나 제작사에게 당연가입의 적용을 단기간에 강제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며 예술 활동의 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당연가입의 적용을 위해서는 도입 과정도 임의 가입의 선행 도입을 통해서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계 내부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부담 경감 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함.

■ 방송작가의 당연가입 방식 적용을 위해서는 방송작가 내부의 이질성에 대한 고려와 방송국과의 협력적 관계 전제되어야 함.

- 방송작가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활동 비율이 높으나(1년 미만은 18.0%), 미래 예측 비율은 23.2%로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며 고용의 불안전성에 대한 체감 정도가 매우 높음.
- 방송작가의 경우 경력과 업계 내 위상에 따라 내부 분화 정도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방송작가의 사용자 종속성이나 전속성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어려움.
- 급여성 원고료의 수입을 받는 다른 작가들과 달리 메인작가는 드라마나 비드라마 모

두 저작권 성격의 수입을 위주로 하며 방송 제작에서 PD와 동등하거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작업을 함.

- 일부 기획 다규와 같이 장기의 제작기간에 참여하는 일부 작가의 경우 피보험 기간 산정이 어려움.
- 모든 수입이 원천징수를 거쳐 이루어짐으로써 증빙의 원천적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계약 관행이 미비하여 고용보험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 적용이 전제되어야 함.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극복 가능하지만 계약도입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움.
- 고용보험 도입 시 방송국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작가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함.

■ 성우의 현재 종사 현황을 볼 때 당연가입 방식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공채 출신의 성우들의 경우 비교적 안정된 근무 여건에서 종사하고 있고 방송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당연가입의 적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직종임.
- 하지만 동시에 여러 방송국 일하는 경우가 61.7%이며, 이중 81.1%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방송국에서 일하는 경우여서 전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성우 일자리의 다변화에 따라서 방송 외 수입의 비중이 방송 수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정도여서 방송국을 사업자로 하는 당연가입의 적용이 곤란함.
- 방송국 등급제 운영의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성문화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 성우들이 일부 반복 방영되는 프로그램(예컨대 매일 혹은 주간)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반복 방영의 주기가 다양하고 참여 기간이 일정치 않아서 일관된 피보험기간 산정의 어려움이 존재함.

■ 웹툰 작가의 당연가입 방식 적용을 위해서는 에이전시 확대나 다양한 저작권 수입의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웹툰 작가의 사용자 종속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
- 공간적 종속성은 없지만, 시간적으로 마감시간의 종속성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임.
- 포털의 직접적 간섭은 없어도 대체로 포털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함. 특히 작은 규모의 포털일수록 간섭의 강도가 강함. 하지만 포털로부터의 직접적인 구속보다는 독자로부터의 구속을 훨씬 더 심하게 체감.
-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불확실함.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1) 다른 분야 예술가에 비해서 개인주의적인 작가들의 성향, 2) 트렌드에 민감한 웹툰의 성격상 작가의 세대 교체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른 작가들과의 연대 의식 미흡, 3) 작가 활동의 성격 상 고용의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존재
- 웹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웹툰 작가의 분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웹툰 작가에게 스토리를 공급해 주는 스토리 작가와 작업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어시스트들이 있음.
- 그림 작가의 3분의 1 정도 규모로 추정되는 스토리작가의 경우 계약 상황에서 그림 작가와 동등한 계약주체로 참여하여 수입을 일정 비율(예: 7:3)으로 배분받는 상황이어서 그림 작가에 비해 고용보험 적용에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은 없음.
- 어시스턴트들은 별도의 계약 근거 없이 작가 개인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수를 받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함. 작가가 어시스트와 고용계약을 맺고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경우는 예외적인 소수 사례로만 존재함.
-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연재 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산정 가능한 편임.
-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에이전시(누룩미디어, YB LAB, 재담미디어, 드림커머스, 투유 등)의 성격이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전속성 판단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최대 웹툰 포털을 운영하는 네이버의 경우,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는 작가의 비율은 10-20%로 추정. 그 외 작가 중 40~50%대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정. 에이전시로부터 전속금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공존하며, 작품 단위 계약도 존재함.
- 웹툰 업계 에이전시는 현재 도입 확대기에 있어서 그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무, 회계이지만, 전속성 강요의 경향이 강하여 사용자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 경우 포털과 에이전시 사이에서 작가의 전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할 수 있음.
- 웹툰 연재 포털의 경우 작업의 강도가 강하여 동시에 복수 작품을 할 수 없어 전속성의 확보가 어렵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작업 경험이 축적되고 시스템을 갖추면 분업화하여 동시 다작이 가능해지고 일부 작가의 경우 “스튜디오” 운영의 방식으로 동시 다작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 존재함. 이 경우 전속성의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 동시 다작의 경향이 특히 스토리 작가에서 강하게 나타남. 그림 작가에 비해서 작품당 수입이 적은 스토리 작가는 한 편의 작품만으로 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다작이 불가피한 상황
- 그림 작가도 기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다작을 하거나 부수입 활동(예: 기업 광고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함. 에이전시 서비스를 통해 그림 작가들의 부수입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부수입 확보 요구가 에이전시 가입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임.
- 2차 저작권을 통한 “외주” 수입의 중요성 증가하여 TV, 드라마 등의 2차 저작을 통한 저작권 수입 및 캐릭터 활용 수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부분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나타나고 계약기간이 짧아서 계약기간 중 해지는 드문 편이지만, 포털의 재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작업 준비기 중 구직 활동은 매우 활발한 편이며, 계약 종료를 비자발적 실업으로 해석할 가능성 존재
-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작가들의 의견이 다양하며 전반적으로 고용보험에 대

한 인식 수준이 낮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도 존재하며,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웹툰 작가들의 연령대가 젊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고용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에 작용함. 데뷔 후 3-4년이 지나면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됨. 특히 작품 활동의 휴지기에 있는 작가들의 경우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을 도입할 경우 당연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존재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가입 방식만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의가입 방식의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당연가입의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계들에서 내부의 장애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면서 당연가입 방식을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정책제언

■ 임의가입을 기본으로 당연가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사회보험으로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회정책적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가입이 바람직하지만 당연가입의 장애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당연가입 방식의 도입 시 수혜를 받기 어려운 집단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임.
- 따라서 당연가입만을 위주로 하여 임의가입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을 위해서는 임의가입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 또한 임의가입 방식의 운영을 통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당연가입 도입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임의가입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협력적 노력 필요

- 예술인 협회, 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임의가입자 확대 방안의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예술인들 다수가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느끼나, 고용보험의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예술인의 특수한 종사 상황이 고용보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고용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불안감이 고용보험 가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특수 상황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입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안 마련 필요
- 예술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종 예술인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예술인복지재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양한 예술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직종의 협회, 단체가 참여하여 공동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협회 단체들에게 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임의가입이 기본적으로는 개인 단위로 가입하지만 예술인들이 동료 예술인들과 분업적 협력적 관계에서 예술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의 사업 설계 필요

■ 예술인복지재단의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과 예술인의 현황을 반영한 제도 설계의 특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예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법」에 근거 운영 중인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가 이에 가장 적합한 장치로 판단됨.
- 하지만 예술인들의 단속적 활동 경향을 고려할 때 최근 활동 경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활동증명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하며, 고용계약을 근거로 예술인 활동증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

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5년 연극, 영화, 국악, 무용 분야의 6개 단체 61 건과 예술인 개인 8건 등 총 69건에서 2016년 (잠정 집계) 연극, 영화, 음악, 연예, 국악, 무용 분야 45개 단체 556 건과 예술인 개인 116건으로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 .

- 예술인의 신청자격이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되어 있으나 예술활동증명 신청 전이라도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신청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특례신청을 하도록 함.
- 이와 같이 표준계약제를 전제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예술인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도입을 위한 노력 필요

- 예술인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적용은 해당 직종 내 거대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 역량을 갖춘 경우일수록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방송산업과 웹툰산업 모두 해당 업계 내 지배적 사업자들이 지도적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
-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직종의 경우 당연가입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 사업자와의 전향적인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 설계와 현황 자료 확보를 수행해야 함.
-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연가입의 도입과 함께 예술계 내 근로 종사 관계가 가지는 유연성과 다양성이 병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 보고서

- 김종국. 2012. 「예술인 복지법」과 영화인 고용복지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54, 2012.12, 67-93.
- 김종국. 2014.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2014.2, 247-256.
- 김태완 외. 2009. 예술인 복지도델 세부설계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금재호 외. 2005. 고용보험사업 및 재정운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09. 사학연금 재정분석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 안주엽·황준욱. 201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원종학·최준욱. 2010.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추계 및 적요요율 수준 모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승렬 외. 2012.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리. 2012.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플랫폼, 2012.9, 28-33.
- 이철수 외. 2013.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실태조사 및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국제노동법연구원.
- 장홍근. 2012. 공연·무대예술인의 예술활동경력 및 증빙 실태와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88, 2012.7, 55-73 (19 pages)
- 최정민, 배관표, 최성락. 2013.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연구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KCI등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013.5, 243-252 (10 pages)

한국고용정보원. 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허재준 · 김주영 · 윤미례. 2008. 고용보험 재정추계 모델 개발 및 재정추계. 한국노동연구원.

Alper, N. & G. Wassall. 2006. “Artists’ Careers and Their Labor Markets.” V. Ginsberg & D. Throsby ed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Amsterdam: Elsevier, pp. 813-864.

Filer, R. K. The “Starving Artist“--Myth or Reality? Earnings of Artis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No. 1 (Feb., 1986), pp. 56-75

Menger, P. 1999. “Artistic Labor Markets and Career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5, 541-574.M

Menger, P. 2006. “Artistic Labor Markets: Contingent Work, Excess Supply and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V. Ginsberg & D. Throsby ed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Amsterdam: Elsevier, pp. 765-811.

Peschner, J. 2009. “Die Kuenstlersozialversicherung in Deutschland.”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2009년 6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부 록

1.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2. 직군별 설문지(1) : 공연예술 실연자 · 스태프
설문지
3. 직군별 설문지(2): 방송작가 설문지
4. 직군별 설문지(3): 성우 설문지

1.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	ID
<p>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월드리서치의 면접원 ○○○입니다.</p> <p>저희 (주)월드리서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예술인들의 종사실태를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쁘시더라도 잠시 통화 부탁드립니다.</p> <p>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p> <p>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6월</p>	
<p>SQ1. 예술활동 분야</p> <p>1. 시각 예술 (미술, 사진) 2. 공연 예술 (음악, 대중음악, 국악) 3. 종합 예술 (기타 모든 분야)</p> <p>SQ2. 거주 지역</p> <p>1. 서울 2. 인천/경기 3. 경상권 4. 강원충청권 5. 제주전라권</p> <p>SQ3. 성별 (목소리로 판단할 것)</p> <p>1. 남자 2. 여자</p> <p>SQ4.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p> <p>SQ5. 선생님께서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십니까?</p> <p>1. 예 ☞ SQ5-1 2. 아니오 ☞ Q1로</p> <p>SQ5-1. 그렇다면, 현재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예술 직종입니까?</p> <p>1. 예 ☞ Q1로 2. 아니오 ☞ 조사 중단</p>	

♣ 먼저 선생님의 예술직종 종사 실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Q01. 선생님께서는 최근 2년간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서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년 ()개월

Q02. 그렇다면, 최근 2년간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서 종사한 기간 중 예술인 직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년 ()개월

Q03. 최근 2년간 수입이 있는 예술 직종 일자리에 종사한 평균 근속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년 ()개월

3.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가 일정하지 않다
4. 기타 ()
5. (읽어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09. 선생님께서는 종사하고 있던 예술 직종 일자리에서 계약기간 내에 해고 또는 계약 중도 해지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Q9-1로
2. 없다 ⇨ Q10으로

Q09-1. 계약의 주된 해지 사유는 무엇입니까?

1. 회사의 일방적 해지
2. 보수·업무여건 불만족으로 인한 본인의 해지
3. 질병·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본인의 해지
4. 임신·육아 및 간병 등의 사유로 인한 본인의 해지
5. 기타 ()
6. (읽어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0. 선생님께서는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예술 직종의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1.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 Q10-1로
2.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 Q11으로

Q10-1. 그렇다면,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예술 직종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향후 2년 중 1년 이상
2. 향후 2년 중 1년 미만
3. 기타 ()
4. (읽어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1. 선생님께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 직종 일자리의 월 평균 보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예술 직종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예술 직종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월 50만원 이하
2. 월 51-100만원 이하
3. 월 101-150만원 이하
4. 월 151-200만원 이하
5. 월 201-300만원 이하
6. 월 301만원 이상
7. (읽어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다음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Q12. 선생님께서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고용보험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2.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3.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4.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6. (읽어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고용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다음 질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 급여의 일정액을 매월 납부한 후 원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수급요건은 근로자의 경우 실업 직전 18개월 중 180일을,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 직전 2년 중 1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8.2%가 수급기준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고, 1인 평균을 보면 매월 2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실업시 매월 110만원을 약 4개월간 받았습니다.

Q13. 선생님께서는 예술인들도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고,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13]

- 1. 찬성한다 ☞ Q14로
- 2. 반대한다 ☞ Q13-1로
- 3. (읽어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3-1. 그렇다면,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로테이션) [Q13_1]

- 1. 보험료 부담 때문에
- 2. 예술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 3.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 4.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번거로워서
- 5.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6. 고용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 7. 기타 ([Q13_1T])
- 8. (읽어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4. 만약,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Q14]

- 1. 예술인 개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 2. 특정한 분야의 예술인이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
- 3. 기타 ()
- 4. (읽어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5. 그렇다면,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실업급여가 많아진다면, 고용보험료를 얼마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Q15]

- 1. 월 1만원 미만
- 2. 월 1-2만원 미만
- 3. 월 2-3만원 미만
- 4. 월 3-4만원 미만
- 5. 월 4-5만원 미만
- 6. 월 5만원 이상
- 7. (읽어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2. (A1의 ①의 응답자) 실연자로서 종사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연극배우 ② 뮤지컬배우 ③ 연극배우 겸 뮤지컬 배우

A3. (A1의 ②의 응답자) 스태프로서 종사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기술 ② 제작 ③ 무대
 ④ 음향 ⑤ 조명 ⑥ 의상
 ⑦ 소품 ⑧ 영상 ⑨ 특수효과
 ⑩ 분장 ⑪ 기타(_____)

A4. (A1의 ③의 응답자) 실연자로서 종사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연극배우 ② 뮤지컬배우 ③ 연극배우 겸 뮤지컬 배우

A5. (A1의 ③의 응답자) 스태프로서 종사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기술 ② 제작 ③ 무대
 ④ 음향 ⑤ 조명 ⑥ 의상
 ⑦ 소품 ⑧ 영상 ⑨ 특수효과
 ⑩ 분장 ⑪ 기타(_____)

A6. 귀하가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로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인 경우 → A7로

A7.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로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한 기간은 총 몇 년 이십니까?

_____ 년

A8. 귀하가 최근 24개월 중에는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로서 총 얼마나 일하셨습니다?

_____ 년

A9. 귀하가 최근 24개월 중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 이외 수입이 있는 일자리(예컨대 식당 등 부업, 교육 활동 등)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개월

A10. 귀하가 현재 속해 있는 곳은 어디 입니까?

- ① 극단 ② 제작사 ③ 에이전시
 ④ 업체(음향, 조명, 소품 등등) ⑤ 공연장 ⑥ 기타(_____)

※ 다음은 일자리의 계약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A11. 현재 체결한 계약형태는 무엇입니까? (현재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로서 계약이 없는

- ⑤ 연봉계약제(매월 12분의 1을 지급 받음) ⑥ 공연종료 후
⑦ 잘 모르겠다 ⑧ 기타(_____)

※ 다음은 귀하의 근로 상태 및 소득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B1. 지난 일 년간 경제적인 목적으로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 외에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B2. 지난 일 년간 월 평균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 활동의 소득(급여)은 어떻게 되십니까?(숫자만 입력해주시시오. 단위: 만원)

_____ 만원

B3. 지난 일 년간 월 평균 부업 소득(급여)은 어떻게 되십니까? (숫자만 입력해주시시오. 단위: 만원) (없을 경우 0)

_____ 만원

※ 다음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C1. 귀하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②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③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④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⑤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 급여의 일정액을 매월 납부한 후 원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수급요건은 근로자의 경우 실업 직전 18개월 중 180일을,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 직전 2년 중 1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8.2%가 수급기준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고, 1인 평균을 보면 매월 2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실업시 매월 110만원을 약 4개월간 받았습니다.

C2.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도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고 실업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고용보험도입에 찬성을 하십니까?

- ① 예 (→C4로) ② 아니오 (→C3으로)

C3. 고용보험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험료 부담 때문에
- ② 공연예술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③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 ④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번거로워서
- ⑤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⑥ 고용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 ⑦ 기타(_____)

C4. 고용보험에 찬성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 ② 공연예술에 실연자/스태프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
- ③ 기타(_____)

C5. (고용보험에 찬성한다면) 만약,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실업급여가 많아진다면, 고용보험료를 얼마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 ① 월 1만원 미만
- ② 월 1만원-2만원 미만
- ③ 월 2만원-3만원 미만
- ④ 월 3만원-4만원 미만
- ⑤ 월 4만원-5만원 미만
- ⑥ 월 5만원 이상

C6. (고용보험에 찬성한다면) 만약, 실업급여가 줄더라도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설계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 ① 동의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

D1. 귀하는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의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 ①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 D2로
- ②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 조사 종료

D2. 그렇다면,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공연예술의 실연자·스태프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향후 2년 중 1년 이상
- ② 향후 2년 중 1년 미만
- ③ 기타(_____)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엇에 가깝습니까?

- ① 한 방송국의 일이 주업이고 다른 방송국의 일은 부업이다.
- ② 여러 방송국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다

A14. 귀하는 계약기간 내에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A15으로)
- ② 아니오 (→A16로)

A15. (A14의 ①의 응답자)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방송작가와 관련한 계약의 주된 해지·만료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
- ②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직
- ③ 보수·업무여건 불만족
- ④ 업무과다·피로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
- ⑤ 질병·부상 등 건강상의 사유
- ⑥ 결혼·임신·육아 및 간병 등의 사유
- ⑦ 기타(_____)

A16. 채용시 실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선배, 선임작가
- ②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
- ③ 방송사 및 외주 제작사의 관리자
- ④ 기타(_____)

A17. 귀하의 보수지급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월급
- ② 주급/격주급
- ③ 회당 지급 또는 작품 방송
- ④ 시간급 또는 일당
- ⑤ 연봉계약제(매월 12분의 1을 지급 받음)
- ⑥ 잘 모르겠다
- ⑦ 기타(_____)

A18. 귀하의 업무 수행방법이나 업무내용이 주로 누구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까?

- ① 프로그램 담당 PD 및 기자
- ② 선배, 선임작가
- ③ 방송사 및 외주 제작사
- ④ 작가 본인 스스로
- ⑤ 기타(_____)

※ 다음은 귀하의 근로 실태 및 소득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B1. 지난 일 년간 경제적인 목적으로 방송작가 외에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B2. 지난 일 년간 월 평균 방송작가의 소득(급여)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만원

B3. 지난 일 년간 월 평균 부업 소득(급여)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만원

B4. 지난 일 년간 월 평균 저작권/저작인접권 소득(급여)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만원

※ 다음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C1. 귀하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 ② 이름을 들어봤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 ③ 실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다
- ④ 일할 때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 ⑤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업수당을 받는지 알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 급여의 일정액을 매월 납부한 후 원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수급요건은 근로자의 경우 실업 직전 18개월 중 180일을,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 직전 2년 중 1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8.2%가 수급기준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고, 1인 평균을 보면 매월 2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실업시 매월 110만원을 약 4개월간 받았습니니다.

C2. 방송작가도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고 실업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고용보험도입에 찬성을 하십니까?

- ① 예 (→C4로)
- ② 아니오 (→C3으로)

C3. 고용보험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험료 부담 때문에
- ② 방송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③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 ④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번거로워서
- ⑤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⑥ 고용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 ⑦ 기타(_____)

C4. 고용보험에 찬성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방송작가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 ② 특정한 직종의 방송작가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
- ③ 기타()

C5. (고용보험에 찬성한다면) 만약,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실업급여가 많아진다면, 고용보험료를 얼마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 ① 월 1만원 미만
- ② 월 1만원-2만원 미만
- ③ 월 2만원-3만원 미만
- ④ 월 3만원-4만원 미만
- ⑤ 월 4만원-5만원 미만
- ⑥ 월 5만원 이상

C6. (고용보험에 찬성한다면) 만약, 실업급여가 줄더라도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설계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 ① 동의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

D1. 귀하는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방송작가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 ①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 D2로
- ②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 조사 종료

D2. 그렇다면,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방송작가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향후 2년 중 1년 이상
- ② 향후 2년 중 1년 미만
- ③ 기타()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① 예 → A11으로 ② 아니오

A11. (A10의 ①의 응답자) 귀하가 여러 방송국의 일에 동시에 종사하는 상황은 다음의 설명 중 무엇에 가깝습니까?

- ① 한 방송사의 일이 주업이고 다른 방송사의 일은 부업이다.
② 여러 방송사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한다

A12. 귀하는 계약기간 내에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A13으로) ② 아니오 (→A14로)

A13. (A15의 ①의 응답자)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방송작가와 관련한 계약의 주된 해지·만료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청률 혹은 청취율 저조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② 프로그램 개편, 성과미흡 사유의 해고
③ 보수·업무여건 불만족
④ 업무과다·피로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
⑤ 질병·부상 등 건강상의 사유
⑥ 결혼·임신·육아 및 간병 등의 사유
⑦ 기타(_____)

A14. 채용시 실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동료 선배 성우 ② 프로그램 담당 PD
③ 방송사 및 외주 제작사의 관리자 ④ 기타(_____)

A15. 귀하의 보수지급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월급 ② 주급/격주급
③ 회당 지급 또는 작품 방송 후 지급 ④ 시간급 또는 일당
⑤ 연봉계약제(매월 12분의 1을 지급 받음)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_____)

A16. 귀하의 업무 수행방법이나 업무내용이 주로 누구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까?

- ① 프로그램 제작 관리자(PD, 감독, 기자) ② 선배, 선임 성우
③ 방송사 및 외주 제작사의 대표 ④ 성우 본인 스스로
⑤ 기타(_____)

※ 다음은 귀하의 근로 실태 및 소득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 비방송 나레이션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극장영화, 더빙, 게임, 광고 등의 나레이션을 의미합니다.

C3. 고용보험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험료 부담 때문에
- ② 방송활동 특성상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③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서
- ④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번거로워서
- ⑤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⑥ 고용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 ⑦ 기타(_____)

C4. 고용보험에 찬성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성우 개인이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 ② 방송국에서 일하는 성우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가입
- ③ 기타(_____)

C5. (고용보험에 찬성한다면) 만약,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실업급여가 많아진다면, 고용보험료를 얼마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 ① 월 1만원 미만
- ② 월 1만원-2만원 미만
- ③ 월 2만원-3만원 미만
- ④ 월 3만원-4만원 미만
- ⑤ 월 4만원-5만원 미만
- ⑥ 월 5만원 이상

C6. (고용보험에 찬성한다면) 만약, 실업급여가 줄더라도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설계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 ① 동의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

D1. 귀하는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성우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 ①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 D2로
- ②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다 → 조사 종료

D2. 그렇다면, 향후 2년간 현재 하고 있는 성우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향후 2년 중 1년 이상
- ② 향후 2년 중 1년 미만
- ③ 기타(_____)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